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하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Ⅳ.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발 간 사

최근 2년 동안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9월 개정된「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개입에 있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인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모두 한 마음으로 아동학대사례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설립된 이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지 15년만의 성과입니다. 정부 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치밀하고 보다 충실하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와 직원들이 실시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네 번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표

머 리 말

2014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의 첫 해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서 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개입을 하려고 할 때, '개입거부'로 종결되는 사례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례법 중 임시조치를 통하여 친권 제한·정지,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으로 적극적 이고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해졌고, 응급조치를 통하여 학대 피해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 발간하는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서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실태의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관련법 및 정책이 마련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요	익		2 5
제1	장	서론····································	45
		발간목적 및 배경 ·····	
		주요내용	
		자료수집 과정	
	4.	자료분석	·50
제2	2징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1
	1.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 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 신고접수	·58
	2.	신고자 유형	-64
		1) 신고자 유형	-64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0
		3) 경찰통보건수	·87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88
제3	3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3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95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7
	2.	사례판단	.99
		1) 사례판단 결과	.99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1	00
		3) 피해아동 보호수	102
	3.	피해아동 발견율1	02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0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107
가. 피해아동 성별	107
나. 피해아동 연령	108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10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마. 피해아동 특성	112
2) 학대행위자	114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4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5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116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8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9
사. 학대행위자 특성	120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22
1) 아동학대 발생장소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8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0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34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34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4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1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보호 현황	145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8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8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51
	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현황	154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56
	다. 임시조치 현황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5.	서비스 제공 현황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6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166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7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168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70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	170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	171
제5징	·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173
1.	}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175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17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8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5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86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재학대 사례	188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88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8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00
기, 세력대 사례 최애익중 경찰	18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190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189 ·····190 ·····191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	189 190 191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89 190 191 193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9190191193193194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9190193193194195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9190191193194196197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9190193193194195196198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20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5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7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0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다. 가족유형 비교	
3.	사당	망아동 사례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14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4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16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17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7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21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21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2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27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3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23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31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235
1. 상담원 업무량	
1) 상담원 1인 업무량	
2) 기관별 상담원 업무량	
3) 지역별 상담원 1인 업무량	242
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43
2.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47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49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1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53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56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58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0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2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63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63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66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69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70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
	10	.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1) 시도/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2)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부	로		27 5
		용어집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3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표 목차]

〈班 1-1〉	보고서 내용구성	·49
〈班 2-1〉	신고접수 건수	.54
〈班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班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班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7
〈丑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8
〈班 2-6〉	신고자 유형	•65
〈班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66
〈班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0
〈班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2
〈班 2-10)> 신고접수 경로유형 ·····	.89
〈班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90
〈班 3-1〉	현장조사 횟수	.95
〈班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96
〈班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7
〈班 3-4〉	사례판단 결과	.99
〈班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0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2
〈班 3-7〉	피해아동 발견율	103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7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9
〈班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
〈丑 4-5〉	피해아동 특성	13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4
〈班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21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22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班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5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7
〈班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1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6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8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9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41
〈丑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3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4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145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6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6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7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班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	.52
〈班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53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54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55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57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조 임시조치 실건수	.58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진행율	.58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59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60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61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63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64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65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66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67
〈班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1	.68
〈班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69
〈班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71
〈班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72
〈班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75
〈丑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77
〈丑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8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79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81
〈班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82
〈班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83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84
〈丑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85
〈班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86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88
〈표 5-13〉 재학대 피해아동 성별 ······188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3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작업유형 ······199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197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98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199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표 5-28〉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20년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표 5-30〉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08
〈표 5-32〉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209
〈표 5-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210
〈표 5-35〉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211
(표 5-36) 2013/2014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12
〈표 5-37〉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13
(표 5-38)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14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년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표 5-41〉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 217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	····218
〈표 5-4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표 5-4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표 5-4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표 5-46〉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21
〈표 5-47〉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표 5-48〉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표 5-49〉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표 5-50〉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표 5-51〉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표 5-52〉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표 5-53〉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표 5-54〉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31
〈표 5-55〉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표 5-56〉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표 6-1〉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표 6-2〉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41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42
〈표 6-4〉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표 6-7〉기관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57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	258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59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및 명수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7-19〉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표 7-2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54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그림 2-4〉 신고자 유형	65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89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1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7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9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1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그림	4-10〉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126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7
〈그림	4-14〉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6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4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	147
〈그림	4-24〉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56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61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64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9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9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0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2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5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4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6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07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5-2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5-2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10
5-2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5-2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5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6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9
5-3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5-6> 5-7> 5-8> 5-9> 5-10> 5-11> 5-12> 5-13> 5-14> 5-16> 5-16> 5-17> 5-18>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6> 5-27> 5-28> 5-30> 5-31> 5-32>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그림 5-35〉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그림 5-36〉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5
〈그림 5-37〉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6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그림 5-40〉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그림 5-41〉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31
〈그림 5-42〉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그림 5-43〉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51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52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2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257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58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59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1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3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64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2014년)



요 약

- 본 보고서는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4년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의거).
-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7,791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 수집된 자료는 2014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서비스 제공,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시 신고접수

- 2014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7.791건에 해당됨.
 - ▶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 (84.5%), 동일신고는 93건(0.5%), 일반상담은 2,664건(15.0%), 해외발생사례는 9건(0.1%)임.
 -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건 중 재신고 사례는 2,338건(13.1%)이며, 2014년 신규신고는 15,453건(86.9%)임.
 -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5월 2,067건(11,6%), 4월 1879건 (10.6%), 6월 1,874건(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61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건 순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익산시 296건, 제주시 278건, 서귀포시 272건 순으로 나타남.

시고자 유형

-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0%(4,358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1.0%(10,667건)로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으로 13.2%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순 으로 나타남.
 -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23.2%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 14.7%, 부모 13.3% 순으로 나타남.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를 통한 신고가 14.267건 (80.2%)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2,376건(13.4%), 인터넷 603건(3.4%), 129 448건(2.5%) 순 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15.025건을 대상으로 총 30.62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0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23.828건(77.8%), 상담원·경찰 3.904 건(12.7%), 상담원·공무원 1,529건(5.0%), 경찰 단독 994건(3.2%), 상담원·경찰·공무원 329건(1.1%) 순으로 나타남.

/ 사례판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5.025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0.027건으로 66.7%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1.783건(11.9%). 일반사례 3.215건(21.4%)임.
- 아동학대사례 10.027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7.402명으로 나타남.

교회 피해아동 발견육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4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보호율은 1,10%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81%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0.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보호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 계수는 -0.68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84,820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12,341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가 309,801명. 대전광역시 300.466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였으며, 1개 기관 당 61,411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037건(50.2%). 여아 4.990건(49.8%)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 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8.6%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외 형태 4,919건(49.1%), 친부모가족 4,458건(44.5%), 파악안됨과 대리양육형태는 각각 336건(3.4%), 271건(2.7%)의 양상을 나타냄.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8.8%, 14.1%, 2.1%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5.0%에 해당함.
-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4건(0,2%), 39건(0,4%), 208건 (2.1%)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 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2,333건(23,3%). 비수급권 대상 6,506건(64,9%), 파악안됨 1,188건(11,8%)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전과 력.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행동이 전체 36.3%인 8.093건 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6.491건(29.1%). 특성없음 3,956건(17.8%), 발달 · 신체건강 2,533건(11.4%), 장애 796건(3.6%), 기타 395건(1.8%)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5,572건(55,6%), 여성 4,446건(44,3%)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3배 많았으며, 파악안됨 9건(0.1%)임.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4,337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091건(30,8%) 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207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990건(9.9%)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295건(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건(1.8%)이었음.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7.908건으로 전체의 78.9%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2.100건(20.9%), 19건(0.2%)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250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직 1.650건(16.5%)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 정도를 차지함.
-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1,860건(18,5%)인 반면 비 수급권 6,856건(68,4%)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 1,311건(13,1%)에 해당함.

■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3.1%에 해당하는 10,076건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6,200건(20.4%),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건(10.0%)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에 해당하는 8,610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300건(3.0%), 171건(1.7%), 96건(1.0%)으로 5.7%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80건(1.8%), 기타복지시설 30건(0.3%)로 2.1%에 해당함.
-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30.6%인 3,073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 1,371건(13.7%),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 1,253건(12.5%)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6,176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5,699건(36.9%), 3,136건 (20.3%), 성학대 447건(2.9%)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8.4%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세 구간에 많은 아동이 집중됨.
-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발달·신체건강 특성, 특성 없음,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성학대의 경우 51.0%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7,362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2,649건(26.4%), 사망 16건(0.2%)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377건(13.7%), 친인척보호 732건(7.3%), 장기보호 342건(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건(1.0%), 병원입원 84건 (0.8%), 가정위탁 11건(0.1%) 순으로 나타남.
 - ▶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629건(23.8%)이었으며, 가정 복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259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사이 143건(22.7%), 1~3개월 사이 138건(21.9%), 6개월~1년 사이 89건(14.1%)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3.5%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3.2%, 대구광역시 31.8% 순으로 조사됨.
 -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9%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4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 ▶ 2014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건으로 전체의 23.6%에 해당함.
 -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6,666건 (66.5%), 분리보호 2,610건(26.0%), 사망 17건(0.2%), 가정복귀 734건(7.3%)으로 나타 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보호 924건(9.2%), 장기보호 891건 (8.9%), 일시보호 614건(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3건(0.7%), 가정위탁 56건 (0.6%), 병원입원 52건(0.5%)순으로 나타남.

- ▶ 2014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 보호가 5,344건(69.8%)이나 분리보호는 1,758건(22.9%)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1,322건(55.9%), 분리보호 852건(36.0%)으로 파악됨.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총 35개가 운영중이며, 상근 보육사 84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명,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4명임.
 - ▶ 2014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970명의 아동 중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4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47명(15.2%), 2014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23명(84.8%)임.
 - ▶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0명 중 2014년에 퇴소한 아동은 86.5%인 839명(86.5%), 2015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31명(13.5%)임.
 - ▶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은 1개월 미만이 517명(6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58명(18.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7명(8.0%), 1년 이상 50명(6.0%), 6개월 이상~1년 미만 47명(5.6%) 순으로 나타남.
 - ▶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0.3%임.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1,508건(15.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0건(5.5%), 아동과 분리 508건(5.1%)임.
 - ▶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70%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 ▶ 사건처리 조치에 해당하는 320건을 제외한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1,188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490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수사 327건(27.5%),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267건(22.5%), 103건 (8.7%)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2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171건, 성학대 160건, 정서학대 131건, 방임 104건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처벌법(2014.9.29. 시행)으로 조치된 사례는 12.9%에 해당하는 325건이며, 이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아동학대 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응급조치는 상담원 149건, 경찰 99건으로 총 248건이 이루어졌으며, 조치 내용으로 3호(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인도)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5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7건(30.4%), 1호(퇴거 등 격리)가 6건(26.1%) 순으로 나타남.
 - ▶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 건수는 제14조 임시조치 57건(19.1%), 제15조 임시조치 242건(80.9%)임. 제15조 임시조치 는 응급조치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이며, 이는 응급조치 대비 97.6% 가 진행됨.
 - ▶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사례는 총 74건이고, 이 중 49건(66,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25건 (33.8%)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음.
 -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80건이고, 이 중 72건(90.0%)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건(10.0%)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음.
 - ▶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140건(96.6%)이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 건(3.4%)임.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0건(37.5%),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65건(24.3%),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49건(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59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51건, 변호사가 8건을 청구함.
 -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0건 중 18건, 변호사는 4건을 청구하여 4건 모두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8건이 결정됨. 피해 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28건(52.8%)으로 가장 높았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4건(26.4%),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9건 (17.0%), 5호(의료기관 치료위탁) 2건(3.8%)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 현황

-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335.424회임.
 - 피해이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68,507회(49.2%), 96,727회(49.3%)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 보호서비스는 2014년 이전 사례 39,512회(28.4%), 2014년 사례 63,830회(32.5%)로 나타남.
 -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7.1%,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됨.
-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3,817회임.
 -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4년 이전 신고 사례 26,594회(86.7%), 2014년 신고 사례 36,092회(83.7%)의 서비스가 제공됨.
 -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64,413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9,404회 제공되 었고, 상담서비스가 모두 80%이상 높은 비율로 제공됨.
-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9.160회임.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4년 이전 사례는 28,257회 (87.0%), 2014년 신고사례는 40,602회(87.0%)인 것으로 파악됨.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59,478회(86.6%), 사후관리 사례는 9,381회(89.4%)에 해당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교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결과는 신고의무자 74.1%, 비신고의무자 63.7% 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을 살펴보면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8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각각 80.0%, 초·중·고교 직원 79.7% 순으로 높게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 84.4%, 비신고의무자 80.6%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더 높았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 6.6%, 비신고의무자 11.4%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발생장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의 모든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함.
- □ 아동학대의 발생빈도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04건(34,2%), 1,969건(29,0%)으로 가장 높았음.
-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중 1년~3년 사이가 신고의무자 40.5%, 비신고의무자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 각 학대 유형별로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학대발견율은 학원 강사 55.0%, 정서학대 발견율은 응급구조사 100.0%, 성학대 발견율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41.7%, 방임 사회복지공무원 50.5%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8.3%,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2.6% 임.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11.9%, 비신고의무자 16.6%로 비신고의무자 가 더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

- 2014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02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10,027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10,2%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수는 949명임.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524건(51,0%), 남아 503건(49,0%)로 나타남.
-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256건(24.9%), 만 13세~15세 241건(23.5%), 만 7~9세 228건(22.2%)으로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70%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364건(35.4%), 친부모가족 외 형태 617건(60.1%), 대리양육형태 37건(3.6%),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1건(0.1%), 8건(0.8%)임.
-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행동이 1,09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903건, 31.6%).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96건(58.0%), 여성 430건(41.9%)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건(0.1%)임.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435건(42.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347건(33.8%), 50대 143건(13.9%), 20대 65건(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450건으로 전체 43.8%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28건(22.2%), 서비스 및 판매직 111건(10.8%)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건(16.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64건(16.0%), 50만 원 미만이 120건(11.7%)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4.4%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권 대상자 367건 (35.7%), 수급권 대상자 564건(54.9%)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96건(9.3%)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62건(3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766건(20.2%), 부부 및 가족 갈등 353건 (9.3%), 중독문제 315건(8.3%) 순임.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6건(87.2%)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8건 (4.7%)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934건 (90.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복지시설 26건(2.5%)이었음.
-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374건(36.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141건(13.7%), 2∼3일에 한 번 135건(13.1%)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73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2년~3년 사이 203건(19.8%), 3년 이상 175건(17.0%)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 복학대가 468건(45.6%), 방임 231건(22.5%), 정서학대 150건(14.6%), 신체학대 128건 (12.5%), 성학대 50건(4.9%)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678건(66,0%), 분리보호 349건(34.1%)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음.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572건 (55.7%), 분리보호 350건(34.1%),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 105건(10.2%)이었음.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91건(77.0%)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 140건(13.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54건(5.3%), 아동과의 분리 42건(4.1%)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53건(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 처리 171건(16.7%), 아동과의 분리 54건(5.3%),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49건(4.8%) 순으로 나타남.
-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여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 비율이 재학대 미발생사례의 분리보호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

-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17건이며, 전체 사례의 0.2%를 차지함. 실제 사망 아동 수는 14명임.
- 총 17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9건(52.9%), 남아 8건 (47.1%)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7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9건(52.9%), 8건(47.1%)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6건과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와 양모는 각각 2건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4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미만의 영아가 8건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건, 20대 2건, 10대 1건이었음.
-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12건, 70.6%),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2건(11.8%),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1건 (5.9%)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7건으로 41.2%, 거의 매일 발생한 학대가 5건(29.4%)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8건(47.1%),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 5건(29.4%),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 3건(17.6%)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0건 (58.8%),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7건(41.2%)으로 나타남.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 2014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77건, 초·중·고교 직원 145건, 유치원교직원 99건, 기타시설 종사자 29건 순으로 나타남.

- ▶ 각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2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33건(17.9%), 경상남도 81건(10.9%)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484건(65.0%), 여아 261건 (35.0%)이었음. 시설 종사자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 없음이 547건 (62.9%)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510건(68.5%), 남성 235건(31.5%)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20대가 241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156건(20.9%)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없음 368건(45.4%), 유치원교 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96건(66.4%), 초·중·고교 직원은 특성없음 226건 (57.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378건 (64.0%), 42건(7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보육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로 각각 145건(49.2%), 67건(46.2%), 15건(51.7%)이었다.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정서학대가 41건(4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8건(38.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 512건(47.5%), 신체학대 474건 (44.0%), 방임 65건(6.0%), 성학대 27건(2.5%) 순으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가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학대유형이 정서학대임.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361건(48.5%), 지속관찰 305건(40.9%), 아동과의 분리 78건(10.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1건(0.1%) 순으로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51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기관장 제외) 총 3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 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횟수, 교육·홍보·협력사업 실시 횟수 및 인원수를 선정함.
-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사례는 48.8건,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인당 168.2회, 피해 아동·학대행위자·가족 대상 서비스 총 1,341.6회, 교육홍보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38회, 홍보사업 30,917.8회, 협력사업 3.5회로 집계됨.
 - ▶ 2014년 사례는 상담원 1인당 28.5건이고, 2014년 이전에 종결되지 않고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인당 38.0건으로 총 1인당 66.5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47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7명으로 총 184명임.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업무량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총 245.4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는 1인당 18.2회, 심리치료 서비스는 1인당 227.2회, 심리치료 서비스 중 기타치료가 1인당 72.9회,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각각 1인당 69.8회, 64.0회, 가족치료는 1인당 20.5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2014년)

교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36.0%로 대폭 상승함.
-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에서 2013년까지 14.1%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1%가량 낮아진 13.1%의 비율을 보임.

교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 하락함.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었음.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작년대비 47.5%가 증가하였음.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거의 절반인 48.0%로 점점 아동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11.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이며, 친부모 가족 외 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인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08년 494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음.
- 최근 7년 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3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고, 2014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학대는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매년 최초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해마다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 보호는 30% 이내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외에 재학대 사례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타 기관에 의뢰되는 건수는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음.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법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36건으로 집계됨.
- 최근 4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각 살펴보면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음. 그러나 2014년에는 지속관찰에 해당하는 사례가 58.8%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가 41.2%였음.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 2014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38회, 수강 인 원수는 총 102.742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261회(25.1%). 전남 119 회(11.5%), 경남 112회(10.8%) 순으로 높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 역은 부산 21,470명(20,9%), 경북 12,543명(12,2%), 경기 11,846명(11,5%)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98회, 수강 인원수는 총 203.742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35회(12.3%). 충남과 경남이 각각 122회(11.1%)을 진행하였으며.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48,591명(23,8%), 서울 29,120명(14,3%), 경남 19,612명(9,6%) 순으로 나타남.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론

- 1. 발간목적 및 배경
- 2. 주요내용
- 3. 자료수집 과정
- 4. 자료분석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의무자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이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전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54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사례 및 교육 · 홍보활동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 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이러한 전국아 동학대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14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분류	내용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현황 □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회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3 지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4년 12월 말 기준, 기관장 제외 364명 상담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5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지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 부터 2014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 2. 신고자 유형
-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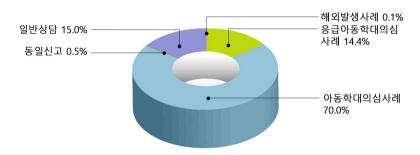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신고접수 건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791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566건. 12.459건 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4.5%를 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 전체의 0.5%에 해당하는 93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664건으로 15.0%에 해당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0	ト동학대의심사i	례			해외발생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동일신고	일반상담	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1,973	9,272	11,245	67	2,052	5	13,369
(2014.1.1.~2014.9.28.)	(14.8)	(69.4)	(84.1)	(0.5)	(15.3)	(0.0)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593	3,187	3,780	26	612	4	4,422
(2014.9.29.~2014.12.31.)	(13.4)	(72.1)	(85.5)	(0.6)	(13.8)	(0.1)	(100,0)
총합	2,566	12,459	15,025	93	2,664	9	17,791
	(14.4)	(70.0)	(84,5)	(0.5)	(15.0)	(0.1)	(100 <u>.</u> 0)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및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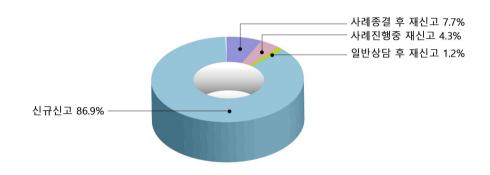
2014년에 신고접수된 17,791건 중 재신고 사례는 13.1%에 해당하는 2,338건이며, 이 외의 15,453건(86.9%)은 2014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366건(7.7%)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759건(4.3%), 213건(1.2%)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재신고사례는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이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학대사실이 보고되는 경우로 진행 중인 사건처리와는 별도로 추가조사 및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이고,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신규신고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1,050	510	170	1,730	11,639	13,369
(2014.1.1.~2014.9.28.)	(7.9)	(3.8)	(1.3)	(12.9)	(87.1)	(100.0)
이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316	249	43	608	3,814	4,422
(2014.9.29.~2014.12.31.)	(7.1)	(5.6)	(1.0)	(13.7)	(86.3)	(100.0)
총 합	1,366	759	213	2,338	15,453	17,791
	(7.7)	(4.3)	(1.2)	(13,1)	(86.9)	(100.0)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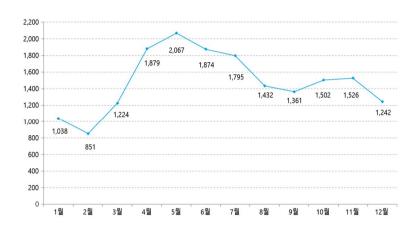
〈표 2-3〉은 2014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5월 2,067건(11.6%), 4월 1,879건(10.6%), 6월 1,874건(10.5%)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또한 4월 · 5월 · 6월에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정의 달 및 어린이주간을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언론홍보 및 캠페인 등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2월 851건 (4.8%), 1월 1,038건(5.8%) 순이다. 1·2월은 추운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져서 외관상 학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학 시기와 추운 날씨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이후 10월과 11월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 0.6%의 신고접수율이 상승하였다.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38	851	1,224	1,879	2,067	1,874	1,795	1,432	1,361	1,502	1,526	1,242	17,791
(5.8)	(4.8)	(6.9)	(10.6)	(11.6)	(10.5)	(10.1)	(8.0)	(7.6)	(8.4)	(8.6)	(7.0)	(100.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표 2-4》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건 (3.9%)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건(3.8%),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61건(3.7%),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건(3.4%),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건(3.4%)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해외발생			
지역 및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일반상담	동일신고	사례	계
	중앙*	0(0,0)	0(0,0)	0(0,0)	7(38,9)	2(11,1)	9(50,0)	18(100,0)
	서울특별시	5(1,4)	213(61,4)	218(62,8)	129(37.2)	0(0,0)	0(0,0)	347(100.0)
	서울특별시동부	72(12.4)	307(52.8)	379(65.2)	199(34.3)	3(0.5)	0(0.0)	581(100.0)
	서울강서	47(14.2)	197(59.7)	244(73.9)	84(25.5)	2(0.6)	0(0.0)	330(100.0)
110	서울은평	49(17.8)	146(53.1)	195(70.9)	74(26.9)	6(2.2) 2(0.7)	0(0.0)	275(100.0)
서울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58(19.3) 45(22,8)	167(55.5) 112(56.9)	225(74.8) 157(79,7)	74(24.6) 40(20,3)	0(0,7)	0(0.0) 0(0.0)	301(100,0) 197(100,0)
	서울마포	28(9,2)	191(62,6)	219(71,8)	86(28,2)	0(0.0)	0(0.0)	305(100,0)
	서울동남권**		-	-	-	- 0(0.0)		-
	소 계	304(13.0)	1,333(57.1)	1,637(70,1)	686(29.4)	13(0,6)	0(0.0)	2,336(100,0)
	부산광역시	36(9.3)	305(78.4)	341(87.7)	47(12.1)	1(0.3)	0(0.0)	389(100.0)
부산	부산동부 소 계	7(1,7)	352(85.6)	359(87,3)	50(12.2)	2(0.5)	0(0.0)	411(100,0)
	<u> </u>	43(5.4) 43(12.8)	657(82.1) 257(76.5)	700(87,5) 300(89,3)	97(12.1) 36(10,7)	3(0.4) 0(0,0)	0(0.0) 0(0.0)	800(100,0) 336(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60(19,7)	184(60,3)	244(80,0)	58(19,0)	3(1,0)	0(0.0)	305(100,0)
	소계	103(16,1)	441(68,8)	544(84,9)	94(14,7)	3(0,5)	0(0,0)	641(100,0)
	인천광역시	54(7.8)	399(57.9)	453(65.7)	235(34.1)	1(0.1)	0(0.0)	689(100.0)
인천	인천북부	59(26.6)	135(60.8)	194(87.4)	28(12.6)	0(0.0)	0(0.0)	222(100.0)
	인천미추홀*** 시 게	1(1,0) 114(11,3)	76(79,2) 610(60,6)	77(80,2) 724(71,9)	19(19.8) 282(28.0)	0(0,0)	0(0,0) 0(0,0)	96(100.0) 1,007(100.0)
광주	소 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50(17.7)	202(71.4)	252(89,1)	31(11.0)	0(0.0)	0(0.0)	283(100,0)
<u>광주</u> 대전	대천광역시	64(17.5)	285(78.1)	349(95.6)	16(4.4)	0(0.0)	0(0.0)	365(100,0)
울산	울산광역시	55(8,2)	459(68,7)	514(76,9)	152(22,8)	2(0,3)	0(0,0)	668(100.0)
	경기도	67(14.9)	356(78.9)	423(93.8)	26(5.8)	2(0.4)	0(0.0)	451(100.0)
	경기북부	52(11.6)	357(79.3)	409(90.9)	31(6.9) 42(9.1)	10(2,2) 1(0,2)	0(0.0)	450(100.0)
	경기성남 경기고양	66(14.3) 59(14.5)	351(76.3) 261(64.3)	417(90.6) 320(78,8)	82(20,2)	4(1,0)	0(0.0) 0(0.0)	460(100,0) 406(100,0)
	경기부천	27(5,4)	359(72,2)	386(77,6)	107(21.5)	4(0,8)	0(0,0)	497(100,0)
경기	경기화성	91(19.2)	321(67.7)	412(86.9)	62(13.1)	0(0.0)	0(0.0)	474(100 O)
	경기남양주	52(20.6)	169(67.1)	221(87.7)	27(10.7)	4(1.6)	0(0.0)	252(100.0)
	안산시	158(26.4)	385(64.4)	543(90.8)	53(8.9)	2(0.3)	0(0.0)	598(100.0)
	경기용인 경기시흥	47(12.8) 64(19.6)	288(78.7) 222(67.9)	335(91.5) 286(87.5)	28(7.7) 38(11.6)	3(0.8) 3(0.9)	0(0.0) 0(0.0)	366(100,0) 327(100,0)
	소 계	683(15,9)	3,069(71,7)	3,752(87,6)	496(11,6)	33(0,8)	0(0,0)	4,281(100.0)
	강원도	42(21.4)	122(62.2)	164(83,6)	32(16.3)	0(0.0)	0(0.0)	196(100,0)
강원	강원동부	29(10.4)	217(77.8)	246(88.2)	28(10.0)	5(1.8)	0(0.0)	279(100.0)
	원주시 소 계	38(19,0) 109(16,1)	137(68,5) 476(70,5)	175(87,5) 585(86,6)	24(12,0) 84(12,4)	1(0,5) 6(0,9)	0(0,0) 0(0,0)	200(100,0)
	충청북도	90(21,4)	265(63,1)	355(84,5)	65(15,5)	0(0,0)	0(0,0)	675(100.0) 420(100.0)
충북	충북북부	14(6.4)	165(75.0)	179(81.4)	33(15,0)	8(3.6)	0(0.0)	220(100.0)
중독	충북남부	12(10,2)	80(67,8)	92(78,0)	26(22,0)	0(0,0)	0(0,0)	118(100.0)
	소계	116(15.3)	510(67.3)	626(82,6)	124(16.4)	8(1.1)	0(0.0)	758(100,0)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부	90(18.8) 25(9.3)	338(70,7) 222(82,8)	428(89.5) 247(92.1)	49(10,3) 21(7,8)	1(0.2) 0(0,0)	0(0,0) 0(0,0)	478(100,0) 268(100,0)
충남	충청남도서부	10(18,2)	38(69,1)	48(87,3)	7(12,7)	0(0.0)	0(0.0)	55(100,0)
	소 계	125(15,6)	598(74.7)	723(90,3)	77(9,6)	1(0,1)	0(0,0)	801(100,0)
	전라북도	153(25.4)	387(64.3)	540(89.7)	62(10.3)	0(0.0)	0(0.0)	602(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97(16.1)	454(75.3)	551(91.4)	45(7.5)	7(1.2)	0(0.0)	603(100.0)
	전라북도동부 소 계	29(12,7) 279(19,5)	170(74,2) 1,011(70,5)	199(86,9) 1,290(90,0)	26(11,4) 133(9,3)	4(1,7) 11(0,8)	0(0,0) 0(0,0)	229(100.0) 1,434(100.0)
	전라남도 전라남도	18(4.6)	354(90.3)	372(94,9)	19(4.8)	1(0.3)	0(0.0)	392(100.0)
저나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50(20.3)	165(67.1)	215(87.4)	31(12.6)	0(0.0)	0(0.0)	246(100,0)
전남	전남중부권	46(15,9)	217(74,8)	263(90,7)	25(8,6)	2(0,7)	0(0,0)	290(100,0)
	소계	114(12.3)	736(79.3)	850(91,6)	75(8.1)	3(0.3)	0(0.0)	928(100.0)
	경북남부 경북북부	57(19.2) 31(13.1)	172(57.9) 185(78.4)	229(77.1) 216(91.5)	67(22,6) 19(8,1)	1(0.3) 1(0,4)	0(0,0) 0(0,0)	297(100.0) 236(100.0)
경북****	건물동무	55(17.4)	217(68,7)	272(86,1)	43(13,6)	1(0.4)	0(0.0)	316(100,0)
07	경북서부	21(6.8)	202(65.2)	223(72,0)	85(27.4)	2(0.6)	0(0.0)	310(100,0)
	소 계	164(14.2)	776(67.0)	940(81,2)	214(18.5)	5(0,4)	0(0.0)	1,159(100,0)
20.1	경상남도	107(16.2)	539(81.5)	646(97.7)	13(2.0)	2(0.3)	0(0.0)	661(100.0)
경남	경남서부 소 계	60(17,1)	283(80,6) 822(81,2)	343(97,7)	8(2,3) 21(2,1)	0(0,0) 2(0,2)	0(0,0)	351(100,0)
	소 _ 게 제주특별자치도	167(16,5) 38(11,8)	240(74,8)	989(97,7) 278(86,6)	43(13,4)	0(0,2)	0(0,0) 0(0,0)	1.012(100.0) 321(100.0)
제주	서귀포시	38(12,5)	234(77.0)	272(89,5)	32(10,5)	0(0.0)	0(0.0)	304(100.0)
	소 계	76(12,2)	474(75.8)	550(88,0)	75(12.0) 2.664(15.0)	0(0,0)	0(0,0)	625(100,0)
	계	2.566(14.4)	12.459(70.0)	15.025(84.4)	2.664(15.0)	93(0.5)	9(0.1)	17.791(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및 사례개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외발생사례의 경우 일반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접수 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구에 한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만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3) 시군구별 신고접수

(표 2-5)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7건(2.0%), 전북 익산시 296건(2.0%), 제주시 278건(1.9%), 서귀포시 272건(1.9%)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인천 옹진군 2건(0.0%), 강원 양구군 2건(0.0%), 전남 담양군 3건(0.0%) 순으로 신고건수가 낮았다.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2(0.1)	14(0.1)	16(0.1)
	종로구	6(0.2)	15(0.1)	21(0.1)
	서대문구	14(0.5)	37(0.3)	51(0.3)
	마포구	10(0.4)	97(0.8)	107(0.7)
	은평구	22(0.9)	74(0.6)	96(0.6)
	동대문구	13(0.5)	57(0.5)	70(0.5)
	중랑구	18(0.7)	87(0.7)	105(0.7)
	도봉구 성동구	23(0.9)	64(0.5)	87(0.6)
	성동구	7(0.3)	28(0.2)	35(0.2)
	강동구 강남구	1(0.0)	51(0.4)	52(0.3)
	강남구	0(0.0)	42(0.3)	42(0.3)
	성북구	22(0.9)	48(0.4)	70(0.5)
서울	서초구	1(0.0)	18(0.1)	19(0.1)
~12	송파구	1(0.0)	49(0.4)	50(0.3)
	노원구	23(0.9)	86(0.7)	109(0.7)
	용산구	4(0.2)	57(0.5)	61(0.4)
	강북구	21(0.8)	57(0.5)	78(0.5)
	광진구	9(0.4)	36(0.3)	45(0.3)
	영등포구	17(0.7)	64(0.5)	81(0.5)
	관악구	1(0.0)	34(0.3)	35(0.2)
	구로구	26(1.0)	50(0.4)	76(0.5)
	금천구	15(0.6)	52(0.4)	67(0.4)
	동작구	1(0.0)	18(0.1)	19(0.1)
	강서구	17(0.7)	117(0.9)	134(0.9)
	양천구	30(1.2)	81(0.7)	111(0.7)
	소계	304(11.8)	1,333(10.7)	1,637(10,5)
	중구 동구	4(0.2) 7(0.3)	8(0.1) 21(0.2)	12(0.1) 28(0.2)
	중구 서구	1(0.0)	19(0.2)	20(0,1)
	사하구	4(0.2)	51(0.4)	20(0.1) 55(0.4)
	어디구 영도구	4(0.2)	32(0.3)	36(0.2)
	동래구	0(0.0)	24(0.2)	24(0,2)
	남구	2(0.1)	29(0.2)	31(0.2)
	금정구	0(0.0)	38(0.3)	38(0,3)
부산	연제구	1(0.0)	55(0.4)	56(0.4)
T L	해운대구	5(0.2)	132(1.1)	137(0.9)
	수영구	0(0.0)	35(0.3)	35(0,2)
	부산진구	7(0.3)	46(0.4)	53(0.4)
	북구	3(0.1)	38(0,3)	41(0,3)
	사상구	4(0,2)	51(0.4)	55(0.4)
	강서구	0(0,0)	10(0,1)	10(0.1)
	기장군	1(0.0)	68(0,5)	69(0,5)
	소 계	43(1,7)	657(5,3)	700(4.9)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시를 실시한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는 상이 할 수 있음.

(다의 · 거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3(0.1)	9(0.1)	12(0.1)
	동구	11(0.4)	58(0.5)	69(0.5)
	북구	10(0.4)	81(0.7)	91(0,6)
	서구	10(0.4)	50(0.4)	60(0.4)
대구	달서구	42(1.6)	116(0.9)	158(1.1)
	남구	11(0.4)	48(0.4)	59(0.4)
	수성구	9(0.4)	59(0.5)	68(0,5)
	달성군	7(0.3)	20(0.2)	27(0,2)
	소 계	103(4.0)	441(3.5)	544(3.8)
	중구	6(0.2)	18(0.1)	24(0,2)
	동구	1(0.0)	17(0.1)	18(0.1)
	남구	25(1.0)	115(0.9)	140(0,9)
	부평구	26(1.0)	93(0.7)	119(0.8)
	서구	13(0.5)	112(0.9)	125(0.8)
인천	남동구	9(0.4)	126(1.0)	135(0,9)
	연수구	1(0.0)	76(0.6)	77(0.5)
	계양구	33(1.3)	42(0.3)	75(0.5)
	강화군	O(O.O)	9(0.1)	9(0.1)
	옹진군	O(O.O)	2(0.0)	2(0.0)
	소 계	114(4.4)	610(4.9)	724(4.8)
	북구	6(0.2)	54(0.4)	60(0,4)
	동구	1(0.0)	14(0.1)	15(0.1)
광주	서구	12(0.5)	54(0.4)	66(0.4)
청구	남구	7(0.3)	23(0.2)	30(0,2)
	광산구	24(0.9)	57(0.5)	81(0,5)
	소 계	50(1.9)	202(1.6)	252(1.6)
	동구	11(0.4)	47(0.4)	58(0.4)
	중구	17(0.7)	69(0.6)	86(0.6)
대전	서구	21(0.8)	92(0.7)	113(0,8)
네신	유성구	9(0.4)	33(0.3)	42(0,3)
	대덕구	6(0.2)	44(0.4)	50(0.3)
	소 계	64(2.5)	285(2.3)	349(2.4)
	남구	17(0.7)	112(0.9)	129(0.9)
	중구	17(0.7)	119(1.0)	136(0,9)
울산	동구	8(0.3)	60(0.5)	68(0.5)
20	북구	5(0.2)	79(0.6)	84(0.6)
	울주군	8(0.3)	89(0.7)	97(0.6)
	소 계	55(2.1)	459(3.7)	514(3.5)
	고양시 일산동구	10(0.4)	42(0.3)	52(0.3)
	고양시 일산서구	4(0.2)	26(0.2)	30(0,2)
	고양시 덕양구	18(0.7)	106(0.9)	124(0.8)
	파주시	25(1.0)	87(0.7)	112(0.7)
	김포시	7(0.3)	98(0.8)	105(0.7)
	부천시 원미구	12(0.5)	1 16(0.9)	128(0.9)
	부천시 오정구	8(0.3)	79(0.6)	87(0.6)
	부천시 소사구	0(0.0)	67(0.5)	67(0.4)
경기	광명시	18(0.7)	78(0.6)	96(0.6)
	안산시 단원구	89(3.5)	157(1.3)	246(1.6)
	안산시 상록구	69(2.7)	228(1.8)	297(2,0)
	과천시	2(0.1)	7(0.1)	9(0.1)
	시흥시	46(1.8)	144(1.2)	190(1.3)
	안양시 만안구	4(0.2)	36(0.3)	40(0.3)
	안양시 동안구	4(0.2)	42(0.3)	46(0.3)
	군포시	5(0.2)	29(0.2)	34(0,2)
	의왕시	0(0.0)	23(0.2)	23(0,2)
	 			

(단위 : 건,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Й
	수원시 장안구	9(0.4)	53(0.4)	62(0.4)
	수원시 권선구	19(0.7)	81(0.7)	100(0.7)
	수원시 팔달구	13(0.5)	43(0.3)	56(0.4)
	수원시 영통구	11(0.4)	42(0.3)	53(0.4)
	화성시	20(0.8)	92(0.7)	112(0.7)
	용인시 기흥구	12(0.5)	70(0.6)	82(0.5)
	오산시	18(0.7)	40(0.3)	58(0.4)
	용인시 수지구	4(0.2)	68(0.5)	72(0.5)
	용인시 처인구	17(0.7)	60(0.5)	77(0.5)
	평택시	31(1.2)	95(0.8)	126(0.8)
	안성시	22(0.9)	94(0.8)	116(0.8)
	성남시 수정구	7(0.3)	124(1.0)	131(0.9)
	성남시 중원구	19(0.7)	73(0.6)	92(0.6)
74 7 1	성남시 분당구	11(0.4)	34(0.3)	45(0.3)
경기	광주시	19(0.7)	73(0.6)	92(0.6)
	하남시	7(0.3)	30(0.2)	37(0.2)
	이천시	9(0.4)	50(0.4)	59(0.4)
	여주군	5(0.2)	40(0.3)	45(0.3)
	구리시	14(0.5)	55(0.4)	69(0.5)
	남양주시	36(1.4)	103(0.8)	139(0.9)
	양평군	3(0.1)	17(0.1)	20(0.1)
	가평군	2(0.1)	11(0.1)	13(0.1)
	의정부시	29(1.1)	156(1.3)	185(1.2)
	양주시	8(0.3)	75(0.6)	83(0.6)
	동두천시	2(0.1)	53(0.4)	55(0.4)
	연천군	2(0.1)	26(0.2)	28(0.2)
	포천시	11(0.4)	47(0.4)	58(0.4)
	소 계	681(26.5)	3,070(24.6)	3,751(25,0)
	춘천시	32(1.2)	63(0.5)	95(0.6)
	화천군	2(0.1)	2(0.0)	4(0.0)
	강릉시	13(0.5)	75(0.6)	88(0.6)
	양양군	0(0.0)	12(0.1)	12(0.1)
	속초시	3(0.1)	24(0.2)	27(0.2)
	고성군	2(0.1)	10(0.1)	12(0.1)
	원주시	38(1.5)	137(1.1)	175(1.2)
	횡성군	0(0.0)	11(0.1)	11(0.1)
	영월군	2(0.1)	6(0.0)	8(0.1)
강원	평창군	2(0.1)	8(0.1)	10(0.1)
	정선군	O(O.O)	21(0.2)	21(0.1)
	태백시	0(0.0)	5(0.0)	5(0.0)
	동해시	8(0.3)	45(0.4)	53(0.4)
	삼척시	3(0.1)	25(0.2)	28(0.2)
	홍천군	1(0.0)	17(0.1)	18(0.1)
	인제군	0(0.0)	4(0.0)	4(0.0)
	양구군	1(0.0)	1(0.0)	2(0.0)
	철원군	2(0.1)	10(0.1)	12(0.1)
	소 계	109(4.2)	476(3.8)	585(4.0)
		100(1.2)	17 0(0.0)	333(4,3)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청주시 상당구	27(1.1)	51(0.4)	78(0.5)
	청주시 흥덕구	35(1.4)	91(0.7)	126(0.8)
	청원군	5(0.2)	40(0.3)	45(0.3)
	진천군	8(0.3)	4(0.0)	12(0.1)
	괴산군	9(0.4)	54(0.4)	63(0.4)
	증평군	3(0.1)	8(0.1)	11(0.1)
호브	음성군	3(0.1)	17(0.1)	20(0.1)
충북	영동군	2(0.1)	23(0.2)	25(0.2)
	옥천군	8(0.3)	29(0.2)	37(0.2)
	보은군	2(0.1)	28(0.2)	30(0.2)
	충주시	6(0.2)	57(0.5)	63(0.4)
	제천시	8(0.3)	99(0.8)	107(0.7)
	단양군	O(O.O)	9(0.1)	9(0.1)
	소 계	116(4.5)	510(4.1)	626(4.1)
	금산군	0(0.0)	19(0.2)	19(0.1)
	공주시	6(0.2)	18(0.1)	24(0.2)
	논산시	18(0.7)	87(0.7)	105(0.7)
	계룡시	2(0.1)	35(0.3)	37(0.2)
	부여군	3(0.1)	41(0.3)	44(0.3)
	서천군	1(0.0)	3(0.0)	4(0.0)
	천안시 동남구	19(0.7)	67(0.5)	86(0.6)
	천안시 서북구	26(1.0)	84(0.7)	110(0.7)
えい	아산시	17(0.7)	53(0.4)	70(0.5)
충남	예산군	0(0.0)	13(0.1)	13(0.1)
	당진시	12(0.5)	30(0.2)	42(0.3)
	청양군	0(0.0)	10(0.1)	10(0.1)
	홍성군	3(0.1)	16(0.1)	19(0.1)
	보령시	2(0.1)	49(0.4)	51(0.3)
	서산시	8(0.3)	33(0.3)	41(0.3)
	태안군	3(0.1)	19(0.2)	22(0.1)
	세종특별자치시	5(0.2)	20(0.2)	25(0.2)
	소 계	125(4.9)	597(4.8)	722(4.8)
	전주시 완산구	56(2.2)	173(1.4)	229(1.5)
	전주시 덕진구	63(2.5)	133(1.1)	196(1.3)
	완주군	13(0.5)	39(0.3)	52(0.3)
	임실군	2(0.1)	16(0.1)	18(0.1)
	진안군	3(0.1)	8(0.1)	11(0.1)
	무주군	3(0.1)	1(0.0)	4(0.0)
	익산시	55(2.1)	241(1.9)	296(2.0)
전북	군산시	28(1.1)	138(1.1)	166(1.1)
인독	김제시	10(0.4)	37(0.3)	47(0.3)
	부안군	0(0.0)	16(0.1)	16(0.1)
	정읍시	15(0.6)	33(0.3)	48(0.3)
	고창군	3(0.1)	21(0.2)	24(0.2)
	남원시	24(0.9)	137(1.1)	161(1.1)
	순창군	1(0.0)	7(0.1)	8(0.1)
	장수군	2(0.1)	10(0.1)	12(0.1)
	소 계	278(10.8)	1,010(8.1)	1,288(8.6)
				(계속)

(단위 : 건, %)

UE	1177	O 그 이트 하네이나 나라	이트를테이보니데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 a)
	영광군	11(0.4)	24(0.2)	35(0.2)
	장성군	12(0.5)	15(0.1)	27(0.2)
	곡성군	0(0.0)	4(0.0)	4(0.0)
	담양군	2(0.1)	1(0.0)	3(0.0)
	화순군	4(0.2)	53(0.4)	57(0.4)
	나주시	10(0.4)	82(0.7)	92(0.6)
	함평군	1(0.0)	14(0.1)	15(0.1)
	영암군	4(0.2)	23(0.2)	27(0.2)
	강진군	1(0.0)	9(0.1)	10(0.1)
	장흥군	5(0.2)	19(0.2)	24(0.2)
	목포시	32(1.2)	79(0.6)	111(0.7)
전남	무안군	3(0.1)	12(0.1)	15(0.1)
	신안군	0(0.0)	11(0.1)	11(0.1)
	해남군	5(0.2)	26(0.2)	31(0.2)
	완도군	2(0.1)	5(0.0)	7(0.0)
	진도군	4(0.2)	9(0.1)	13(0.1)
	순천시	4(0.2)	95(0.8)	99(0.7)
	구례군	0(0.0)	4(0.0)	4(0.0)
	광양시	6(0.2)	56(0.4)	62(0.4)
	보성군	1(0.0)	13(0.1)	14(0.1)
	고흥군	0(0.0)	36(0.3)	36(0,2)
	여수시	8(0.3)	146(1.2)	154(1.0)
	소 계	115(4.5)	736(5.9)	851(5.6)
	경산시	25(1.0)	36(0.3)	61(0.4)
	청도군	0(0.0)	9(0.1)	9(0.1)
	군위군	0(0.0)	5(0.0)	5(0.0)
	고령군	0(0.0)	12(0.1)	12(0.1)
	칠곡군	0(0.0)	46(0.4)	46(0.3)
	성주군	3(0.1)	19(0.2)	22(0.1)
	구미시	16(0.6)	97(0.8)	113(0.8)
	김천시	1(0.0)	13(0.1)	14(0.1)
	상주시	1(0.0)	15(0.1)	16(0,1)
	문경시	2(0.1)	17(0.1)	19(0.1)
	영주시	1(0.0)	34(0.3)	35(0.2)
경북	봉화군	6(0.2)	18(0.1)	24(0.2)
04	예천군	0(0.0)	13(0.1)	13(0.1)
	안동시	22(0.9)	113(0.9)	135(0.9)
	청송군	1(0.0)	3(0.0)	4(0.0)
	영양군	2(0.1)	7(0.1)	9(0.1)
	영덕군	0(0.0)	11(0.1)	11(0.1)
	울진군	3(0.1)	17(0.1)	20(0.1)
	의성군	4(0.2)	29(0.2)	33(0.2)
	영천시	6(0.2)	14(0.1)	20(0.1)
	경주시	20(0.8)	62(0.5)	82(0.5)
	포항시 남구	25(1.0)	108(0.9)	133(0.9)
	포항시 북구	28(1.1)	79(0.6)	107(0.7)
	소 계	166(6.5)	777(6.2)	943(6.2)

(단위 : 건, %)

				(근귀 · 건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김해시	30(1.2)	140(1.1)	170(1.1)
	양산시	9(0.4)	45(0.4)	54(0.4)
	밀양시	3(0.1)	23(0.2)	26(0,2)
	창원시 마산회원구	7(0.3)	51(0.4)	58(0.4)
	창원시 마산합포구	8(0.3)	44(0.4)	52(0.3)
	창녕군	2(0.1)	12(0.1)	14(0.1)
	의령군	2(0.1)	4(0.0)	6(0.0)
	함안군	1(0.0)	6(0.0)	7(0.0)
	고성군	2(0.1)	28(0.2)	30(0.2)
	창원시 의창구	14(0.5)	29(0.2)	43(0.3)
	창원시 성산구	2(0.1)	18(0.1)	20(0.1)
경남	창원시 진해구	7(0.3)	37(0.3)	44(0.3)
	통영시	7(0.3)	16(0.1)	23(0.2)
	거제시	13(0.5)	82(0.7)	95(0.6)
	진주시	35(1.4)	148(1.2)	183(1,2)
	사천시	20(0.8)	53(0.4)	73(0.5)
	산청군	0(0.0)	13(0.1)	13(0.1)
	하동군	0(0.0)	4(0.0)	4(0.0)
	남해군	1(0.0)	41(0.3)	42(0.3)
	거창군	4(0.2)	18(0.1)	22(0.1)
	함양군	0(0.0)	6(0.0)	6(0.0)
	합천군	0(0.0)	4(0.0)	4(0.0)
	소 계	167(6.5)	822(6.6)	989(6.4)
	제주시	38(1.5)	240(1.9)	278(1.9)
제주	서귀포시	38(1.5)	234(1.9)	272(1,8)
	소 계	76(3.0)	474(3.8)	550(3,7)
	총 계	2,566(100,0)	12,459(100.0)	15,025(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개직군으로 확대되었다.

《표 2-6》는 응급이동학대의심사례와 이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58건(29.0%)이었다. 이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이 1,998건(13.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건(4.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건(1.8%), 보육교직원 273건(1.8%)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0,667건(71.0%)으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종사자가 3,486건(23.2%)으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찰 2,204건(14.7%), 부모 1,991건(13.3%)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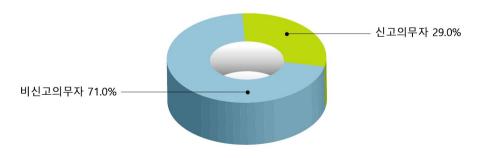
특히 경찰 신고건수는 2013년 724건(6.7%)에서 2014년에는 2,204건(14.7%)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조항을 통하여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중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 본인의 신고의 증가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148건(1.3%)이었으나 시행 이후에 480건 (12.7%)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암묵적인 사회의 분위기 형성과 더불어 아동권리교육 또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이 향상된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 진다.

〈표 2-6〉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단귀 · 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총합
초·중·고교 직원	1,393(12.4)	595(15.7)	1,988(13,2)
의료인	93(0.8)	30(0.8)	123(0,8)
·—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38(2.1)	37(1.0)	275(1.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9(0,2)	5(0.1)	24(0,2)
보육교직원	206(1.8)	67(1.8)	273(1.8)
고학교 국년 유치원교직원.강사	21(0,2)	22(0,6)	43(0.3)
유시년교 국년, 3시 학원강사	26(0.2)	0(0.0)	26(0.2)
소방구급대원	20(0.2)	8(0.2)	28(0.2)
조랑구합내면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1(0.0)	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0.1)	4(0.1)	10(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33(1.2)	41((1.1)	174(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77(5.1)	123(3.3)	700(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4(0.9)	47(1.2)	151(1.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6(0.2)	1(0.0)	27(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7(0.9)	7(0.2)	104(0.7)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3(0.1)	5(0.1)	18(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0.2)	2(0.1)	20(0.1)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0.5)	25(0.7)	78(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7(0.2)	3(0.1)	20(0.1)
응급구조사	2(0.0)	O(O.O)	2(0.0)
의료기사	0(0.0)	O(O.O)	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41(1.3)	44(1.2)	185(1,2)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10(0.1)	4(0.1)	14(0.1)
아이돌보미	O(O.O)	O(O.O)	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O(O.O)	73(1.9)	73(0.5)
소 계	3,214(28.6)	1,144(30.3)	4,358(29.0)
비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총합
아동본인	148(1.3)	480(12.7)	628(4.2)
부모	1,297(11.5)	694(18.4)	1,991(13,3)
형제,자매	43(0.4)	67(1.8)	110(0.7)
친인척	385(3.4)	151(4.0)	536(3.6)
이웃,친구	932(8.3)	270(7.1)	1,202(8.0)
경찰	1,992(17.7)	212(5.6)	2,204(14.7)
 종교인	16(0.1)	4(0.1)	20(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925(26.0)	561(14.8)	3,486(23.2)
낯선사람	101(0.9)	92(2.4)	193(1.3)
익명	37(0,3)	61(1.6)	98(0.7)
기타	155(1.4)	44(1,2)	199(1.3)
<u>소</u> 계	8,031(71.4)	2,636(69.7)	10,667(71.0)
<u>계</u>	11,245(100.0)	3,780(100.0)	15,025(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11- 1-5							17015	T.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1-	-1		신	<u> </u> 고의무:	사		-11			
지역	및 기관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 서울22명 서울0등포 서울0등포 서울성복 서울마포 서울동남권*	29 55 33 18 26 12 48 –	5 10 0 2 3 3 3 -	0 9 3 2 14 0 1 -	0 0 0 0 0 0	1 3 5 3 1 8 0 -	1 4 0 0 0 0 0 2 -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	0 6 0 1 2 0 0	7 7 3 4 25 2 6 -	1 3 6 8 0 1 2 -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소 계	76 48 124	9 1 10	6 4 10	1 0	11 9 20	1 0	2 1 3	0 0 0	0 0 0	0 0 0	0 1 1	21 19 40	6 2 8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부 소 계	66 54 120	2 1 3	3 1 4	1 0	6 1 7	2 0 2	2 0 2	0 0	0 0	0 0 0	0 4 4	8 7 15	8 1 9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북부 인천미추홀 소 계	56 20 12 88	4 2 1 7	3 2 0 5	0 0 0	10 6 3 19	3 0 0 3	0 0 0	0 0 0	0 0 0	5 1 0 6	2 0 0 2	24 6 1 31	0 7 1 8
<u>광주</u> 대전	광주광역시 대저광역시	47 51	0 2	6	3 2	8 5	0	0	2	0	0	1 5	13 10	0 4
울산	울산광역시	123	5	2	5	8	3	12	1	0	0	1	27	4
경기	경기도 경기목부 경기성남 경기성당 경기보양 경기남양주 안산시 경기용인 경기시흥 소 계	31 38 46 37 31 75 29 55 32 41	7 1 2 7 2 1 0 1 3	2 1 0 1 9 1 9 3 4	0 0 0 1 0 0 0 4 0	5 20 3 1 4 15 2 15 4 2	0 0 0 0 1 2 0 3	0 0 0 1 0 0 0	2 4 2 0 0 1 0 1 2 1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 2 0 0 2 0 0 3 0	17 31 13 7 9 41 18 5 6 11	7 0 5 4 4 1 5 2 5 2
강원	강원도 강원동부 원주시 소 계	38 42 23 103	0 3 0 3	0 1 5 6	0 2 0 2	2 3 3 8	3 0 0 3	0 0 0	0 1 0	0 0 0	0 0 0	0 10 3 13	4 17 5 26	0 5 1 6
충북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소 계	38 25 21 84	4 0 1 5	13 13 2 28	0 0 2	7 2 0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3 9 0 12	6 10 2 18	9 3 0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서부 소 계	64 27 12 103	11 0 0	18 2 0 20	1 0 0	4 5 5	0 0 0	2 0 0	3 0 0 3	0 0 0	0 0 0	27 3 3 3	23 14 5 42	10 11 0 21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동부 소 계	71 66 21 158	5 1 4 10	11 14 14 39	1 0 0	3 14 7 24	4 3 0 7	4 0 0 4	1 0 0	0 0 0	0 0 0	1 15 0 16	31 7 9 47	1 2 1
전남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소 계	43 11 43 97	0 1 4 5	9 5 9 23	0 1 0	4 2 3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1 2 11	36 22 14 72	0 0 0
경북	경북남부 경북북부 경북동부 경북서부 소 계	41 43 24 28 136	0 1 1 0	6 3 11 11 31	0 0 0 0	4 7 4 3 18	0 0 1 0	0 0 0 0	0 0 0 3 3	0 0 0 0	0 0 0 0	5 1 0 2 8	9 8 7 6 30	2 0 5 1
경남	경상남도 경남서부 소 계	65 22 87	2 3 5	10 4 14	0 0	10 8 18	0 0	0 0 0	3 0 3	1 0	0	9 36 45	33 30 63	3 0 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1 10	3	10	0	8	4 0	0	0	0	0	2 0	17 37	2 6 8
	<u>소계</u> 계	31 1,988 (16.5)	3 123 (0,8)	275 (1.8)	0 24 (0,2)	273 (1.8)	43 (0,3)	0 26 (0,2)	28 (0,2)	0 2 (0.0)	0 10 (0,1)	174 (1.2)	700 (4.7)	8 151 (1.0) (계속)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신	<u> </u> 고의무:	자					
지역	및 기관		아동복지 전담공무 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 재활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 서울강서 서울인등포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서울마포 서울동남권	0 0 0 0 0 0	0 5 0 0 0 0 1 -	0 0 0 0 0 0	0 0 0 0 0 0 1 -	1 3 1 0 0 1 9 -	0 0 0 0 0 1 0 -	0 1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5 4 0 2 -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3 0 0 0 0 - 6	48 110 57 43 75 28 76 -
부산	소 계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소 계	0 0 4 4	2 4 6	0 0	0 0	1 2 3	0 0	0 0	0 0	4 3 7	2 0 2	0 0	2 0 2	144 98 242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부 소계	0 0 0	0 0 0	1 2 3	0 0 0	1 0 1	1 0 1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101 72 173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북부 인천미추홀 소 계	0 0 0	1 18 0 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3 0 0 3	116 62 18 196
광주 대전 울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0 2 0	1 3 3	0 0 0	0 0 0	3 0 0	0 0 1	0 0 0	0 0 0	3 5 6	1 0 0	0 0 0	0 3 0	88 105 201
경기	경기도 경기북부 경기성남 경기교양 경기부천 경기남양주 안산시 경기용인 경기시흥 소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4 3 0 0 12 2 10 1	0 0 1 2 0 0 2 0 0	0 0 3 0 0 1 0 0 0	4 2 1 6 1 3 15 0 5 2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8 11 10 1 7 10 7 6 1 1	0 0 0 0 1 0 0	0 0 0 0 0 0	2 1 7 0 0 1 4 2 1 1	92 123 99 71 69 163 98 98 80 69
강원	강원도 강원동부 원주시 소 계	1 3 0 4	0 0 0	0 0 2 2	0 1 0	0 0 0	0 2 1	0 0 0	0 0 0 0	1 4 0 5	0 0 0	0 0 0	0 8 0 8	49 102 43 194
충북	호 계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소 계	1 0 1 2	0 0 0 4 4	0 0 0	0 1 1 2	8 2 3	1 0 0	0 0 0	0 0 0 0	3 6 0	0 0 0	0 0 0	0 0 0	96 71 37 204
충남	호청남도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서부 소 계	2 0 0	1 4 0 5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5 4 0	2 0 0	0 0 0	2 8 3	177 78 28 283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동부 소 계	0 0 0	0 3 4 7	4 0 0	0 1 5	0 0 0	0 0 0	0 0	0 0 0 0	6 1 0 7	4 2 0	0 0 0	4 6 3	151 135 68 354
전남	전라남도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0 5 0	0 0 0 0	2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12 13 1	0 0 0	0 0 0 0	0 2 2 4	116 64 78 258
경북	소 계 경북남부 경북북부 경북동부 경북서부 소 계	0 0 0 0	0 0 0 1 0	0 0 1 1	0 2 2 0 4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4 1	0 0 1 0	0 0 0 0	1 0 0 0	69 68 63 56 256
경남	경상남도 경남서부	0 0	0 3	0	1 0	0	5 2	0 0	0 0	8 7	0	0	1 0	151 116
제주	소 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 계	0 0 8 8	3 0 1	0 0 0	1 0 0	0 0 0	7 1 0	0 0 0	0 0 0	15 2 0 2	0 0 0	0 0 0	0 0 0	267 70 68 138
	계 계	27 (0.2)	104 (0.7)	18 (0,1)	20 (0.1)	78 (0.5)	20 (0,1)	(0.0)	(O,O)	185 (1.2)	14 (0,1)	(0.0)	73 (0.5)	4.358 (29.0)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단위 : 건, %)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낯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계
지역 5	및 기관			7 -11					종사자	710				
	서울특별시	38	38	3	6	32	16	0	17	4	11	5	170	218(1.5)
	서울특별시동부	23	56	4	6	38	57	0	75	3	1	6	269	379(2.5)
	서울강서	13	34	2	7	20	32	1	69	7	1	1	187	244(1.6)
	서울은평	15	38	0	9	28	39	0	19	1	2	1	152	195(1.3)
서울	서울영등포	13	25	1	7	23	32	2	27	9	5	6	150	225(1.5)
	서울성북	5	16	1	5	17	25	0	48	4	0	8	129	157(1.0)
	서울마포	13	24	2	11	28	28	0	32	0	4	1	143	219(1.5)
	서울동남권*	120	231	13	51	186	229	3	287	28	24	28	1 200	1 637(10.0)
	소 계 부산광역시	120	34	6	14	39	43	0	36	6	1	10	1,200	1,637(10,9) 341(2,3)
부산	무선등 탁시 부산동부	7	44	2	2	27	49	0	119	8	0	3	261	359(2.4)
十世	소 계	15	78	8	16	66	92	0	155	14	1	13	458	700(4,7)
	대구광역시	21	47	7	17	23	40	3	38	2	1	0	199	300(2,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5	37	4	1	11	46	0	59	5	2	2	172	244(1.6)
-11 1	소계	26	84	11	18	34	86	3	97	7	3	2	371	544(3.6)
	기차광역시 기천광역시	5	60	0	7	35	108	0	111	6	0	5	337	453(3.0)
	인천북부	2	17	2	14	16	50	0	25	1	3	2	132	194(1.3)
인천	인천미추홀	9	10	4	3	17	7	0	7	0	2	0	59	77(0.5)
	소 계	16	87	6	24	68	165	0	143	7	5	7	528	724(4.8)
 광주	광주광역시	11	40	0	12	17	52	0	24	2	2	4	164	252(1,7)
대전	대전광역시	18	69	3	4	32	46	0	55	2	8	7	244	349(2,3)
울산	울산광역시	19	58	4	25	23	77	0	87	11	0	9	313	514(3.4)
	경기도	43	68	3	12	54	94	0	40	5	5	7	331	423(2,8)
	경기북부	19	56	2	21	17	84	2	73	5	4	3	286	409(2,7)
	경기성남	21	55	3	18	56	37	0	107	4	17	0	318	417(2,8)
	경기고양	15	44	4	13	27	57	0	76	6	4	3	249	320(2,1)
	경기부천	18	60	1	21	31	49	1	131	2	2	1	317	386(2,6)
경기	경기화성	14	65	5	16	26	56	2	49	9	2	5	249	412(2,7)
	경기남양주	7	27	2	5	18	31	0	23	4	2	4	123	221(1.5)
	안산시	20	58	4	10	66	64	0	214	2	2	5	445	543(3.6)
	경기용인	49	63	3	9	25	39	0	62	4	1	0	255	335(2.2)
	경기시흥	8	19	1	9	33	58	0	78	6	1	4	217	286(1.9)
	소 계	214	515	28	134	353	569	5	853	47	40	32	2,790	3,752(25.0)
	강원도	5	24	1	9	12	23	0	28	6	1	6	115	164(1.1)
강원	강원동부	10	32	4	5	19	28	0	40	2	1	3	144	246(1.6)
	원주시	3	20	1	6	12	15	0	70	2	0	3	132	175(1.2)
	소계	18	76	6	20	43	66	0	138	10	2	12	391	585(3.9)
	충청북도 초ㅂㅂㅂ	5	40	0	12	26	51	1	106	10	0	8	259	355(2.4)
충북	충북북부 초보나비	9	34 5	0	7	11 2	9	3	40	0	0	3	108	179(1,2)
	충북남부 소 계	1 15	79	1	23	39	10 70	4	170	10	0	11	55 422	92(0.6) 626(4.2)
	<u> </u>	13	19	1	20	09	10	4	170	10	U	- 11	422	(계속)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단위 : 건, %)

													(근귀 · 신, ※	
	신고자유형						비신고	의무자						
지역 [및 기관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계
	충청남도	19	77	3	26	34	57	0	23	6	1	5	251	428(2,8)
ティレ	충청남도남부	9	21	0	10	10	31	0	86	0	0	2	169	247(1.6)
충남	충청남도서부	0	1	0	0	3	7	0	9	0	0	0	20	48(0.3)
	소 계	28	99	3	36	47	95	0	118	6	1	7	440	723(4.8)
	전라북도	10	70	1	16	34	79	5	160	10	0	4	389	540(3.6)
전북	전라북도서부	13	69	1	26	36	141	0	116	5	6	3	416	551(3.7)
신독	전라북도동부	1	13	3	12	10	19	0	61	4	2	6	131	199(1,3)
	소 계	24	152	5	54	80	239	5	337	19	8	13	936	1,290(8,6)
	전라남도	10	52	5	25	54	53	0	51	2	0	4	256	372(2,5)
전남	전남서부권	9	32	1	17	20	46	0	16	3	0	7	151	215(1.4)
건급	전남중부권	4	20	2	4	8	21	0	124	2	0	0	185	263(1.8)
	소 계	23	104	8	46	82	120	0	191	7	0	11	592	850(5,7)
	경북남부	13	27	2	6	9	37	0	54	1	0	11	160	229(1.5)
	경북북부	8	21	3	4	7	29	0	69	5	0	2	148	216(1.4)
경북*	경북 동 부	20	27	1	6	18	37	0	89	3	1	7	209	272(1.8)
	경북서부	4	16	2	9	12	25	0	91	0	0	8	167	223(1,5)
	소 계	45	91	8	25	46	128	0	303	9	1	28	684	940(6.3)
	경상남도	15	97	4	30	22	81	0	229	6	0	11	495	646(4.3)
경남	경남서부	7	39	0	5	26	36	0	112	1	0	1	227	343(2,3)
	소 계	22	136	4	35	48	117	0	341	7	0	12	722	989(6,6)
	제주특별자치도	7	65	1	11	24	38	0	56	5	0	1	208	278(1.9)
제주	서귀포시	7	27	1	2	14	15	0	131	2	3	2	204	272(1.8)
	소 계	14	92	2	13	38	53	0	187	7	3	3	412	550(3.7)
	계	628 (4.2)	1,991 (13.3)	110 (0.7)	536 (3.6)	1,202 (8.0)	2,204 (14,7)	20 (0,1)	3,486 (23.2)	193 (1.3)	98 (0.7)	199 (1.3)	10,667 (71,0)	15,025 (100.0)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복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복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복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 동보호전문기관이 경복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한위 · 전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서울	중구 구구구 종로문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2 12 21 14 7 26 6 5 8 2 6 5 4 11 15 2 4 6 8 5 15 2 13 20 221	0 0 0 1 0 3 0 3 2 0 1 0 0 3 4 2 2 1 0 1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1 6 0 0 0 0 0 0 0 1 1 1 0 0 0 1 1 1 0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0 0 1 0		0 0 0 0 3 1 0 7 0 0 0 0 1 1 0 0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4 0 2 0 0 1 0 0 2 2 1 4 1 4 0 1 8 3 7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	중구 동구 서하구 영도구 남구 구 성제 다구 구 산진구 사상구 사상구 사상구 사상구 사상구 사장진 사상구 사장진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수영진 사장기 사장기 수영지 사장기 사장기 수영지 사장기 사장기 수영지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사장기	3 6 2 10 6 3 10 10 3 16 11 11 16 11 1 5	1 2 0 1 4 0 0 0 0 0 0 0 0 0 0 1 1 0 1 1 1 1	0 0 0 1 0 0 1 0 2 2 0 0 0 4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2 0 0 3 0 0 2 0 5 0 0 5 2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3 1 2 0 1 5 7 3 4 2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합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는 상이 할 수 있음.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총계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2
	종로구	0	0	0	0	0	0	0	0	0	0	0	0	3
	서대문구 마포구	0	0	1	0	0	0	0	0 2	0	9	0	0	23 29
	- 미포구 은평구	1 0	0	0	0	0	0	0	4	0	0	0	0	23
	동대문구	0	0	0	0	0	0	0	0	0	0	0	0	23 17
	중랑구	1	0	0	0	0	0	0	0	0	1	0	0	38
	도봉구	0	0	0	0	0	0	0	0	0	0	0	0	16
	성동구	1	0	0	0	0	0	0	0	0	1	0	0	10
	강동구	0	0	0	1	0	0	0	0	0	1	0	0	11
	강남구	0	0	0	0	0	0	0	1	0	0	0	0	5
	성북구	0	0	0	1	1	0	0	0	0	1	0	0	12
서울	서초구	0	0	0	0	0	0	0	0	0	0	0	0	8
시크	송파구	0	0	0	0	0	0	0	1	0	0	0	0	9
	노원구	3	0	0	3	0	1	0	0	1	0	0	3	33
	용산구	0	0	0	2	0	0	0	0	0	0	0	0	24
	강북구	0	0	0	8	0	0	0	1	0	0	0	0	17
	광진구	0	0	0	0	0	0	0	0	0	1	0	0	10
	영등포구	0	0	0	0	0	0	0	0	0	0	0	0	26
	관악구 구로구	0	0	0	0	0	0	0	2	0	0	0	0	12 27
		0	0	0	0	0	0	0	2	0	0	0	0	22
	동작구	0	0	0	0	0	0	0	0	0	0	0	0	3
	강서구	0	0	0	2	0	0	0	0	0	0	0	3	23
	양천구	0	0	0	4	0	0	0	1	0	1	0	0	34
	소계	6	0	1	21	1	1	0	14	1	15	0	6	437
	중구	0	0	0	2	0	0	0	0	0	0	0	0	7
	동구	0	0	0	0	0	0	0	1	0	0	0	0	12
	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5
	사하구	0	0	0	0	0	0	0	1	2	0	0	1	20
	영도구	0	0	0	0	0	0	0	0	0	0	0	0	17
	동래구	0	0	0	0	0	0	0	0	0	0	0	0	5
	남구	0	0	0	1	0	0	0	0	0	1	0	1	14
H 11	금정구	0	0	0	0	0	0	0	0	0	1	0	0	18
부산	연제구	0	0	0	0 2	0	0	0	1 2	0	1	0	0	12 32
	해운대구 수영구	0 3	0	0	0	0	0	0	0	0	0	0	0	32 18
	부산진구	2	0	0	3	0	0	0	2	0	0	0	0	27
	북구	0	0	0	0	0	0	0	0	0	0	0	0	18
	사상구	0	0	0	0	0	0	0	0	0	0	0	0	23
	강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1
	기장군	1	0	0	0	0	0	0	0	0	0	0	0	13
	소계	6	0	0	8	0	0	0	7	2	3	0	2	242

(단위 : 건)

							신	!고의무;	자				(1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소계	7 23 17 8 41 11 11 2	0 0 1 1 1 0 0 0	0 2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1 4 1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1	0 3 0 0 2 5 5 0	0 0 0 0 0 0
인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유우구 강화군 소계	4 3 15 10 15 17 12 10 2	0 0 1 1 2 1 1 1 0	0 0 0 2 1 2 0 0	0 0 0 0 0 0 0	0 0 1 0 1 8 3 6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1 0 0 0 0	0 0 0 0 0 2 0 0	0 0 3 3 12 7 1 3 2	0 0 0 0 0 0 0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13 4 11 10 9	0 0 0 0 0	0 0 1 0 5	0 0 0 3 0	1 0 0 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7 2 0 1 3	0 0 0 0 0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9 13 14 7 9	0 0 1 0 1	0 3 2 0 4	0 1 1 0 0	2 1 2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5 0 0	1 2 4 3 0	0 1 1 0 0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25 21 22 21 34 123	2 1 2 0 0	2 0 0 0 0	0 5 0 0 0	3 1 1 3 0	0 0 0 3 0	0 0 0 0 12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8 4 3 9	0 0 0 0 0 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 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소목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 5	2 0 0 3 1 1 0 0 0 1 0 0 2	0 0 0 1 0 3 2 4 2 1 8 0 2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2 0 1 1 1 6 9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2 2 3 1 2 3 4 2 3 0 7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다의 · 거)

													(5	단위 : 건)
							신	<u> </u> 고의무	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소계	0 0 0 0 0 0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0	2 2 0 3 1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0 22 17 50 19 23 3
인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소계	0 0 0 18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0 0 0 0 0 0	6 3 30 35 32 41 18 27 4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소계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1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3 7 16 18 24 88
대전	등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20 28 33 11 14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2 39 32 45 43 20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사구 부천시 소사구 광명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0 0 0 3 0 0 0 0 1 0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2 2 0 0 1 1 1 2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3 1 0 2 4 0 1	0 0 0 0 0 0 0 0 0 0	1 1 4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7 22 27 18 20 16 15 18 44 54 1 51 7

(단위 : 건)

								· - - - - - - - - - - - - - - - - - - -	자				()	단위 : 건)
시도		초 · 중 ·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학원 강사	소방 구급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한부모 가 족복 지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 전담	지원센터
		TH 70		종사자	종사자	#7E	강사	0/1	대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공무원	종사자
	군포시	1	0	0	0	0	2	0	0	0	0	0	0	0
	의왕시	4	0	1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 장안구	1	0	0	0	2	0	0	0	0	0	0	2	0
	수원시 권선구	9	1	1	0	0	1	0	2	0	0	2	5	0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6 3	2	0	0	0 2	0	0	0	0	0	0	3	0
	화성시	9	1	3	0	4	0	0	1	0	0	0	6	0
	용인시 기흥구	13	1	0	0	1	1	0	1	0	0	0	0	0
	오산시	8	0	0	0		0	0	0	0	0	0	4	0
	용인시 수지구	3	0	1	0	2	1	0	0	0	0	0	1	0
	용인시 처인구	8	0	2	2	1	0	0	0	0	0	0	1	0
	평택시	18	0	5	0	9	1	0	0	0	0	0	7	0
	안성시	40	1	1	0	1	0	0	0	0	0	2	24	0
	성남시 수정구	18	0	0	0	0	0	0	0	0	0	0	1	0
경기	성남시 중원구	10	0	0	0	1	0	0	1	0	0	0	7	0
0/1	성남시 분당구	2	0	0	0	1	0	0	0	0	0	2	2	0
	광주시	9	1	0	0	1	0	0	0	0	0	0	3	0
	하남시	3	1	0	0	0	0	0	1	0	0	0	0	0
	이천시	4	0	0	0	0	1	0	1	0	0	0	2	0
	여주군	4	0	0	2	0	0	0	0	0	0	3	2	0
	구리시	7	0	0	0	0	0 2	0	0	0	0	0	16 2	0
	남양주시 양평군	19 4	1	0	0	2	0	0	0	0	0	0	0	0
	가평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8	1	0	0	2	0	0	3	0	0	1	8	0
	양주시	7	0	0	0	6	0	0	1	0	0	0	3	0
	동두천시	9	0	1	0	1	0	0	0	0	0	0	11	0
	연천군	2	0	0	0	10	0	0	0	0	0	0	0	0
	포천시	12	0	0	0	1	0	0	0	0	0	0	9	0
	소계	415	24	39	5	71	9	1	13	0	0	11	158	0
	춘천시	24	0	0	0	2	0	0	0	0	0	0	0	0
	강릉시	18	2	1	2	2	0	0	0	0	0	6	4	0
	양양군	7	0	0	0	0	0	0	0	0	0	0	0	0
	속초시 고서그	5	0	0	0	0	0	0	0	0	0	0	3	0
	고성군 원주시	5 23	0	0 5	0	0	0	0	0	0	0	3	0 5	0
	현수시 횡성군	5	0	0	0	0	2	0	0	0	0	0	0	0
_,	영월군	2	0	0	0	0	0	0	0	0	0	0	0	1
강원	평창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정선군	1	0	0	0	0	0	0	0	0	0	1	1	0
	태백시	1	0	0	0	1	0	0	0	0	0	0	0	0
	동해시	4	0	0	0	0	0	0	1	0	0	2	5	1
	삼척시	1	1	0	0	0	0	0	0	0	0	0	4	2
	홍천군	4	0	0	0	0	1	0	0	0	0	0	1	0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103	3	6	2	8	3	0	1	0	0	13	26	4 (계속)

(단위 : 건)

							<u>۲</u>	<u> </u> 고의무	자				(1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군포시	0	0	0	1	0	0	0	1	0	0	0	2	7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0	0	5
	수원시 장안구	0	0	0	2	0	0	0	3	0	2	0	0	12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0	0	0	2	0	0	0	1 0	0	0 2	0	0	24 13
	수원시 영통구	0	0	0	0	0	0	0	2	0	0	0	0	13
	화성시	0	0	0	1	0	0	0	3	1	0	0	0	29
	용인시 기흥구	0	0	0	0	0	0	0	1	0	0	0	0	18
	오산시	0	0	1	0	0	0	0	1	0	0	0	0	15
	용인시 수지구	2	0	0	0	0	0	0	0	0	1	0	0	11
	용인시 처인구	1	0	0	2	0	0	0	0	0	0	0	0	17
	평택시	0	0	0	0	0	0	0	4	0	3	0	0	47
	안성시	0	0	0	0	0	0	0	2	0	0	0	1	72
	성남시 수정구	2	0	0	0	0	0	0	5	0	1	0	0	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1	0	0	2	0	0	0	4	0	0	0	0	26
	성남시 분당구 광주시	0	0	0	2	0	0	0	0	0	0	0	0	9 17
	하남시	0	0	0	0	0	0	0	1	0	0	0	6	12
	이전시	7	0	0	3	0	0	0	0	0	4	0	0	22
	여주군	0	0	0	0	0	0	0	0	0	0	0	1	12
	구리시	2	0	0	5	0	0	0	4	0	0	0	3	37
	남양주시	10	0	0	0	0	0	0	3	0	10	0	0	50
	양평군	0	1	3	0	0	0	0	0	0	0	0	0	8
	가평군	0	2	0	0	0	0	0	0	0	5	0	1	11
	의정부시	6	0	0	0	0	0	0	6	0	2	0	0	37
	양주시 동두천시	3	0	0	0	0	0	0	4	0	0	0	0	24 24
	중구신시 연천군	3	0	0	0	0	0	0	0	0	0	0	0	24 15
	포천시	1	0	0	0	0	0	0	0	0	0	0	0	23
	소계	45	5	4	35	3	1	0	62	1	39	0	19	960
	춘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26
	강릉시	0	0	0	1	2	0	0	1	0	0	0	7	46
	양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속초시	0	0	0	0	0	0	0	0	0	0	0	0	8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원주시 횡성군	0	2	0	1 0	1 0	0	0	0	0	0	0	0	43 7
	왕성도 영월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강원	등록년 평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정선군	0	0	0	0	0	0	0	1	0	0	0	0	4
	태백시	0	0	0	0	0	0	0	0	0	0	0	0	2
	동해시	0	0	0	2	0	0	0	2	0	0	0	0	17
	삼척시	0	0	1	2	0	0	0	0	0	0	0	1	12
	홍천군	0	0	0	0	0	0	0	1	0	0	0	0	7
	인제군	0	0 2	0	0 6	3	0	0	0 5	0	0	0	0 8	2 194
	소계	0		1	U	J	0	0	J	U	0	U	0	(계속)

(단위 : 건)

								닌고의무	χŀ				(단위 : 건)
							1	ユエゴナ	^[
시도	시군구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청주시 상당구	8	0	0	0	0	0	0	0	1	0	0	1	1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17	3	7	0	2	1	0	1	0	0	1	3	0
	성권군 진천군	7	0	4	0	0	0 0	0	0	0	0	2	0	0
	괴산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증평군	0	1	0	0	2	0	0	0	0	0	0	0	0
충북	음성군	3	0	1	0	3	0	0	0	0	0	0	2	0
중폭	영동군	2	0	2	0	0	0	0	0	0	0	0	1	0
	옥천군	10	1	0	0	0	0	0	0	0	0	0	0	1
	보은군 충주시	9	0	0	2	0	0	0	0	0	0	0	1	0
	중무시 제천시	10 12	0	1 12	0	1	0 0	0	0	0	0	6	4 6	0
	단양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84	5	28	2	9	1	0	1	1	0	12	18	2
	금산군	1	0	0	0	0	0	0	0	0	0	0	1	0
	공주시	0	0	0	0	0	0	0	0	0	0	4	2	0
	논산시	18	0	1	0	4	0	0	0	0	0	1	5	0
	계룡시	3	0	1	0	0	0 0	0	0	0	0	0	2	0
	부여군 서천군	1	0	0	0	0	0	0	0	0	0	1	1	0
	천안시 동남구	11	5	8	0	0	0	0	0	0	0	6	4	0
	천안시 서북구	11	3	6	0	0	0	2	0	0	0	13	3	0
충남	아산시	12	2	0	0	1	0	0	0	0	0	0	5	0
중급	예산군	9	0	0	0	0	0	0	2	0	0	0	2	1
	당진시	3	0	0	0	1	0	0	0	0	0	1	0	0
	청양군 홍성군	6	1	2	0	2	0 0	0	0	0	0	3	3	0
	보령시	4	0	0	0	3	0	0	0	0	0	2	0	0
	서산시	8	0	0	0	1	0	0	0	0	0	0	6	0
	태안군	8	0	2	0	2	0	0	1	0	0	0	1	0
	세종특별자치시	2	0	0	0	0	0	0	0	0	0	1	4	0
	소계	103	11	20	1	14	0	2	3	0	0	33	42	2
	전주시 완산구	25 21	2	1	1 0	2	2 2	0	0	0	0	0	9	0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10	2	5 2	0	0	0	4 0	1 0	0	0	0	1	0
	임실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안군	0	0	3	0	0	0	0	0	0	0	0	0	0
	무주군	1	0	0	0	0	0	0	0	0	0	0	2	0
	익산시	32	0	5	0	8	1	0	0	0	0	11	7	0
전북	군산시	26	1	8	0	5	2	0	0	0	0	1	0	0
	김제시 부안군	4	0	1 0	0	1	0 0	0	0	0	0	0	0	0
	구신군 정읍시	14	0	0	0	1	0	0	0	0	0	1	0	0
	고창군	2	0	0	0	0	0	0	0	0	0	3	0	0
	남원시	19	3	11	0	7	0	0	0	0	0	0	7	0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2	1	3	0	0	0	0	0	0	0	0	2	0
	소계	157	10	39	1	24	7	4	1	0	0	16	47	<u>(계속)</u>

(단위 : 거)

													(5	단위 : 건)
							신	<u> </u> 고의무	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옥천군 보은구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7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3 0 0 0 0 0 0 0 2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46 14 1 3 5 9 9 15 13 20 47 4
충남	소계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형안군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1 0 2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4 0 0 0 0 1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4 6 7 33 6 9 3 37 47 23 16 6 18 8 10 31 15 8
전북	조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5 0 0 0 4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1 5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1 0 3 3 0 0 0 0 0 0 0 2 1 0	283 47 61 17 4 4 4 73 48 7 1 18 5 54 1 9 353 (계속)

(단위 : 건)

													([단위 : 건)
							신	<u> </u> 고의무	자					
시도	시군구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 <u>족복</u> 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영광군	4	0	0	0	2	0	0	0	0	0	0	4	0
	장성군	6	0	1	0	1	0	0	0	0	0	1	0	0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화순군	3	0	3	0	0	0	0	0	0	0	0	0	0
	나주시	13	4	2	0	0	0	0	0	0	0	1	5	0
	함평군	0	0	3	0	0	0	0	0	0	0	0	1	0
	영암군	1	0	0	0	0	0	0	0	0	0	1	4	1
	강진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장흥군	12	0	0	0	0	0	0	0	0	0	0	4	0
저나	목포시	6	0	4	1	1	0	0	0	0	0	0	12	0
전남	무안군	1	0	1	0	1	0	0	0	0	0	0	2	0
	신안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해남군	0	0	0	0	0	0	0	0	0	0	0	2	4
	진도군	1	1	0	0	0	0	0	0	0	0	0	0	0
	순천시	6	0	4	0	2	0	0	0	0	0	3	10	0
	광양시	2	0	1	0	0	0	0	0	0	0	0	12	0
	보성군	3	0	0	0	0	0	0	0	0	0	0	2	0
	고흥군	7	0	0	0	0	0	0	0	0	0	5	5	0
	여수시	25	0	4	0	2	0	0	0	0	0	0	5	0
	소계	97	5	23	1	9	0	0	0	0	0	11	72	5
	경산시	19	0	2	0	0	0	0	0	0	0	0	1	0
	청도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1	0	1	0	0	0	0	0	0	0	0	0	0
	고령군	1	0	0	0	2	0	0	0	0	0	0	0	0
	칠곡군	5	0	4	0	0	0	0	0	0	0	0	0	0
	성주군	0	0	1	0	0	0	0	0	0	0	0	3	0
	구미시	15	0	4	0	1	0	0	2	0	0	1	3	0
	김천시	5	0	0	0	0	0	0	0	0	0	0	0	0
	상주시	2	0	2	0	0	0	0	1	0	0	1	0	0
	문경시	3	0	0	0	0	0	0	0	0	0	1	0	0
	영주시	7	0	1	0	4	0	0	0	0	0	0	1	0
71 H	봉화군	4	1	0	0	0	0	0	0	0	0	0	0	0
경북	예천군	3	0	1	0	0	0	0	0	0	0	0	0	0
	안동시	29	0	1	0	2	0	0	0	0	0	0	7	0
	청송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영양군	0	0	0	0	1	0	0	0	0	0	1	0	0
	영덕군	1	0	0	0	0	1	0	0	0	0	0	0	0
	울진군	5	2	3	0	0	0	0	0	0	0	0	0	0
	의성군	3	0	2	0	0	0	0	0	0	0	0	1	0
	영천시	2	0	1	0	0	0	0	0	0	0	3	0	0
	경주시	12	0	0	0	4	0	0	0	0	0	1	7	0
	포항시 남구	8	0	2	0	3	0	0	0	0	0	0	4	0
	포항시 북구	8	1	6	0	1	0	0	0	0	0	0	1	0
	소계	136	4	31	0	18	1	0	3	0	0	8	30	0
														(계소)

													(5	단위 : 건)
							신	<u> </u> 고의무:	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총계
	영광군	0	0	0	0	0	0	0	0	0	0	0	0	10
	장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9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화순군	0	0	0	0	0	0	0	1	0	0	0	2	9
	나주시 함평그	0	0	0	0	0	0	0	0	0	0	0	0	25
	함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암군	0	0	0	0	0	0	0	5	0	0	0	2	14
	강진군 장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16
	목포시	0	0	0	0	0	0	0	2	0	1	0	0	27
전남	무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신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해남군	0	0	0	0	0	0	0	5	0	0	0	0	11
	진도군	0	0	0	0	0	0	0	1	0	0	0	0	3
	순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25
	광양시	0	2	0	0	1	0	0	2	0	0	0	0	20
	보성군	0	0	1	0	0	0	0	0	0	0	0	0	6
	고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17
	여수시	0	0	0	0	0	0	0	10	0	0	0	0	46
	소계	0	2	1	0	1	0	0	26	0	1	0	4	258
	경산시	0	0	0	0	0	0	0	1	0	0	0	0	23
	청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군위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고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칠곡군	0	1	0	1	0	0	0	0	0	0	0	0	11
	성주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구미시	0	0	0	0	0	0	0	0	0	0	0	0	26
	김천시	0	0	0	0	0	0	0	1	0	0	0	0	6
	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6
	문경시 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4 13
	8구시 봉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경북	영화군 예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안동시	0	0	2	0	0	0	0	3	0	0	0	0	44
	청송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영덕군	0	0	0	0	0	0	0	0	1	0	0	0	3
	울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10
	의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명천시 명천시	0	0	0	2	0	0	0	0	0	0	0	0	8
	경주시	0	0	0	0	0	0	0	0	0	0	0	1	25
	포항시 남구	0	1	0	4	0	0	0	1	0	0	0	0	23
	포항시 북구	1	0	2	1	0	0	0	3	0	1	0	0	25
	소계	1	2	4	8	0	0	0	9	1	1	0	1	258
														(계속)

(단위 : 건)

							신	<u> </u> 고의무:	자				(1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김해시	11	0	3	0	1	0	0	0	0	0	1	3	0
	양산시	10	0	0	0	5	0	0	0	0	0	0	2	0
	밀양시	6	0	4	0	0	0	0	1	0	0	0	2	0
	창원시 마산회원구	1	0	0	0	0	0	0	0	0	0	3	7	0
	창원시 마산합포구	5	1	2	0	0	0	0	0	0	0	1	0	0
	창녕군	1	0	0	0	0	0	0	0	1	0	0	0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1	0	0	0	0	0	0	0	0	0	0	6	0
	창원시 의창구	3	1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시 성산구	3	0	0	0	3	0	0	0	0	0	0	1	0
경남	창원시 진해구	8	0	1	0	0	0	0	0	0	0	2	6	0
	통영시	3	0	0	0	1	0	0	0	0	0	1	2	0
	거제시	11	0	0	0	0	0	0	2	0	0	1	2	0
	진주시	8	1	3	0	4	0	0	0	0	0	25	17	0
	사천시	9	1	1	0	0	0	0	0	0	0	5	3	0
	산청군	1	0	0	0	0	0	0	0	0	0	4	4	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남해군	1	1	0	0	0	0	0	0	0	0	2	0	0
	거창군	0	0	0	0	4	0	0	0	0	0	0	5	0
	함양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87	5	14	0	18	0	0	3	1	0	45	63	0
	제주시	21	3	10	0	8	4	0	0	0	0	2	17	0
제주	서귀포시	10	0	0	0	6	0	0	0	0	0	0	37	8
	소계	31	3	10	0	14	4	0	0	0	0	2	54	8
	총계	1,988	123	275	24	273	43	26	28	2	10	174	700	27

(단위 : 건)

							신	<u>!</u> 고의무:	자				()	크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김해시	0	0	0	0	1	0	0	1	0	0	0	0	21
	양산시	0	0	0	0	0	0	0	1	0	0	0	1	19
	밀양시	0	0	0	0	0	0	0	0	0	0	0	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0	0	1	0	0	0	0	0	0	0	0	0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0	0	0	2	0	0	0	3	0	0	0	0	14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의령군	0	0	0	1	0	0	0	0	0	0	0	0	1
	함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고성군	0	0	0	0	1	0	0	0	0	0	0	0	8
	창원시 의창구	0	0	0	0	3	0	0	0	0	0	0	0	7
	창원시 성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7
경남	창원시 진해구	0	0	0	0	0	0	0	0	0	0	0	0	17
	통영시	0	0	0	0	0	0	0	0	0	0	0	0	7
	거제시	0	0	0	0	0	0	0	3	0	0	0	0	19
	진주시	3	0	0	0	1	0	0	3	0	0	0	0	65
	사천시	0	0	0	0	0	0	0	3	0	0	0	0	22
	산청군	0	0	0	0	0	0	0	1	0	0	0	0	1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1	0	0	2
	남해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거창군	0	0	0	0	1	0	0	0	0	0	0	0	10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소계	3	0	1	3	7	0	0	15	0	1	0	1	267
	제주시	0	0	0	2	1	0	0	2	0	0	0	0	70
제주	서귀포시	1	0	0	6	0	0	0	0	0	0	0	0	68
	소계	1	0	0	8	1	0	0	2	0	0	0	0	138
	총계	104	18	20	151	20	2	0	185	14	78	0	73	4,358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중구	2	7	0	1	1	3	0	0	0	0	0	14
	종로구	1	7	0	0	6	4	0	0	0	0	0	18
	서대문 구	4	3	2	5	5	6	0	3	0	0	0	28
	마포구	5	16	0	4	12	12	0	26	0	3	0	78
	은평구	7	15	0	5	14	19	0	12	0	1	0	73
	동대문구	4	8	1	3	3	12	0	20	1	1	0	53
	중랑구	2	14	0	2	12	15	0	21	0	0	1	67
	도봉구	1	8	1	3	7	14	0	29	1	0	7	71
	성동구	4	6	1	0	5	5	0	4	0	0	0	25
	강동구	9	10	1	0	10	3	0	2	2	3	1	41
	강남구	4	11	0	0	7	3	0	10	0	1	1	37
	성북구	4	8	0	2	10	11	0	19	3	0	1	58
서울	서초구	4	3	0	1	1	1	0	0	0	1	0	11
	송파구 노원구	12	7	2	5	4 15	4	0	4	0	2	1	41 76
	도전구 용산구	5 4	16 5	0	0 2	11	16 10	0	20	0	1	3	37
	광선구 강북구	7	16	0	4	8	16	0	7	1	1	1	61
	광진구	6	5	1	0	2	6	0	10	2	0	3	35
	영등포구	1	10	0	3	8	14	2	8	5	0	4	55
	관악구	6	5	0	0	4	2	0	1	1	3	1	23
	구로구	1	13	0	0	8	10	0	9	2	4	2	49
	금천구	11	2	1	4	7	8	0	10	1	1	0	45
	동작구	3	2	0	0	6	3	0	0	1	1	0	16
	강서구	6	17	1	5	14	19	1	46	2	0	0	111
	양천구	7	17	1	2	6	14	0	23	5	1	1	77
	소계	120	231	13	51	186	230	3	287	27	24	28	1,200
	중구	0	2	0	1	1	0	0	1	0	0	0	5
	동구	1	0	6	2	2	3	0	2	0	0	0	16
	서구	0	0	0	0	1	2	0	2	1	0	9	15
	사하구	3	12	0	3	8	4	0	2	2	1	0	35
	영도구	0	4	0	0	6	7	0	2	0	0	0	19
	동래구	1	3	1	0	0	6	0	7	1	0	0	19
	남구	0	2	0	0	8	4	0	3	0	0	0	17
<u> </u>	금정구	1	4	0	0	5	4	0	5	1	0	0	20
부산	연제구	3	9	0	0	4	10	0	14	2	0	2	44
	해운대구	2	16	1	1	9	11	0	62	2	0	1	105
	수영구	0	5	0	1	3	5	0	2	1	0	0	17
	부산진구 북구	1	0 5	0	3 2	6	9 5	0	6 5	1 2	0	0	26 23
	국구 사상구	1	8	0	3	4	6	0	10	0	0	0	32
	지성구 강서구	1	1	0	0	0	3	0	3	0	0	1	9
	기장군	0	7	0	0	6	13	0	29	1	0	0	56
	소계	15	78	8	16	66	92	0	155	14	1	13	458
	— II				.0	30	J.		.30		'	.0	(계속)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합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는 상이 할 수 있음.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0 5 7 4 3 1 5	0 10 14 13 25 4 10 8	0 0 5 1 0 3 1	0 3 4 4 0 1 6	0 5 9 2 9 2 7 0	0 5 19 8 34 5 8 7	0 0 0 2 0 0 1	3 10 10 9 33 21 6 5	0 1 1 0 3 0 0	0 0 0 0 0 2 1	0 0 0 0 1 1 0	3 39 69 43 108 40 45 24
인천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강화군	26 0 0 1 1 3 1 9 1 0 0	84 1 4 11 13 25 18 10 4 0 1	11 0 0 0 2 0 0 4 0 0 0	18 0 0 2 3 3 2 3 11 0 0	34 1 0 7 11 15 12 17 5 0 0 68	86 6 7 38 29 23 30 7 21 2 2	3 0 0 0 0 0 0 0 0 0	97 9 4 47 19 24 25 7 6 0 2	7 0 0 3 1 0 3 0 0 0 0	3 0 0 0 3 0 0 2 0 0 0	2 1 0 1 2 0 3 0 0 0 0 0	371 18 15 110 84 93 94 59 48 2 5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2 2 5 0 2	11 1 11 4 13	0 0 0 0 0	4 1 1 1 5	5 1 2 1 8	7 2 18 2 23 52	0 0 0 0 0	8 1 12 0 3	0 0 0 2 0	0 0 1 1 0	0 0 0 1 3	37 8 50 12 57 164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계	4 3 5 5 1	8 18 28 7 8	0 0 2 0 1	0 1 1 1 1 4	4 10 6 3 9	5 10 12 11 7	0 0 0 0 0	16 13 16 3 7	0 1 1 0 0	0 2 5 0 1	1 0 4 1 1	38 58 80 31 36 243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2 10 0 3 4	16 11 6 17 8 58	2 0 1 0 1	2 15 1 5 2 25	6 10 1 2 4 23	28 16 13 8 12 77	0 0 0 0 0	24 35 11 0 17 87	2 0 2 4 3	0 0 0 0 0	5 0 1 0 3	87 97 36 39 54 3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소사구 광명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2 1 4 8 5 5 8 0 4 6	9 3 15 17 18 17 19 6 9 24 34	2 1 1 0 0 0 1 0 1 2 2	2 1 6 4 4 10 5 2 1 8	3 4 13 7 6 12 6 7 12 32 34	10 5 21 21 6 22 16 5 18 18	0 0 0 0 1 0 0 0 0	9 5 38 24 43 41 16 31 31 110	0 2 3 1 1 1 0 1 2	0 0 1 3 2 0 0 0 0	2 1 0 0 1 0 0 0 0 0 1 0	39 23 102 85 87 108 71 52 78 202 243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과천시	3	0	0	0	2	2	0	1	0	0	0	8
	시흥시	4	10	0	8	21	40	0	47	4	1	4	139
	안양시 만안구	3	10	0	0	9	6	0	1	0	0	4	33
	안양시 동안구	3	6	1	5	6	13	0	2	0	0	0	36
	군포시 의왕시	2	4 3	1 0	0 2	4	8	0	7 4	0	0	1 1	27 18
	수원시 장안구	8	9	0	3	5	12	0	11	1	1	0	50
	수원시 권선구	8	18	1	1	13	25	0	5	2	3	0	76
	수원시 팔달구	4	6	0	0	5	19	0	8	1	0	0	43
	수원시 영통구	10	12	0	1	6	8	0	1	0	1	1	40
	화성시	7	25	0	4	9	20	0	9	7	;	1	83
	용인시 기흥구	10	26	1	1	12	8	0	6	0	0	0	64
	오산시	5	8	0	2	4	15	0	8	0	0	1	43
	용인시 수지구	25	12	1	0	6	8	0	7	1	1	0	61
	용인시 처인구	6	9	1	4	3	11	0	25	1	0	0	60
	평택시	2	24	0	8	10	13	2	14	2	1	3	79
74 7 1	안성시	0	8	5	2	3	8	0	18	0	0	0	44
경기	성남시 수정구	1	10	1	5	4	7	0	58	1	17	0	104
	성남시 중원구	2	5	1	6	13	12	0	25	2	0	0	66
	성남시 분당구	5	16	0	0	6	5	0	4	0	0	0	36
	광주시	8	18	1	2	27	4	0	14	1	0	0	75
	하남시	3	3	0	5	6	4	0	4	0	0	0	25
	이천시	5	10	0	3	3	8	0	6	2	0	0	37
	여주군	3	6	0	1	1	4	0	18	0	0	0	33
	구리시	3	3	1	1	2	12	0	7	2	1	0	32
	남양주시	4	24	1	3	16	18 5	0	16	2	1	4	89 12
	양평군 가평군	2	0	0	0	0	1	0	0	0	0	0	2
	의정부시	7	21	1	12	8	52	2	39	4	1	1	148
	양주시	5	20	0	3	6	9	0	13	1	2	0	59
	동두천시	0	4	1	4	2	10	0	10	0	0	0	31
	연천군	1	7	0	1	0	3	0	1	0	0	0	13
	포천시	6	4	0	1	1	10	0	10	0	1	2	35
	소계	214	515	28	134	353	569	5	853	48	40	32	2,791
	춘천시	4	13	0	9	11	7	0	15	5	0	5	69
	화천군	0	0	0	0	0	2	0	2	0	0	0	4
	강릉시	1	13	1	1	3	9	0	10	2	0	2	42
	양양군	1	2	0	2	0	0	0	0	0	0	0	5
	속초시	2	7	0	0	4	4	0	1	0	1	0	19
	고성군	0	1	0	0	0	3	0	2	0	0	0	6
강원	원주시 회서그	3	20	1	6	12	15	0	70	2	0	3	132
	횡성군 영월군	0	0 4	0	0	0	1 0	0	3	0	0	0	4 5
	명절군 평창군	0	1	0	0	0	2	0	3	0	0	0	6
	정선군 정선군	3	0	2	1	2	3	0	6	0	0	0	17
	태백시	0	1	0	0	2	0	0	0	0	0	0	3
	동해시	1	5	1	0	7	7	0	14	0	0	1	36
	삼척시	2	3	0	1	1	2	0	7	0	0	0	16
													(계속)

(단위 : 거)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홍천군	1	3	0	0	0	4	0	1	1	0	1	11
	인제군	0	0	0	0	0	2	0	0	0	0	0	2
	양구군	0	0	0	0	0	0	0	1	0	1	0	2
	철원군	0	3	1	0	1	5	0	2	0	0	0	12
	소계	18	76	6	20	43	66	0	138	10	2	12	391
	청주시 상당구	2	9	0	5	7	8	0	21	2	0	6	60
	청주시 흥덕구	0	17	0	4	15	18	1	20	3	0	2	80
	청원군	0	8	0	1	2	8	0	9	3	0	0	31
	진천군	1	0	0	1	0	4	0	4	1	0	0	11
	괴산군	0	0	0	0	0	9	0	50	1	0	0	60
	증평군	0 2	1	0	0	1	2 2	0	1	0	0	0	6 11
충북	음성군 연도그	0	5 2	0	2	1	7	0	1 4	0	0		16
	영동군 옥천군	0	3	0	5	2	2	3	7	0	0	0	22
	녹신군 보은군	1	0	0	0	0	1	0	13	0	0	2	17
	*** 충주시	2	15	0	0	5	5	0	16	0	0	0	43
	제천시	7	19	1	1	6	4	0	22	0	0	0	60
	전양군	0	0	0	3	0	0	0	2	0	0	0	5
	소계	15	79	1	23	39	70	4	170	10	0	11	422
	금산군	1	2	0	1	0	5	0	4	0	0	0	13
	공주시	1	7	0	0	0	6	0	0	2	1	0	17
	논산시	4	13	0	4	10	9	0	32	0	0	0	72
	계룡시	3	0	0	1	0	3	0	24	0	0	0	31
	부여군	1	5	0	0	0	10	0	19	0	0	0	35
	서천군	0	0	0	0	0	1	0	0	0	0	0	1
	천안시 동남구	3	10	0	3	10	9	0	8	4	0	2	49
	천안시 서북구	7	23	1	3	12	10	0	6	0	0	1	63
	아산시	1	12	2	12	7	11	0	2	0	0	0	47
충남	예산군	0	2	0	0	1	4	0	1	0	0	1	9
	당진시	0	2	0	0	0	4	0	1	0	0	0	7
	청양군	5	7	0	6	1	1	0	4	0	0	0	24
	홍성군	0	1	0	0	0	0	0	1	0	0	0	2
	보령시	0	1	0	0	1	4	0	3	0	0	0	9
	서산시	0	2	0	4	0	3	0	9	0	0	2	20
	태안군	2	7	0	0	4	9	0	3	0	0	1	26
	세종특별자치시	0	5	0	2	1	5	0	1	0	0	0	14
	소계	28	99	3	36	47	94	0	118	6	1	7	439
	전주시 완산구	3	35	1	10	20	36	1	68	5	0	3	182
	전주시 덕진구	4	22	0	6	11	35	4	50	2	0	1	135
ᆔᅜ	완주군	2	2	0	0	3	1	0	25	2	0	0	35
전북	임실군	0	1	0	2	1	4	0	3	1	2	0	14
	진안군	0	2	0	0	0	4	0	1	0	0	0	7
	익산시 그사나	4	44	1	10	18	80	0	59	5	1	1	223
	군산시	4	20	0	9	14	49	0	17	0	4	1	(계소)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김제시	5	4	0	0	4	5	0	21	0	0	1	40
	부안군	0	1	0	7	0	2	0	4	0	1	0	15
	정읍시	1	9	0	0	0	3	0	16	1	0	0	30
	고창군	0	0	0	0	0	4	0	15	0	0	0	19
	남원시	1	12	3	10	9	14	0	50	2	0	6	107
	순창군	0	0	0	0	0	1	0	5	1	0	0	7
	장수군 소계	0 24	0 152	0 5	0 54	0	0 238	0 5	3 337	0	0	0 13	3 935
	<u>소</u> 계 영광군	1	3	0	0	2	6	0	13	19	0	0	25
	장성군	1	1	1	2	0	3	0	10	0	0	0	18
	곡성군	0	2	0	0	0	0	0	0	0	0	0	2
	담양군	0	0	0	0	0	1	0	0	2	0	0	3
	화순군	0	9	1	1	0	4	0	33	0	0	0	48
	나주시	1	7	0	1	5	3	0	50	0	0	0	67
	함평군	0	0	0	0	0	0	0	11	0	0	0	11
	영암군	0	2	0	0	0	5	0	2	0	0	4	13
	강진군	1	0	0	0	0	0	0	4	0	0	0	5
	장흥군	0	0	0	0	1	4	0	3	0	0	0	8
	목포시	2	16	0	15	14	25	0	8	3	0	1	84
전남	무안군	1	5	0	0	2	2	0	0	0	0	0	10
	신안군	3	1	0	0	0	3	0	0	0	0	0	7
	해남군	0	8	0	0	4	2	0	4	0	0	2	20
	완도군	2	0	1	0	0	4	0	0	0	0	0	7
	진도군	1	0	0	2	0	5	0	2	0	0	0	10
	순천시	5	15	3	11	4	12	0	21	1	0	2	74
	구례군 광양시	0	0 8	0	0 2	0 6	4 19	0	0 7	0	0	0	4 42
	보성군	1	2	1	0	0	4	0	0	0	0	0	8
	고흥군	2	6	0	0	0	0	0	11	0	0	0	19
	보증단 여수시	2	19	1	12	44	15	0	12	1	0	2	108
	소계	23	104	8	46	82	121	0	191	7	0	11	593
		5	4	0	2	0	6	0	15	0	0	6	38
	청도군	0	3	0	0	0	0	0	1	0	0	4	8
	군위군	0	1	0	0	0	2	0	0	0	0	0	3
	고령군	0	0	0	0	0	0	0	9	0	0	0	9
	칠곡군	0	2	0	1	2	8	0	20	0	0	2	35
	성주군	0	0	0	1	0	6	0	11	0	0	0	18
경북	구미시	3	13	2	7	7	8	0	42	0	0	5	87
J .	김천시	1	0	0	0	1	0	0	5	0	0	1	8
	상주시	0	1	0	0	2	3	0	4	0	0	0	10
	문경시	1	2	0	3	1	6	0	2	0	0	0	15
	영주시 보하고	3	4	0	0	1	9	0	5	0	0	0	22
	봉화군 예천군	0	5 1	0	0	0 2	2 5	0	12 1	0	0	0	19 9
	에선군 안동시	5	7	3	4	4	13	0	48	5	0	2	91
	<u> </u>	J	1	J	4	4	10		40	J	U		(계소)

(단위 : 건)

							비신고	의무자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영양군	0	4	0	0	0	0	0	3	0	0	0	7
	영덕군	1	0	0	0	0	1	0	6	0	0	0	8
	울진군	1	1	0	0	0	3	0	5	0	0	0	10
	의성군	0	7	0	1	3	2	0	14	0	0	0	27
	영천시	1	3	2	0	1	3	0	2	0	0	0	12
	경주시	6	7	0	0	4	18	0	20	1	0	1	57
	포항시 남구	5	20	0	2	6	24	0	48	1	1	3	110
	포항시 북구	13	6	1	4	12	10	0	30	2	0	4	82
	소계	45	91	8	25	46	129	0	303	9	1	28	685
	김해시	1	29	1	1	2	18	0	95	1	0	1	149
	양산시	0	11	0	6	2	5	0	10	1	0	0	35
	밀양시	1	3	0	0	0	1	0	8	0	0	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0	7	0	1	1	7	0	26	0	0	4	46
	창원시 마산합포구	3	5	0	5	7	8	0	10	0	0	0	38
	창녕군	0	1	0	0	0	4	0	7	0	0	0	12
	의령군	0	1	0	0	0	4	0	0	0	0	0	5
	함안군	0	1	0	0	0	2	0	2	0	0	0	5
	고성군	0	4	0	5	1	5	0	6	1	0	0	22
	창원시 의창구	3	8	0	2	1	11	0	10	1	0	0	36
-41.1	창원시 성산구	0	7	0	0	0	2	0	1	1	0	2	13
경남	창원시 진해구	4	8	0	0	0	6	0	8	0	0	1	27
	통영시	1	1	0	4	4	3	0	3	0	0	0	16
	거제시	2	11 21	2	5	4 23	5 12	0	43	1	0	3	76 118
	진주시 사천시	4 2	8	0	4	3	19	0	53 19	0	0	1 0	51
	사신시 산청군	0	0	0	1	0	2	0	0	0	0	0	3
	하동군	0	1	0	0	0	1	0	0	0	0	0	2
	남해군	0	Ö	0	0	0	1	0	36	1	0	0	38
	거창군	1	7	0	0	0	i	0	3	0	0	0	12
	함양군	0	2	0	0	0	Ö	0	1	0	0	0	3
	합천군	0	0	1	1	0	0	0	0	0	0	0	2
	소계	22	136	4	35	48	117	0	341	7	0	12	722
	제주시	7	65	1	11	24	38	0	56	5	0	1	208
제주	서귀포시	7	27	1	2	14	15	0	131	2	3	2	204
	소계	14	92	2	13	38	53	0	187	7	3	3	412
	총 계	628	1,991	110	536	1,202	2,204	20	3,486	193	98	199	10,667

3) 경찰통보건수

2014년 9월 29일 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112상황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수를 한다. 신고접수 후 112 상황실에서는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청소년과(여성보호계)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2014.9.29.) 제27조의2 1항에 따라 경찰이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경찰이 112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거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2,667건으로 집계되었다.

3 ■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경로는 전화라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 신고센터가 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1577-1391은 폐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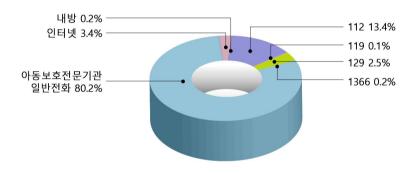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접수 비율이 전체의 96.0%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건수가 전체의 92.3%에 해당하는 12,336건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가 1577-1391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496건(3.7%),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없었다. 이외에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440건 (3.3%), 112를 통한 신고는 55건(0.4%),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25건(0.2%), 119를 통한 신고는 17건(0.1%)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 된 비율은 47.1%였다. 이 중 1577-1391이 폐지 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1,931건(43.7%),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107건(2.4%),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43건 (1.0%)이었다. 그리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는 총 2,321건으로 전체 신고의 52.5%에 해당하였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2를 통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절반 정도였는데, 이는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통합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영향과 112는 범죄신고전화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112로 신고하기보다 의심상황에 대해 상담 이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신고자의 신중한 결정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9건(0.2%),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8건(0.2%), 119를 통한 신고는 3건(0.1%)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 신고접수 경로유형

(단위: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00	4000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12	119	129	1366	계
112 신고전화 통합이전 (2014.1.1.~2014.9.28.)	12,336(92.3)	496(3.7)	O(O.O)	12,832(96.0)	55(0.4)	17(0.1)	440(3.3)	25(0,2)	13,369(100.0)
112 신고전화 통합이후 (2014.9.29.~2014.12.31.)	1,931(43.7)	107(2.4)	43(1.0)	2,081(47.1)	2,321(52.5)	3(0.1)	8(0.2)	9(0.2)	4,422(100.0)
총합	14,267(80.2)	603(3,4)	43(0,2)	14,913(83.8)	2,376(13.4)	20(0,1)	448(2.5)	34(0,2)	17,791(100.0)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 2014}년 9월 28일까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되던 1577-1391로 접수된 신고건수이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임.

〈표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단위 : 건, %)

	신고 경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 및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12	119	129	1366	계
	중 양*	14(77.8)	0(0.0)	0(0.0)	14(77.8)	0(0.0)	0(0.0)	0(0.0)	4(22.2)	18(100,0)
	서울특별시	220(63.4)	8(2.3)	0(0.0)	228(65.7)	101(29.1)	2(0.6)	11(3.2)	5(1.4)	347(100.0)
	서울특별시동부	446(76.8)	11(1.9)	0(0.0)	457(78.7)	108(18.6)	0(0.0)	15(2.6)	1(0.2)	581(100,0)
	서울강서	260(78.8)	25(7.6)	1(0.3)	286(86.7)	31(9.4)	0(0.0)	11(3.3)	2(0.6)	330(100,0)
	서울은평	227(82.5)	0(0.0)	0(0.0)	227(82.5)	36(13.1)	0(0.0)	12(4.4)	0(0.0)	275(100.0)
서울	서울영등포	241(80.1)	6(2.0)	0(0.0)	247(82.1)	43(14.3)	0(0.0)	10(3.3)	1(0.3)	301(100.0)
	서울성북	169(85.8)	0(0.0)	0(0.0)	169(85.8)	24(12.2)	0(0.0)	4(2.0)	0(0.0)	197(100.0)
	서울마포	229(75.1)	7(2.3)	1(0.3)	237(77.7)	62(20.3)	0(0.0)	6(2.0)	0(0.0)	305(100,0)
	서울동남권**	_	_	-	-	_	-	_	_	_
	소 계	1,792(76.7)	57(2.4)	2(0.1)	1,851(79.2)	405(17.3)	2(0.1)	69(3.0)	9(0.4)	2,336(100.0)
	부산광역시	309(79.4)	8(2.1)	0(0.0)	317(81.5)	56(14.4)	0(0.0)	12(3.1)	4(1.0)	389(100,0)
부산	부산동부	335(81.5)	8(1.9)	1(0.2)	344(83.6)	51(12.4)	0(0.0)	15(3.6)	1(0.2)	411(100.0)
	소 계	644(80.5)	16(2.0)	1(0.1)	661(82.6)	107(13.4)	0(0.0)	27(3.4)	5(0.6)	800(100,0)
	대구광역시	250(74.4)	12(3.6)	0(0.0)	262(78.0)	54(16.1)	1(0.3)	19(5.7)	0(0.0)	336(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243(79.7)	13(4.3)	0(0.0)	256(84.0)	43(14.1)	1(0.3)	5(1.6)	0(0.0)	305(100,0)
	소계	493(76.9)	25(3.9)	0(0.0)	518(80.8)	97(15.1)	2(0.3)	24(3.7)	0(0.0)	641(100.0)
	인천광역시	585(84.9)	21(3.0)	0(0.0)	606(87.9)	74(10.7)	0(0.0)	9(1.3)	0(0.0)	689(100,0)
인천	인천북부	164(73.9)	7(3.2)	0(0.0)	171(77.1)	40(18.0)	0(0.0)	11(5.0)	0(0.0)	222(100.0)
단선	인천미추홀	60(62.5)	3(3.1)	0(0.0)	63(65.6)	18(18.8)	4(4.2)	11(11.5)	0(0.0)	96(100.0)
	소 계	809(80.3)	31(3.1)	0(0.0)	840(83.4)	132(13.1)	4(0.4)	31(3.1)	0(0.0)	1,007(100.0)
광주	광주광역시	214(75.6)	4(1.4)	0(0.0)	218(77.0)	49(17.3)	0(0.0)	16(5.7)	0(0.0)	283(100,0)
대전	대전광역시	284(77.8)	6(1.6)	3(0.8)	293(80.2)	56(15.3)	0(0.0)	15(4.1)	1(0.3)	365(100,0)
울산	울산광역시	471(70.5)	37(5.5)	0(0.0)	508(76.0)	154(23.1)	0(0.0)	6(0.9)	0(0.0)	668(100,0)
	경기도	307(68.1)	4(0.9)	0(0.0)	311(69.0)	127(28.2)	0(0.0)	12(2.7)	1(0.2)	451(100,0)
	경기북부	360(80.0)	10(2.2)	0(0.0)	370(82.2)	72(16.0)	0(0.0)	7(1.6)	1(0.2)	450(100,0)
	경기성남	331(72.1)	46(10.0)	0(0.0)	377(82.1)	71(15.4)	0(0.0)	12(2.6)	0(0.0)	460(100,0)
	경기고양	308(75.9)	4(1.0)	0(0.0)	312(76.9)	83(20.4)	0(0.0)	11(2.7)	0(0.0)	406(100,0)
	경기부천	411(82.7)	11(2.2)	1(0.2)	423(85.1)	64(12.9)	0(0.0)	9(1.8)	1(0.2)	497(100,0)
경기	경기화성	395(83.3)	4(0.8)	0(0.0)	399(84.1)	51(10.8)	1(0.2)	21(4.4)	2(0.4)	474(100.0)
	경기남양주	212(84.1)	3(1.2)	0(0.0)	215(85.3)	31(12,3)	O(O.O)	6(2.4)	O(O.O)	252(100,0)
	안산시	486(81.3)	22(3.7)	0(0.0)	508(85.0)	77(12.9)	1(0.2)	12(2.0)	0(0.0)	598(100,0)
	경기용인	257(70.2)	6(1.6)	0(0.0)	263(71.8)	99(27.0)	0(0.0)	4(1.1)	0(0.0)	366(100,0)
	경기시흥	264(80.7)	2(0.6)	0(0.0)	266(81.3)	49(15.0)	2(0.6)	10(3.1)	0(0.0)	327(100.0)
	소 계	3,331(77.8)	112(2.6)	1 (0.0)	3,444(80.4)	724(16.9)	4(0.1)	104(2.4)	5(0.1)	4,281(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외발생사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되는 사례만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또는 일반상담을 실시함.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단위 : 건, %)

	신고 경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uп· u, м/
지역 및	및 기관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12	119	129	1366	계
	강원도	160(81.6)	7(3.6)	0(0.0)	167(85.2)	25(12.8)	0(0.0)	4(2.0)	0(0.0)	196(100,0)
7101	강원동부	234(83.9)	6(2,2)	3(1.1)	243(87.2)	31(11.1)	0(0.0)	4(1.4)	1(0.4)	279(100.0)
강원	원주시	171(85.5)	9(4.5)	0(0.0)	180(90.0)	19(9.5)	0(0.0)	1(0.5)	0(0.0)	200(100,0)
	소 계	565(83.7)	22(3,3)	3(0.4)	590(87.4)	75(11.1)	0(0.0)	9(1.3)	1(0.1)	675(100,0)
	충청북도	365(86.9)	3(0.7)	1(0.2)	369(87.8)	40(9.5)	0(0.0)	11(2.6)	0(0.0)	420(100,0)
구 나	충북북부	180(81.8)	19(8.6)	0(0.0)	199(90.4)	19(8.6)	0(0.0)	2(0.9)	0(0.0)	220(100,0)
충북	충북남부	107(90.7)	3(2,5)	0(0.0)	110(93.2)	7(5.9)	0(0.0)	1(0.8)	0(0.0)	118(100,0)
	소 계	652(86.0)	25(3,3)	1(0.1)	678(89.4)	66(8.7)	0(0.0)	14(1.8)	0(0.0)	758(100,0)
	충청남도	403(84.3)	15(3,1)	3(0.6)	421(88.0)	31(6.5)	2(0.4)	22(4.6)	2(0.4)	478(100,0)
テル	충청남도남부	228(85.1)	10(3.7)	0(0.0)	238(88.8)	29(10.8)	0(0.0)	1(0.4)	0(0.0)	268(100,0)
충남	충청남도서부	44(80.0)	1(1.8)	2(3.6)	47(85.4)	6(10.9)	1(1.8)	1(1.8)	0(0.0)	55(100,0)
	소 계	675(84.3)	26(3,2)	5(0.6)	706(88.1)	66(8.2)	3(0.4)	24(3.0)	2(0.2)	801(100,0)
	전라북도	502(83.4)	34(5.6)	12(2.0)	548(91.0)	44(7.3)	1(0.2)	9(1.5)	0(0.0)	602(100,0)
-1	전라북도서부	523(86.7)	14(2,3)	1(0.2)	538(89.2)	53(8.8)	0(0.0)	11(1.8)	1(0.2)	603(100,0)
전북	전라북도동부	170(74.2)	45(19.7)	0(0.0)	215(93.9)	13(5.7)	0(0.0)	1(0.4)	0(0.0)	229(100,0)
	소 계	1195(83.3)	93(6.5)	13(0.9)	1,301(90.7)	110(7.7)	1(0.1)	21(1.5)	1(0.1)	1434(100.0)
	전라남도	336(85.7)	14(3.6)	0(0.0)	350(89.3)	28(7.1)	0(0.0)	13(3,3)	1(0.3)	392(100,0)
T.I. L	전남서부권	209(85.0)	8(3.3)	0(0.0)	217(88.3)	25(10.2)	0(0.0)	3(1.2)	1(0.4)	246(100,0)
전남	전남중부권	261(90.0)	6(2.1)	0(0.0)	267(92.1)	17(5.9)	0(0.0)	5(1.7)	1(0.3)	290(100,0)
	소 계	806(86.9)	28(3.0)	0(0.0)	834(89.9)	70(7.5)	0(0.0)	21(2,3)	3(0.3)	928(100,0)
	경북남부	247(83.2)	8(2.7)	3(1.0)	258(86.9)	35(11.8)	1(0.3)	1(0.3)	2(0.7)	297(100,0)
	경북북부	190(80,5)	10(4.2)	1 (0.4)	201(85.1)	22(9.3)	0(0.0)	13(5.5)	0(0.0)	236(100,0)
경북*	경 북동 부	268(84.8)	11(3.5)	2(0.6)	281(88.9)	26(8.2)	0(0.0)	9(2.8)	0(0.0)	316(100,0)
	경북서부	273(88.1)	8(2,6)	4(1.3)	285(92.0)	18(5.8)	1(0.3)	6(1.9)	0(0.0)	310(100,0)
	소 계	978(84.4)	37(3.2)	10(0.9)	1,025(88.5)	101(8.7)	2(0.2)	29(2.5)	2(0.2)	1159(100,0)
	경상남도	539(81.5)	18(2.7)	0(0.0)	557(84.2)	82(12.4)	2(0.3)	19(2.9)	1(0.2)	661(100,0)
경남	경남서부	279(79.5)	44(12.5)	0(0.0)	323(92.0)	24(6.8)	O(O.O)	4(1.1)	0(0.0)	351(100,0)
	소 계	818(80.8)	62(6.1)	0(0.0)	880(86.9)	106(10.5)	2(0.2)	23(2.3)	1(0.1)	1012(100,0)
	제주특별자치도	261(81.3)	14(4.4)	4(1.2)	279(86.9)	32(10.0)	O(O.O)	10(3.1)	0(0.0)	321(100,0)
제주	서귀포시	265(87.2)	8(2,6)	0(0.0)	273(89.8)	26(8.6)	0(0.0)	5(1.6)	0(0.0)	304(100.0)
	소 계	526(84.2)	22(3.5)	4(0.6)	552(88.3)	58(9.3)	0(0.0)	15(2.4)	0(0.0)	625(100,0)
	계	14,267(80.2)	603(3.4)	43(0,2)	14,913(83,8)	2,376(13.4)	20(0.1)	448(2,5)	34(0.2)	17,791(100.0)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1. 현장조사
- 2. 사례판단
- 3. 피해아동 발견율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상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1회 이상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4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15,025건을 대상으로 총 30,621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11,245	23,128	2.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3,780	7,493	2.0
총 합	15,025	30,621	2,0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표 3-2〉와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23,828건으로 전체 77.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994건(3,2%),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동행한 사례는 3,904건(12,7%)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상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 또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만 경찰 동행 요청을 하였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경찰 단독의 아동학대사례 1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현장조사 상호동행이 활발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1개로 관할지역이 넓은 구간은 거리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출동하기 어려웠으나, 이와 같은 경찰 단독으로 1차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추후에는 효과적인협력과 활발한 동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사례(양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경우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5건(0.0%)이고,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1,529건(5.0%),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21건 (0.1%), 상담원·경찰·공무원이 모두 함께 동행한 사례는 329건(1.1%)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건, %)

상담원	경찰	공무원	상담원 · 경찰	상담원 · 공무원	경찰 · 공무원	상담원 · 경찰 · 공무원	파악안됨	계
23,828(77.8)	994(3.2)	5(0.0)	3,904(12.7)	1,529(5.0)	21(0.1)	329(1.1)	11(0.0)	30,621 (100.0)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표 3-2〉은 2014년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상북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2.7회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서울특별시 218 434 2.0 서울특별시동부 379 957 2.5 서울강서 244 528 2.2 서울은평 195 414 2.1 서울연등포 225 507 2.3 서울성북 157 396 2.5 서울다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 - -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보산광역시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국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서울강서 244 528 2.2 서울은평 195 414 2.1 서울영등포 225 507 2.3 서울성북 157 396 2.5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산관광역시 453 910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막추홀 77 229 3.0	
서울은평 195 414 2.1 서울영등포 225 507 2.3 서울성북 157 396 2.5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 - -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서울 서울영등포 225 507 2.3 서울성북 157 396 2.5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미추홀 77 229 3.0	
지울성북 157 396 2.5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 - -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국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서울동남권* - - -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소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국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부산 부산공역시 341 735 2.2 부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광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부 산 부산동부 359 876 2.4	
소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대구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대 구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인 천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인 전 인천미추홀 77 229 3.0	
인천미추홀 77 229 3.0	
소 계 724 1,488 2.1	
광 주 광주광역시 252 411 1.6	
대 전 대전광역시 349 686 2.0	
울 산 울산광역시 514 1,063 2.1	
경기도 423 757 1.8	
경기북부 409 907 2.2	
경기성남 417 883 2.1	
경기고양 320 802 2.5	
경기부천 386 763 2.0	
경 기 경기화성 412 790 1.9	
경기남양주 221 511 2.3	
안산시 543 1,038 1.9	
경기용인 335 674 2.0	
경기시흥 286 590 2.1	
소계 3,752 7,715 2.1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진행한 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단위 : 건, 회)

지역 및	구분 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강원도	164	305	1.9
강 원	강원동부	246	426	1.7
3 면	원주시	175	320	1.8
	소 계	585	1,051	1.8
	충청북도	355	672	1.9
충 북	충북북부	179	429	2.4
ਠ ਝ	충북남부	92	186	2.0
	소 계	626	1,287	2.1
	충청남도	428	797	1.9
충 남	충청남도남부	247	505	2.0
ਲ ਜ਼	충청남도서부	48	107	2.2
	소 계	723	1,409	1.9
	전라북도	540	1,062	2.0
ᅯᆸ	전라북도서부	551	919	1.7
전 북	전라북도동부	199	394	2.0
	소 계	1,290	2,375	1.8
	전라남도	372	654	1.8
전 남	전남서부권	215	393	1.8
선 급	전남중부권	263	700	2.7
	소 계	850	1,747	2.1
	경북남부	229	435	1.9
	경북북부	216	579	2.7
경 북*	경북동부	272	606	2.2
	경북서부	223	448	2.0
	소 계	940	2,068	2.2
	경상남도	646	1,286	2.0
경 남	경남서부	343	651	1.9
	소 계	989	1,937	2.0
	제주특별자치도	278	481	1.7
제 주	서귀포시	272	507	1.9
	소 계	550	988	1.8
	계	15,025	30,621	2,0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1) 사례판단*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 판단, 기관 내 자체 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걸쳐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의 세부적인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조기지워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워이 필요한 사례를 말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잠재위험사례를 조기지워사례로 용어가 변경 되었다. 조기지원사례를 관리할 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진행중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례판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이다. 2014년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2013년 15건의 조사진행중 사례는 조사 완료 후 아동학대사례는 1건, 조기지원사례는 2건, 일반사례는 12건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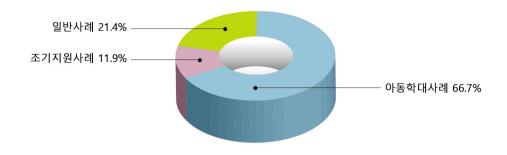
〈표 3-4〉 사례판단 결과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7,515(66.8)	1,410(12.5)	2,320(20.6)	11,245(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2,512(66.5)	373(9.9)	895(23.7)	3,780(100.0)
계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체계의 변화로 사례판정에서 사례판단으로 용어가 변경됨.

^{** &#}x27;아동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발생률'이라는 용어는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발생률'과는 다른 의미임.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단 비율을 보면 26.1%에서 89.1%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구분 ! 기관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특별시	57(26.1)	30(13.8)	131(60.1)	218(100.0)
	서울특별시동부	194(51.2)	74(19.5)	111(29.3)	379(100.0)
	서울강서	162(66.4)	39(16.0)	43(17.6)	244(100.0)
서 울	서울은평	128(65.6)	5(2.6)	62(31.8)	195(100.0)
	서울영등포	128(56.9)	27(12.0)	70(31.1)	225(100.0)
	서울성북	123(78.3)	8(5.1)	26(16.6)	157(100.0)
	서울마포	162(74.0)	20(9.1)	37(16.9)	219(100.0)
	서울동남권*	_	_	_	_
	소 계	954(58.3)	203(12.4)	480(29.3)	1,637(100.0)
부 산	부산광역시	201(58.9)	53(15.5)	87(25.5)	341(100.0)
	부산동부	191(53.2)	123(34.3)	45(12.5)	359(100.0)
	소 계	392(56.0)	176(25.1)	132(18.9)	700(100.0)

^{*} 서울동남권이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단위 : 건, %)

대무 기관 대구공역시 190(63.3) 7(2.3) 103(34.3) 300(100.0) 대구 대구공역시나 192(70.5) 26(10.7) 46(18.9) 244(100.0) 인천왕기사 366(80.8) 184.40 60(15.2) 453(100.0) 인천왕기사 366(80.8) 184.40 60(15.2) 453(100.0) 인천왕기사 366(80.8) 184.40 60(15.2) 453(100.0) 호천왕기사 36(80.8) 184.40 13(16.9) 7(3.6) 96(49.5) 194(100.0) 소 계 495(84.4) 38(5.2) 191(26.4) 724(100.0) 공 주 광주왕이사 164(65.1) 24(9.5) 64(25.4) 252(100.0) 공 한 광산의사 348(67.7) 70(13.6) 96(18.7) 514(100.0) 공 한 광산의사 348(67.7) 70(13.6) 96(18.7) 514(100.0) 공 한 광산의사 348(67.7) 70(13.6) 96(18.7) 40(100.0) 공 한 광산의사 348(67.7) 70(13.6) 96(18.7) 514(100.0) 공 기 경기보는 244(57.7) 78(18.4) 101(23.9) 433(100.0) 공 기 경기보는 266(65.0) 26(6.4) 117(28.6) 400(100.0) 공 기 경기보는 344(18.1) 14(13.8) 93(22.3) 417(100.0) 공 기 경기보는 344(18.1) 14(13.8) 93(22.3) 417(100.0) 공 기 경기보는 344(18.1) 14(3.6) 28(7.3) 386(100.0) 공 기 경기보는 41(10.0) 46(16.5) 62(15.0) 42(100.0) 공 기 경기보는 160(72.4) 29(13.1) 32(14.5) 22(100.0) 공 기 경기보는 160(72.4) 29(13.1) 32(14.5) 22(100.0)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90(26.9) 335(100.0)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10(20.9) 335(100.0)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25(15.2) 36(22.0) 184(100.0) 공 기 공 기 공 기 경기보는 100(62.8) 37(10.0) 37(10.0) 요 기 공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대구 인구에서 Ir 172(70.5) 26(10.7) 46(18.9) 244(100.0) 244(100.0) 2년 전에서 362(66.5) 33(6.1) 149(27.4) 544(100.0) 2년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2년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3 (26.38.8) 77(100.0) 2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3 전에부부 91(46.6) 124(9.5) 64(25.4) 252(100.0) 3 주 권주관력시 164(66.1) 24(9.5) 64(25.4) 252(100.0) 3 주 권주관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 전쟁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 전쟁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7(28.1) 320(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7(28.1) 320(100.0) 3 건대부부 266(65.0) 26(8.1) 74(23.1) 32(110.0) 3 건대부부 266(65.0) 26(8.1) 74(23.1) 32(14.5) 22(1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168(66.8) 26(4.1)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168(66.8) 26(4.1) 76(22.7) 36(22.0) 164(100.0) 3 3(13.4) 65(26.4) 246(100.0) 3 3(13.4) 65(26.4) 24(10.4) 3 3(10.4) 64(10.0) 3 3(10.4) 64(10.0)	지역 및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대구 인구에서 Ir 172(70.5) 26(10.7) 46(18.9) 244(100.0) 244(100.0) 2년 전에서 362(66.5) 33(6.1) 149(27.4) 544(100.0) 2년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2년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3 (26.38.8) 77(100.0) 2 전에부부 91(46.9) 7(3.6) 96(48.5) 194(100.0) 3 전에부부 91(46.6) 124(9.5) 64(25.4) 252(100.0) 3 주 권주관력시 164(66.1) 24(9.5) 64(25.4) 252(100.0) 3 주 권주관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 전쟁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 전쟁력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17(28.9) 423(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7(28.1) 320(100.0) 3 건대부부 266(65.0) 26(4.4) 17(28.1) 320(100.0) 3 건대부부 266(65.0) 26(8.1) 74(23.1) 32(110.0) 3 건대부부 266(65.0) 26(8.1) 74(23.1) 32(14.5) 22(1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266(65.0)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168(66.8) 26(4.1) 76(22.7) 90(28.9) 336(100.0) 3 건대부부 168(66.8) 26(4.1) 76(22.7) 36(22.0) 164(100.0) 3 3(13.4) 65(26.4) 246(100.0) 3 3(13.4) 65(26.4) 24(10.4) 3 3(10.4) 64(10.0) 3 3(10.4) 64(10.0)			190(63.3)	7(2.3)	103(34.3)	300(100.0)
인천 한 인천복부 91(46.9) 7(3.6) 96(49.5) 194(100.0) 인천대부홈 38(4.4) 13(16.9) 26(33.8) 77(100.0) 26 3.8 3 (4.4) 13(16.9) 26(33.8) 77(100.0) 2	대 구	대구광역시남부	172(70.5)	26(10.7)	46(18.9)	244(100.0)
인천부부 91(46.9) 7(3.6) 96(49.5) 194(100.0)			362(66.5)	33(6.1)	149(27.4)	544(100.0)
변한 성 기		인천광역시		18(4.0)	69(15.2)	453(100,0)
전인이는을 3949년 151(89) 205359 77(1000) 광주 광주왕이시 164(651) 24(9.5) 64(25.4) 252(1000) 대 전 대전 대전왕이시 286(61.1) 40(11.5) 23(6.6) 348(1000) 울산 울산광이시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도 244(57.7) 78(18.4) 101(23.9) 423(1000) 경기보는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보는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보는 26(68.1) 14(133.8) 93(22.3) 417(1000) 경기보는 34(18.9) 14(133.8) 93(22.3) 417(1000) 경기보는 34(18.9) 14(133.8) 93(22.3) 32(1000) 경기보는 34(18.9) 14(3.6) 28(7.3) 386(100.0) 경기보는 34(18.9) 14(3.6) 28(7.3) 386(100.0) 경기보는 16(072.4) 29(13.1) 32(14.5) 22(100.0) 강기보는 16(072.4) 29(13.1) 32(14.5) 22(100.0) 강기보는 16(072.4) 29(13.1) 32(14.5) 22(100.0) 경기사용 217(75.9) 28(9.1) 43(15.0) 286(100.0) 경기사용 217(75.9) 28(9.1) 43(15.0) 286(100.0) 소계 250(66.7) 534(14.2) 717(19.1) 3,752(100.0) 강원도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장원도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소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충청탁도 289(75.8) 37(10.4) 49(13.8) 355(100.0) 충복보부 81(88.0) 3(3.3) 8(8.7) 92(100.0) 소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소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보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소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보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라보도 27(17(2.8) 20(5.4) 81(21.8) 94(31.8) 94(31.0) 전라보도 27(17(2.8) 20(5.4) 81(21.8) 94	OI 큐J		91(46.9)	7(3.6)	96(49.5)	194(100.0)
관 주 생주관역시 164(55.1) 24(9.5) 64(25.4) 252(10.00) 대 전 대전관역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물 산 울산관역시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도 244(57.7) 76(18.4) 101(23.9) 423(100.0) 경기보는 266(65.0) 26(6.4) 117(28.6) 423(100.0) 경기보는 266(65.0) 26(6.4) 117(28.6) 423(100.0) 경기보는 266(65.0) 26(6.4) 17(28.6) 32(100.0) 경기보험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보험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보험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보험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보험 160(72.4) 29(13.1) 32(14.5) 221(100.0) 전간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3(100.0) 경기용인 103(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경원도 103(62.8) 25(15.2) 36(22.0) 177(100.0) 소 계 264(62.2) 67(11.5) 154(26.3) 385(100.0) 경기용다 113(64.6) 9(5.1) 53(30.3) 175(100.0) 충청보도 281(65.7) 63(14.7) 49(13.8) 355(100.0) 충청보도 281(65.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보 81(88.0) 3(3.3) 8(8.7) 92(100.0) 충청남도보 165(66.8) 37(10.4) 49(13.8) 355(100.0) 충청남도보 165(66.8) 37(10.4) 49(13.8) 48(100.0) 충청남도보 37(77.1) 7(14.8) 4(8.3) 48(100.0) 출청남도보 37(77.1) 7(14.8) 4(8.3) 48(100.0) 출청남도보 37(77.1) 7(14.8) 4(8.3) 48(100.0) 출청남도보 37(77.1) 7(14.8) 4(8.3) 48(100.0) 전라복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복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28(13.0) 21(16.1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28(13.0) 21(16.1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28(13.0) 21(10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28(13.0) 21(16.1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28(13.0) 21(16.1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4(12.1) 27(100.0) 경복라부 154(77.4) 23(11.6) 24(12.1) 28(13.0) 216(100.0) 경복라부 154(75.4) 82(9.6) 17(14.8) 82(0.0) 22(100.0) 경복라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24 보 24 계 493(55.2) 139(14	인 신	인천미추홀	38(49.4)	13(16.9)	26(33.8)	77(100.0)
대 전 대전광익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을 산 용산광역시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토 244(57.7) 70(13.6) 96(18.7) 514(100.0) 경기토부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보당 220(68.8) 26(6.1) 74(23.1) 320(100.0) 경기보당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보당 344(89.1) 14(33.8) 93(22.3) 417(100.0) 경기보장 22(68.8) 26(8.1) 74(23.1) 32(100.0) 경기보장 160(72.4) 29(13.1) 32(14.5) 221(100.0) 살기보장 160(72.4) 29(13.1) 32(14.5) 221(100.0) 살기보장 160(72.4) 29(13.1) 32(14.5) 221(100.0) 살기사름 17(75.9) 26(9.1) 43(15.0) 286(100.0) 초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살인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살인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살인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9(100.0) 초 계 364(62.2) 67(11.5) 154(26.3) 48(10.0) 초 계 364(62.2) 67(11.5) 154(26.3) 589(100.0) 초 본 28(10.5) 37(10.4) 49(13.8) 355(100.0) 초 본 28(10.5) 37(10.4) 49(13.8) 355(100.0) 초 본 28(165.7) 63(14.7) 84(19.6) 428(100.0) 초 계 455(72.7) 62(9.9) 109(17.4) 62(10.0) 초 전 보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초 전 보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초 전 보험도 보다 37(77.1) 7(14.6) 4(8.3) 42(100.0) 초 전 보험도 보다 37(77.1) 7(14.6) 4(8.3) 42(100.0) 조 전 보다 모든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 보다 보다 27(172.8) 20(5.4) 81(21.8) 372(100.0) 경부탁부 164(75.9) 24(11.1) 28(13.0) 21(16)0.0,		소 계	495(68.4)	38(5.2)	191(26.4)	724(100.0)
물 산 울산광역시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도 244(57.7) 78(18.4) 101(23.9) 423(100.0) 경기복부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성남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천 262(68.4) 68(16.5) 62(15.0) 412(100.0) 경기부천 160(72.4) 29(13.1) 32(14.5) 221(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사항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같건봉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2강원동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환청부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청북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청남도 48(66.8) 107(14.8) 133(18.4) 62(100.0) 충청남도 49(75.6) 68(12.6) 64(11.9) 540(100.0) 충청남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북도 154(77.4) 32(11.6) 22(11.1) 199(100.0) 전라북도 154(77.4) 32(11.6) 22(11.1) 199(100.0) 건라북도부 164(75.9) 24(11.1) 28(13.0) 21(160.0) 23(14.4) 151(70.2) 24(15.4) 37(16.6) 49(2.0) 223(100.0) 23(14.4) 24(17.7) 11(3.2) 86(25.1) 34(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10.0) 24(11.1) 28	광 주		164(65.1)	24(9.5)	64(25.4)	252(100.0)
경기도 244(57.7) 78(18.4) 101(23.9) 423(100.0) 경기북부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성남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천 180(72.4) 29(13.1) 32(14.5) 221(100.0) 경기남양주 180(72.4) 29(13.1) 32(14.5) 221(100.0) 관사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사항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32(14.5) 21(100.0) 27(18.2) 113(64.6) 75(14.2) 717(19.1) 3,752(100.0) 28(100.0) 소 계 36(2.6) 25(15.2) 36(22.0) 164(100.0) 28(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출청보부 18(80.0) 3(3.13.4) 45(3.6) 38(8.7) 92(100.0) 충복남부 81(88.0) 3(3.3) 8(8.7) 92(100.0) 충복남부 81(88.0) 3(3.3) 8(8.7) 92(100.0) 충복남부 105(568.7) 22(12.3) 52(29.1) 179(100.0) 충복남부 105(66.8) 37(15.0) 45(18.2) 247(100.0) 충청남도남부 36(66.8) 37(15.0) 45(18.2) 247(100.0) 충청남도남부 37(07.7) 7(14.6) 48(3.3) 48(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100.0) 202(14.1) 199(대 전	대전광역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경기념남 183(43.9) 26(66.5) 26(6.4) 117(28.6) 409(100.0) 경기성남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고양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감기타성 282(68.4) 68(16.5) 62(15.0) 412(100.0) 경기남양주 150(72.4) 29(13.1) 32(14.5) 221(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감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전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안산시 113(64.6) 9(5.1) 5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관소계 455(72.7) 62(9.9) 109(17.4) 62(610.0) 관소계 455(72.7) 62(9.9) 109(17.4) 62(610.0) 관소계 43(15.6) 42(100.0) 관소계 43(15.6) 43(100.0) 관소계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43(100.0) 24(11.6) 24(11.6) 24(11.0) 24(100.0) 24(11.6) 24(11.0) 24(100.0) 24(11.6) 24(11.6) 24(11.0) 24(100.0) 24(11.6) 24(11.6) 24(11.6) 24(11.0) 24(100.0) 24(11.6) 24	울 산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성남 183(42.9) 141(33.8) 99(22.3) 417(100.0) 경기고양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천 282(68.4) 68(16.5) 62(15.0) 412(100.0) 경기남양주 160(72.4) 29(13.1) 32(14.5) 221(100.0) 전기남양주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전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전기용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전기용도 103(62.8) 25(15.2) 36(22.0) 179(100.0) 전기용도 103(62.8) 37(10.4) 49(13.8) 355(100.0) 전기용도 103(62.8) 37(10.4) 49(13.8) 48(100.0) 전기용도 103(62.8) 37(15.0) 45(18.2) 247(100.0) 전기용도 103(62.8) 37(10.4) 23(10.0) 전기용도 103(62.8) 37(10.4) 23(11.6) 22(11.1) 199(100.0) 전기용도 103(62.8) 37(10.0) 전기용도 103(62.8) 37(10.0) 38(17.7) 26(12.1) 215(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223(100.0) 38(18.8) 60(26.2) 323(100.0) 38(18.8) 60(26.2)		경기도	244(57.7)	78(18.4)	101(23.9)	423(100.0)
경기교양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부전 344(89.1) 14(3.6) 28(7.3) 386(100.0) 경기부정 282(68.4) 68(16.5) 62(15.0) 412(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사용 217(75.9) 26(9.1) 43(15.0) 286(100.0) 조기사용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35(100.0) 335(100.0) 37(100.0) 27(100.0) 소 계 36(100.0)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10.0)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26 3 4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경기북부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412(100.0) 경기화성 282(68.4) 68(16.5) 62(15.0) 412(100.0) 연간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92.7) 90(26.9) 335(100.0) 경기사용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간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간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관계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소 기 45(15.0) 286(100.0) 소 기 485(16.6) 37(15.0) 45(18.2) 247(100.0) 소 기 485(16.6) 37(15.0) 45(18.2) 247(100.0) 소 기 485(16.6) 37(15.0) 45(18.2) 247(100.0) 소 기 485(16.0) 37(15.0) 45(18.2) 247(100.0) 소 기 485(16.0) 45(18.2) 247(100.0) 25(14.5) 25(16.0) 25(16.0) 25(14.5) 25(16.0)		경기성남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 경기화성 282(88.4) 68(16.5) 62(15.0) 412(100.0) 경기남양주 160(72.4) 29(13.1) 32(14.5) 221(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 148(60.2) 33(13.4) 65(26.4) 246(100.0) 실우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충북부 105(58.7) 22(11.5) 154(26.3) 585(100.0) 충청담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청남부 81(88.0) 3(3.3) 8(8.7) 92(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나본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나본 37(77.1) 7(14.6) 4(8.3) 48(100.0) 소 계 433(66.8) 37(15.0) 45(18.2) 247(100.0) 충청남도사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전라복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복도 154(77.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복도부터 151(70.2) 38(17.7) 26(12.1) 119(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전라봉주부런 219(83.3) 24(9.1) 20(7.6) 263(100.0) 경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 166(68.4) 35(12.9) 51(18.8) 372(100.0) 경북부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건남부터 15(150.0) 45(18.9) 44(18.1) 44(16.6) 49(10.0) 건남부터 15(150.0) 45(18.9) 44(18.6) 49(10.0) 44(18.6) 49(10.0) 건남부터 15(150.0) 45(18.9) 44(18.6) 49(10.0) 44(18.6) 49(10.0) 44(18.6) 49(10.0) 44(18.6) 49(10.0) 44(18.6) 49(10.0) 44(18.6) 49(10.0) 4		경기고양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남양주 160(72.4) 29(13.1) 32(14.5) 221(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간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건원동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초목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초목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초목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초목부부 18(88.0) 3(3.3) 8(8.7) 92(100.0) 초점남도 281(65.7) 62(9.9) 109(17.4) 626(100.0) 초청남도남부 37(77.1) 7(14.6) 4(8.3) 48(100.0) 초청남도남부 37(77.1) 7(14.6) 4(8.3) 48(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소 계 641(75.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641(75.4) 21(13.2) 188(14.6) 1,290(100.0) 소 계 641(75.4) 21(13.2) 51(100.0) 소 계 641(75.4) 21(13.2) 51(18.8) 272(100.0) 건봉부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4 月 749(4.4) 51(18.0) 51(100.0) 4 14(18.0) 4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인산시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335(100.0) 286(100.0) 4 (315.0) 286(100.0) 4 (315.0) 286(100.0) 4 (315.0) 286(100.0) 4 (315.0) 286(100.0) 4 (315.0) 4 (315.0) 286(100.0) 4 (315.0) 4 (315.0) 286(100.0) 4 (315.0) 4 (315.0) 286(100.0) 4 (315.0) 4	경 기	경기화성	282(68.4)	68(16.5)	62(15.0)	412(100.0)
경기용인 217(75.9) 26(9.1) 43(15.0) 286(10.0) 47(14.9) 28(10.0.0) 48(15.0) 28(10.0.0) 48(15.0) 28(10.0.0) 48(15.0) 28(10.0.0) 48(10.0.0) 48(15.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4.2) 717(19.1) 3,752(100.0) 28(16.0.0) 28(14.2) 33(13.4) 65(26.4) 246(100.0) 28(15.4) 13(64.6) 9(5.1) 53(30.3) 175(100.0) 4 4 36(62.2) 67(11.5) 154(26.3) 588(100.0) 4 4 4 (13.8) 355(100.0) 4 4 4 (13.8) 355(100.0) 28(14.2) 28(16.5.7) 22(12.3) 52(29.1) 179(100.0) 4 4 4 (13.8) 355(100.0) 4 4 4 (13.8) 355(100.0) 4 4 4 (13.8) 355(100.0) 4 4 4 (13.8) 35(100.0) 4 4 4 (13.8) 35(100.0) 4 4 4 (13.8) 4 (10.0.0) 4 4 4 (13.8) 4 (10.0.0) 4 4 4 (13.8) 4 (10.0.0) 4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4 4 (13.8) 4 (10.0.0) 4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4 (13.8) 4 (10.0.0) 4 (13.8) 4 (1		경기남양주	160(72.4)	29(13.1)	32(14.5)	221(100.0)
경기용인 경기시흥 217(75.9) 28(9.1) 43(15.0) 28(100.0) 경기시흥 217(75.9) 28(9.1) 43(15.0) 28(100.0) 4 3(15.0) 28(100.0) 4 3(15.0) 28(100.0) 4 3(15.0) 28(100.0) 4 3(15.0) 28(100.0) 4 3(15.0) 28(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3.752(100.0) 4.2 4(1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표 기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관련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관련도 148(60.2)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6(100.0)) 충청북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북부부 (105(68.7) (22(12.3) (52(29.1) (179(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나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4.4) (723(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4.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100.0))) 전라북도 271(72.8) (20(5.4) (81(18.8) (372(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18.8) (372(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18.8) (372(100.0))) 전라남도 151(70.2) (38(17.7) (26(12.1) (216(100.0))) 전라남도 164(75.4) (82(9.6) (127(14.9) (85(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남서부 246(71.7) (13(2) (86(2.2) (229(100.0))) 경북나부 26(68.4) (37(12.9) (51(18.8) (272(100.0))) 경남서부 25(55.0) (43(18.8) (60(26.2) (229(100.0))) 경남서부 25(55.0) (43(18.8) (60(26.2) (229(100.0))) 경남서부 26(68.4) (37(16.6) (49(22.0) (223(100.0))) 전라남도 503(77.9) (50.8) (138(14.8) (188(20.0) (940(100.0))) 제 주 4개 (479(75.7) (16(1.6) (224(22.6) (989(100.0))) 4		경기용인	169(50.4)			
상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도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충청북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북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쇼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쇼 계 455(72.7) 63(4.7) 84(19.6) 428(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나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쇼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남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라남도부터 151(70.2) 38(17.7) 26(12.1) 215(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2.0) 223(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제 주 설라되도 179(64.4) 51(18) 94(33.8) 278(100.0) 제 주 선러되도 179(64.4) 51(18) 94(33.8) 278(100.0) 4 계 64(175.7) 16(1.6) 224(22.6) 989(100.0) 제 주 선러되도 179(64.4) 51(18) 94(33.8) 278(100.0) 4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 주 선러되도 179(64.4) 51(18) 94(33.8) 278(100.0) 4 계 749(75.7) 16(1.6) 51(18) 94(33.8) 278(100.0) 4 계 749(75.7) 16(1.6) 51(18) 94(33.8) 278(100.0) 4 계 749(75.7) 16(1.6) 51(18) 94(33.8) 278(100.0)		경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원동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쇼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쇼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출청복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출청복도 105(58.7) 22(12.3) 52(29.1) 179(100.0) 쇼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쇼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출청남도 남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출청남도남부 365(68.8) 37(15.0) 45(18.2) 247(100.0) 쇼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쇼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쇼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쇼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북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쇼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전라북부터 219(83.3) 24(9.1) 20(7.6) 263(100.0) 전북부터 164(75.9) 24(11.1) 28(13.0) 216(100.0) 전북부터 164(75.9) 24(11.1) 28(13.0) 216(100.0) 전북부터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북서부 260(71.7) 11(3.2) 86(25.1) 343(100.0) 전북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강원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103(62.8)		36(22.0)	164(100.0)
설무지 113(64.6) 9(6.1) 53(3.3) 17(8(100.0) 4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71 01		148(60.2)	33(13.4)	65(26.4)	246(100,0)
충북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북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북남부 81(88.0) 3(3.3) 8(8.7) 92(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남성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부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250(7.9) 43(18.8) 60(26.2) 229(100.0) 경북부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56(5.2) 139(14.8) 188(20.0) 940(100.0) 전남서부 179(64.4) 17(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라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강 원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충북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북부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북남부 81(88.0) 3(3.3) 8(8.7) 92(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남성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부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250(7.9) 43(18.8) 60(26.2) 229(100.0) 경북부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56(5.2) 139(14.8) 188(20.0) 940(100.0) 전남서부 179(64.4) 17(6.6) 49(22.0) 223(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남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라서부 179(64.4) 5(1.8) 94(33.8) 278(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전라서부시 109(40.1) 17(6.3) 146(63.7) 272(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충북						355(100.0)
중복담무 81(88.0) 3(3.3) 8(8.7) 92(100.0)	* H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청남도남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소계 483(66.8) 37(15.0) 45(18.2) 247(100.0) 소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소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소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소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라성부권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라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남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남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소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4 세구토쇠 179(64.4) 17(6.3) 146(53.7) 272(100.0) 4 세 4 세 288(52.4) 22(4.0) 240(43.6) 550(100.0)	중 국	충북남부	81(88.0)	3(3.3)	8(8.7)	92(100.0)
충남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중 님 충청남도서부 37(77.1) 7(14.6) 4(8.3) 48(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중심 등 성	· 구 . -	충청남도남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남서부권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4 계 58(52.4) 22(4.0) 240(43.6) 550(100.0)	중급	충청남도서부	37(77.1)	7(14.6)	4(8.3)	48(100.0)
전 북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전라북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라남도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동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4 계 주 4月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4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복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라목도농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ᅯᆸ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남서부권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 세구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신 국	전라북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전남서부권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부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경북서부 137(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4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X-1 F		151(70.2)	38(17.7)	26(12.1)	215(100.0)
소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동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소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신 금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3 년부 경북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24(10.0) 3 년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4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3 년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4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3 년부 기구(64.4) 5(1.8) 94(33.8) 278(100.0) 17(6.3) 146(53.7) 272(100.0) 4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소 계				850(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북동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23(100.0) 소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4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쇼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쇼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제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쇼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 북*		164(75.9)	24(11.1)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쇼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쇼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제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쇼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북동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소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북서부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남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남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138(21.4)	646(100.0)
소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제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경 남		, ,			
제 주 복 기자도 179(64.4) 5(1.8) 94(33.8) 278(100.0) 17(6.3) 146(53.7) 272(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제 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소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제 주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3) 피해아동 보호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10,027건 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수는 7,402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10,027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단위: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총 합	10,027	7,402	

3 📕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4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1.10%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0.73%에 대비하여 약 0.4%가량 상승하였다. 기관 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2.81%, 제주특별자치도 2.34%, 전라남도 2.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광역시가 0.53%, 서울특별시가 0.62%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1%*, 호주가 17.6%**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ervices, Bureau (2015). Child Maltreatment 2013,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4).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2-13.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간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수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68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 인구와 지역적 특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개소,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	1,543,394	8	192,924	954	0.62
부산	535,667	2	267,834	392	0.73
대구	443,500	2	221,750	362	0.82
인천	529,323	3	176,441	495	0.94
광주	309,801	1	309,801	164	0.53
대전	300,466	1	300,466	286	0.95
울산	227,998	1	227,998	348	1.53
경기	2,417,889	10	241,789	2,501	1.03
강원	261,354	3	87,118	364	1.39
충북	286,069	3	95,356	455	1.59
충남	405831	3	135,277	483	1.19
전북	331,121	3	110,374	932	2,81
전남	316,793	3	105,598	641	2.02
경북	442,631	4	110,658	613	1.38
경남	624,681	2	312,341	749	1.20
제주	122,821	2	61,411	288	2.34
계	9,099,339	51	184,820	10,027	1.10

^{*} 통계청(www.kosis.kr), 2014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3. 아동학대사례 유형
-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5. 서비스 제공 현황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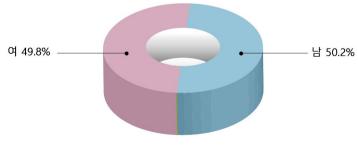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표 4-1)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5,037건(50,2%), 여아가 4,990건 (49.8%)로 남아와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은 남아보다 여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2014년에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남	여	계
5,037(50.2)	4,990(49.8)	10,027(10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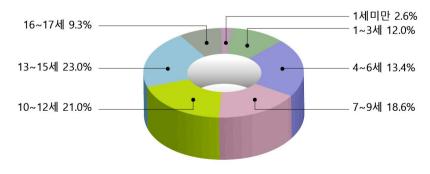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표 42〉와 같이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의 전체의 2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가 12.0%로, 이는 영유아기에 해당한다. 영유아기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는 아동이 부모와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즉,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이겨내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영유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사랑카드 발급 또는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건강교육 실시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의심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Schore, A. N. (2001). The effects of early relational trauma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ion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201-269.

〈표 4-2〉 피해아동 연령

(EII · E, %)
총합
263(2,6)
318(3.2)
398(4.0)
491(4.9)
1,207(12.0)
418(4.2)
422(4.2)
507(5.1)
1,347(13.4)
671(6.7)
566(5.6)
628(6.3)
1,865(18.6)
629(6.3)
717(7.2)
761(7.6)
2,107(21.0)
810(8.1)
822(8.2)
677(6.8)
2,309(23.0)
538(5.4)
391(3.9)
929(9.3)
10,027(100,0)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표 4-3〉과 같이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은 4,458건으로 44.5%였으며, 대리양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건(2,7%), 43건(0,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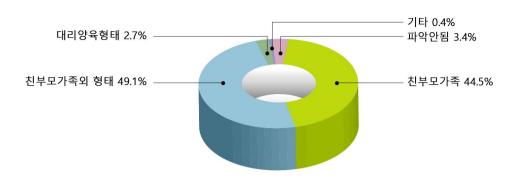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3,509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5%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므로 한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208건(2.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39건(0.4%), 가정위탁 24건(0.2%)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3년 356건에 비해 41.6%가 감소하였다. 대리양육형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친인척, 시설 등 제3자에 의해 양육되어 적응 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 및 입양 가정 선정할 시 부모의 학대 발생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	육형태							
친부모 가족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기타	파악 안됨	계
4,458 (44.5)	1,887 (18.8)	1,414 (14.1)	208 (2.1)	750 (7.5)	297 (3.0)	353 (3.5)	10 (0.1)	4,919 (49.1)	24 (0.2)	39 (0.4)	208 (2.1)	271 (2.7)	43 (0.4)	336 (3.4)	10,027 (100,0)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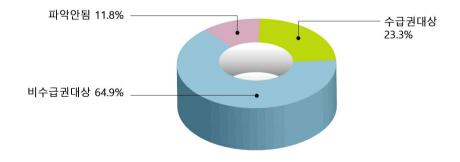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4-4〉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아동이 전체의 23.3%에 해당하는 2.333건이다.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6.506건(64.9%)이고, 수급권 여부가 파악 되지 않는 경우는 1,188건(11.8%)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2,333 (23.3)
비수급권 대상	6,506 (64.9)
파악안됨	1,188 (11.8)
계	10,027 (100.0)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표 4-5》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 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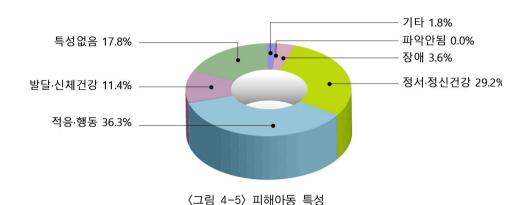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8,09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으로 6,491건(29.1%), 특성없음 3,956건(17.8%), 발달·신체건강 2,533건(11.4%), 장애 796건(3.5%), 기타 395건(1.8%)이었다. 여기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17.8%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의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ㆍ행동 중에서는 반항ㆍ충동ㆍ공격성이 1,108건(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867건(3.9%), 가출과 학습문제가 각각 804건(3.6%), 783건(3.5%)으로 나타났다. 정서ㆍ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427건(6.4%)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산만 1,015(4.6%), 낮은 자아존중감 746건(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ㆍ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849건(3.8%)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가의심되는 경우 또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344건(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 322건(1.4%), 신체적 장애 130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파악 및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130(0,6)
	정신적 장애	322(1.4)
장 애	장애의심	344(1.5)
	소계	796(3,6)
	주의산만	1,015(4.6)
	과잉행동	537(2.4)
	인터넷(게임)중독	293(1.3)
	불안	1,427(6.4)
	애착문제	633(2.8)
정서 · 정신건강	무력감	451(2,0)
	우울	590(2,6)
	낮은 자아존중감	746(3.3)
	성격 및 기질 문제	550(2.5)
	탐식 및 결식	249(1.1)
	소계	6,491(29.1)
	반항 · 충동 · 공격성	1,108(5.0)
	거짓말	867(3.9)
	도벽	610(2.7)
	가출	804(3.6)
	약물 · 흡연 · 음주	727(3.3)
	성문제	216(1.0)
	학교 부적응	748(3.4)
적응 · 행동	잦은 결석	587(2.6)
	늦은 귀가	559(2.5)
	학습문제	783(3.5)
	폭력행동	325(1.5)
	비행집단활동	211(0.9)
	불건전한 또래 관계	356(1.6)
	대인관계 기피	192(0.9)
	소계	8,093(36.3)
	신체발달지연	280(1.3)
	언어문제	645(2.9)
	영양결핍	197(0.9)
	대소변문제	177(0.8)
발달 · 신체건강	위생문제	849(3.8)
	틱(음성 · 신체 · 뚜렛)	60(0.3)
	잦은 병치레	115(0.5)
	주요병력	210(0.9)
	소계	2,533(11.4)
	특성없음	3,956(17.8)
	기타	395(1.8)
	파악안됨	5(0.0)
	계	22,26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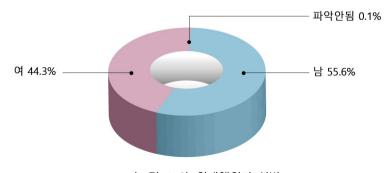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표 4-6〉과 같이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5.6%에 해당하는 5,572건이었으며, 여성은 4,446건(44.3%),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9건(0.1%)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남	여	파악안됨	계
5,572(55.6)	4,446(44.3)	9(0.1)	10,027(100.0)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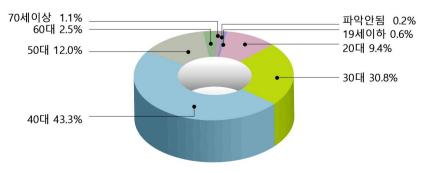
나.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47〉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4,337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091건(30,8%)이었다. 앞서 피해아동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학대행위자는 63건으로 0.6%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로서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는 성인인 학대행위자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63(0.6)
20~29세	947(9.4)
30~39세	3,091(30.8)
40~49세	4,337(43.3)
50~59세	1,207(12.0)
60~69세	251(2.5)
70세 이상	109(1.1)
파악안됨	22(0.2)
계	10,027(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8〉과 같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안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1.8%에 해당하는 8,20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531건 (45.2%), 친모는 3,211건(32.0%), 계모와 계부는 각각 242건(2.4%), 189건(1.9%) 순으로 높게나타났다.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군 '울산계모사건', '칠곡계모사건'등 각종 미디어매체의 노출을 통해 계부ㆍ계모의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모와 친부에의한 학대가 약 18배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내에서 학대행위자 상담ㆍ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 조항이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ㆍ조건부 기소유예ㆍ보호처분 등을통해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또는 교육 명령을 강제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리양육자의 경우 990건으로 9.9%에 해당하였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보육교직원은 295건 (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건(1.8%)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돌봄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등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체벌 대신에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친인척 559건(5.6%), 기타 129건(1.3%), 타인은 124건(1.2%), 파악안됨 18건(0.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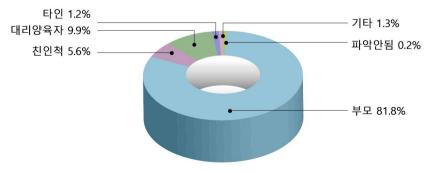
〈2013년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표 4·8〉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통계 추출 과정 및 상세 확인 중 2013년 통계 수치 중 유치원교직원·보육교직원·초·중·고교 직원에 대한 입력오류를 아래와 같이 발견하여 이 수치를 정정하고자 함.

- * 유치워교직원 53건 → 35건, 보육교직원 202건 → 217건, 초·중·고교 직원 28건 → 31건
- * 상세한 표 부록 4 참조(p.288)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친부	4,531(45.2)
	친모	3,211(32.0)
	계부	189(1.9)
부모	계모	242(2.4)
	양부	17(0.2)
	양모	17(0.2)
	소계	8,207(81.8)
	친조부	69(0.7)
	친조모	135(1.3)
	외조부	17(0.2)
친인척	외조모	54(0.5)
	친인척	229(2.3)
	형제, 자매	55(0.5)
	소계	559(5.6)
	부,모의 동거인	146(1.5)
	유치원교직원	99(1.0)
	초·중·고교 직원	145(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80(0.8)
	보육교직원	295(2.9)
대리양육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7(1.8)
	기타시설 종사자	29(0.3)
	위탁부	5(0.0)
	위탁모	7(0.1)
	베이비시터	7(0.1)
	소계	990(9.9)
	이웃	73(0.7)
타인	낯선 사람	51(0.5)
	소계	124(1.2)
	기타	129(1.3)
	파악안됨	18(0.2)
	계	10,027(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x27;대리양육자' 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전화안선화한유마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화한유마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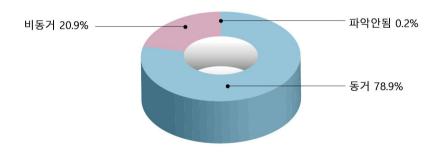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표 4-9〉와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7,908건(78.9%)이었으며, 동거하지 않지 않는 경우는 2,100건(20.9%),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9건(0.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 중 81.8%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8〉 참조〉). 아동이 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할 경우,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활용 및 전 국민적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7,908(78.9)	2,100(20.9)	19(0.2)	10,027(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표 4-10〉과 같이 살펴본 결과, 무직인 학대행위자가 3,250건 (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1,650건(16.5%)이었다. 위와 같은 직업유형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 유발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 상 경제적 빈곤 등 환경적 요인이 학대 발생 요인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요인만으로 반드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를 차지하였다. 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관리직	256(2.6)
전문직	910(9.1)
기술공 및 준전문직	731(7.3)
사무직	261(2.6)
서비스 및 판매직	1,513(15.1)
농·어·축산업	255(2.5)
기능직	144(1.4)
기계장치조작원	243(2.4)
단순노무직	1,650(16.5)
주부	1(0.0)
군인	42(0.4)
무직	3,250(32.4)
파악안됨	771(7.7)
계	10,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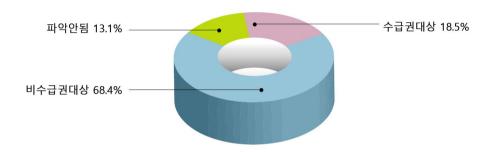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를 〈표 4-11〉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 행위자가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전체의 68.4%인 6.856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수급권 대상은 18.5%로 1.860건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311건(13.1%)으로 조사되었는데, 학대행위자의 경제적인 상황은 학대의 다양한 위험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군구의 지원 등으로 학대행위자의 수급권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860(18.5)
비수급권 대상	6,856(68.4)
파악안됨	1,311(13.1)
Я	10,027(100.0)



〈그림 4-10〉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표 4-12)와 같이 학대행위자 특성은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10,076건(33.1%)이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하는 학대행위자는 6,200건(20.4%)이었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3,050건 (10.0%)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 양육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대 관련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실직과 빈곤 같은 경제적 위기,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는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134건(7.0%), 중독문제가 있는 경우는 2,026건(6.7%)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병리적 특성은 아동과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 장화정·강미경·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방해하여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이러한 특성을 발견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 및 제36조 보호처분의 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과 환경간의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행위자 특성에 맞는 개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EII · E, 75)
특 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252(0.8)
정신적 장애	231(0.8)
장애의심	328(1.1)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0,076(33.1)
중독문제	2,026(6.7)
질환문제	260(0.9)
성격 및 기질문제	2,134(7.0)
위생문제	502(1.6)
나태 및 무기력	423(1.4)
난독해, 난작문	35(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200(20.4)
어릴 적 학대경험	536(1.8)
폭력성	1,491(4.9)
전과력	164(0.5)
성문제	261(0.9)
원치 않는 아동	282(0.9)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10.0)
종교문제	69(0.2)
특성 없음	1,667(5.5)
파악안됨	464(1.5)
기타	3(0.0)
Я	30,454(100.0)

※중복포함

2 이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4·13〉과 같이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 대사례의 85.9%인 총 8,6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8,400건(83.8%)로 10명 중 8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300건(3.0%), 171건 (1.7%), 96건(1.0%)으로 전체 사례 중 5.7%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작년보다 약 1.2%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180건(1.8%), 기타복지시설 30건 (0.3%)로 전체 사례 중 2.1%에 해당한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관들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위와 같은 기관들은 어떤 학대 발생 장소보다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직군의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이 아닌 보다 심층적으로 학대예방법과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3〉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비율)
71.74	아동 가정 내	8,400(83.8)
가정 내	학대행위자 가정 내	210(2.1)
	소계	8,610(85.9)
집-	근처 또는 길가	185(1.8)
	친척집	79(0.8)
	이웃집	9(0.1)
	어린이집	300(3.0)
	유치원	96(1.0)
	학교	171(1.7)
	학원	96(1.0)
	병원	40(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80(1.8)
숙시시결	기타복지시설	30(0.3)
	소계	210(2.1)
	숙박업소	49(0.5)
	종교시설	20(0.2)
	기타	147(1.5)
	파악안됨	15(0.1)
	계	10,027(100.0)

^{*}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하여 신 고접수 된 경우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부모이지만, 발생장소는 어린이집이 되고, 또한 부모가 아동을 병원에 방입한 경우는 발생장소는 병원이 됨.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3,073건(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1,371건(13.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253건 (12.5%)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56.8%로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만성적인 학대는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서 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4〉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건.%)

	(ピカ・セ, ル)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3,073(30.6)
2~3일에 한 번	1,371(13.7)
일주일에 한 번	1,253(12.5)
2주일에 한 번	658(6.6)
1개월에 한 번	1,002(10.0)
2~3개월에 한 번	705(7.0)
6개월에 한 번	366(3.7)
1년에 한 번	236(2.4)
일회성	1,363(13.6)
계	10,027(100.0)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3 이동학대사례 유형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단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미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표 4·15〉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한 가지 학대유형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3,440건(3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531건(5.3%), 정서학대·방임은 513건(5.1%)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모든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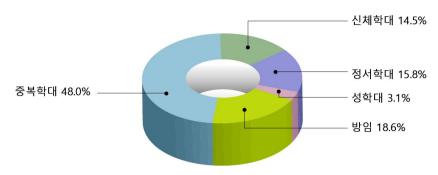
(0.1%)이었다. 여기서 정서학대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는 다른 유형에 비해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후가 눈에 띄기 어려워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 유형에 대하여 학대 인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이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서학대 55.5%, 방임은 49.7%로 나타나, 신체학대 72.0%, 성학대 90.8%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교육 이행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동들과 자주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아동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대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복학대의 경우 아동의 후유증은 더 복합적이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5〉아동학대사례 유형 | (중복학대 별도 분류)

ନର୍ଷ		건수(비율)
신체학대		1,453(14.5)
	정서학대	1,582(15.8)
	성학대	308(3.1)
	방임	1,870(18.6)
	신체학대·정서학대	3,440(34.3)
	신체학대·성학대	18(0.2)
	신체학대·방임	191(1.9)
	정서학대·성학대	39(0.4)
	정서학대·방임	513(5.1)
중복학대	성학대·방임	9(0.1)
중국역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1(0.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531(5.3)
	신체학대·성학대·방임	2(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7(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3(0.1)
	소계	4,814(48.0)
	계	10,027(100.0)

^{*} 보건복지부(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 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인 10,027건을 초과한 15,458건이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0.0%에 해당하는 6,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5,699건(36.9%), 방임이 3,136건(20.3%)이었다. 또한 성학대는 447건(2.9%)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표 4-15〉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5%, 15.8%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학대는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었지만, 성학대가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을 성인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학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사전 예방 수칙, 성학대 피해 시 성인에게 즉시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학대 징후 및 피해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교육을 통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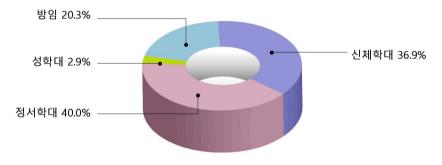
^{*} 한인영·김진숙·유서구 (2007). 아동기 성학대 피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541-546,

〈표 4-16〉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5,699(36.9)
정서학대	6,176(40.0)
성학대	447(2.9)
방임	3,136(20.3)
	15,458(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13〉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표 4-17〉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 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 6.6% 높았으며, 방임사례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약 3.2% 더 높았다. 정서학대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약 1.2%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남아의 비율은 11.6%에 불과하지만 여이는 88.4%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학대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학대유형 성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3,038(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중복포함

〈그림 4-14〉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표 4-1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및 성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학령기인 만 10세~12세와 만 13~15세, 만 7세~9세 구간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6세~17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피해아동의 발견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사례의 경우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 미만의 아동과 같은 경우는 총 319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 사례가 212건으로 약 66.5%로 과반수이상에 해당이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건강교육 실시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영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거 %)

학대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Й
1세 미만	43(0.8)	64(1.0)	O(O.O)	212(6.8)	319(2.1)
1~3세	469(8.2)	655(10.6)	4(0.9)	590(18.8)	1,718(11.1)
4~6세	652(11.4)	822(13.3)	44(9.8)	500(15.9)	2,018(13,1)
7~9세	1,091(19.1)	1,128(18.3)	58(13.0)	615(19.6)	2,892(18.7)
10~12세	1,278(22.4)	1,353(21.9)	113(25.3)	601(19.2)	3,345(21.6)
13~15세	1,539(27.0)	1,532(24.8)	157(35.1)	470(15.0)	3,698(23.9)
16~17세	627(11.0)	622(10.1)	71(15.9)	1 48(4.7)	1,468(9.5)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중복포함

〈그림 4-15〉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특성을 (표 4-19)와 같이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 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 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학대에서 장애 특성이 6.1%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학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가 아동의장애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와도 같은 결과이다*. 정서·정신건강 특성의 경우 정서학대에서 31.7%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불안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한다**. 부모에 의한폭언, 아동에 대한 위협 행위 등의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공포심을 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추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적응·행동 특성의 경우 신체학대와 성학대에서 42.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학대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6.1%)과 거짓말(5.1%)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성학대에서는 성문제(6.0%)과 약물·흡연·음주(5.4%)가 높은 분포를보였다. 발달·신체건강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23.4%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특히 위생이 10%로 가장 높았다.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tn: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김수정·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단위 · 건, 76)
관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적 장애	72(0.5)	67(0.5)	5(0.5)	60(0.8)	204(0.6)
장	정신적 장애	178(1.3)	171(1.2)	34(3.2)	125(1.7)	508(1.4)
ОН	장애 의심	157(1.2)	167(1.2)	26(2.4)	178(2.5)	528(1.5)
	소계	407(3.0)	405(2.9)	65(6.1)	363(5.1)	1,240(3.5)
	주의산만	618(4.5)	605(4.3)	40(3.8)	319(4.4)	1,582(4.4)
	과잉행동	357(2.6)	332(2.4)	17(1.6)	181(2.5)	887(2.5)
	인터넷(게임) 중독	201(1.5)	190(1.4)	4(0.4)	91(1.3)	486(1.4)
정 서	불안	931(6.8)	1,103(7.9)	86(8.1)	334(4.7)	2,454(6.8)
	애착문제	399(2.9)	432(3.1)	16(1.5)	206(2.9)	1,053(2.9)
정	무력감	278(2.0)	312(2.2)	21(2.0)	147(2.0)	758(2.1)
신	우울	377(2.8)	445(3.2)	33(3.1)	141(2.0)	996(2.8)
건 강	낮은 자아존중감	489(3.6)	534(3.8)	38(3.6)	194(2.7)	1,255(3.5)
4	성격 및 기질문제	387(2.8)	365(2.6)	23(2.2)	124(1.7)	899(2.5)
	탐식 및 결식	113(0.8)	123(0.9)	11(1.0)	168(2.3)	415(1.2)
	소계	4,150(30.4)	4,441(31.7)	289(27.1)	1,905(26.6)	10,785(30,0)
	반항·충동·공격성	826(6.1)	794(5.7)	38(3.6)	235(3.3)	1,893(5.3)
	거짓말	692(5.1)	591(4.2)	18(1.7)	171(2.4)	1,472(4.1)
	도벽	483(3.5)	396(2.8)	14(1.3)	153(2.1)	1,046(2.9)
	가출	595(4.4)	564(4.0)	51(4.8)	173(2.4)	1,383(3.9)
	약물·흡연·음주	544(4.0)	498(3.6)	58(5.4)	121(1.7)	1,221(3.4)
적	성문제	114(0.8)	115(0.8)	64(6.0)	47(0.7)	340(0.9)
T 060	학교 부적응	482(3.5)	474(3.4)	50(4.7)	211(2.9)	1,217(3.4)
	잦은 결석, 무단결과	347(2.5)	364(2.6)	27(2.5)	225(3.1)	963(2.7)
행	늦은 귀가	438(3.2)	384(2.7)	22(2.1)	131(1.8)	975(2.7)
동	학습문제	472(3.5)	470(3.4)	47(4.4)	290(4.0)	1,279(3.6)
	폭력행동	245(1.8)	218(1.6)	13(1.2)	67(0.9)	543(1.5)
	비행집단활동	146(1.1)	132(0.9)	14(1.3)	50(0.7)	342(1.0)
	불건전한 또래관계	265(1.9)	230(1.6)	26(2.4)	70(1.0)	591(1.6)
	대인관계기피	98(0.7)	123(0.9)	6(0.6)	75(1.0)	302(0.8)
	소계	5,747(42.1)	5,353(38.2)	448(42.1)	2,019(28.2)	13,567(37.8)
	신체발달지연	117(0.9)	128(0.9)	6(0.6)	185(2.6)	436(1.2)
НF	언어문제	299(2.2)	329(2.3)	19(1.8)	349(4.9)	996(2.8)
발 달	영양결핍	61(0.4)	90(0.6)	2(0.2)	170(2.4)	323(0,9)
-	대소변문제	96(0.7)	90(0.6)	8(0.8)	101(1.4)	295(0,8)
신	위생문제	250(1.8)	286(2.0)	22(2.1)	715(10.0)	1,273(3.5)
체	틱(음성,신체,뚜렛)	46(0.3)	41(0.3)	2(0.2)	9(0.1)	98(0.3)
건 강	잦은 병치레, 허약	38(0.3)	61(0.4)	3(0.3)	70(1.0)	172(0,5)
0	주요병력	131(1.0)	99(0.7)	11(1.0)	81(1.1)	322(0,9)
	소계	1,038(7.6)	1,124(8.0)	73(6.9)	1,680(23.4)	3,915(10.9)
	특성 없음	2,089(15.3)	2,451(17.5)	171(16.1)	1076(15.0)	5,787(16.1)
	기타	213(1.6)	230(1.6)	19(1.8)	128(1.8)	590(1.6)
	파악안됨	5(0.0)	3(0.0)	0(0.0)	0(0.0)	8(0.0)
	계	13,649(100.0)	14,007(100.0)	1,065(100.0)	7,171(100.0)	35,892(100.0)

※중복포함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20〉과 같이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는 성학대를 제외하고 8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친인척 및 대리양육자, 타인에 의한 학대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방임사례의 경우 부모에게서 발생 하는 비율이 92.3%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1.0%로 절반 정도이며, 타인(18.3%), 대리양육자(11.6%), 친인척(1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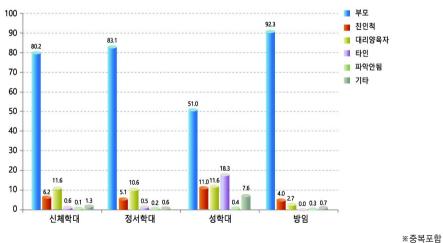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학대유형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 모	4,571(80.2)	5,130(83.1)	228(51.0)	2,894(92.3)	12,823(83.0)
친인척	351(6.2)	314(5.1)	49(11.0)	126(4.0)	840(5.4)
대리양육자	662(11.6)	656(10.6)	52(11.6)	86(2.7)	1,456(9.4)
타 인	37(0.6)	30(0.5)	82(18.3)	1(0.0)	150(1.0)
파악안됨	5(0.1)	11(0.2)	2(0.4)	8(0.3)	26(0,2)
기타	73(1.3)	35(0.6)	34(7.6)	21(0.7)	163(1,1)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4-21〉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에서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성학대에서는 성문제가 다른 특성들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국 학대는 학대 행위자의 개별적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학대유형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적 장애	135(0.8)	145(0.7)	15(1.5)	96(0.9)	391(0,8)
정신적 장애	89(0.5)	103(0.5)	21(2.2)	144(1.3)	357(0.7)
장애의심	147(0.9)	160(0.8)	12(1.2)	181(1.7)	500(1,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6,090(35.4)	6,760(32.9)	239(24.5)	3,505(32.5)	16,594(33.5)
중독문제	1,164(6.8)	1,603(7.8)	67(6.9)	610(5.7)	3,444(7.0)
질환문제	142(0.8)	164(0.8)	9(0.9)	105(1.0)	420(0.8)
성격 및 기질문제	1,436(8.3)	1,700(8.3)	30(3.1)	528(4.9)	3,694(7.5)
위생문제	126(0.7)	174(0.8)	10(1.0)	448(4.2)	758(1.5)
나태 및 무기력	146(0.8)	212(1.0)	7(0.7)	304(2.8)	669(1.4)
난독해, 난작문	18(0.1)	20(0.1)	O(O.O)	19(0.2)	57(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3,302(19.2)	4,043(19.7)	69(7.1)	2,578(23.9)	9,992(20.2)
어릴 적 학대경험	377(2.2)	401(2.0)	8(0.8)	131(1.2)	917(1.9)
폭력성	857(5.0)	1,285(6.3)	62(6.4)	321(3.0)	2,525(5.1)
전과력	74(0.4)	115(0.6)	13(1.3)	51(0.5)	253(0.5)
성문제	77(0.4)	108(0.5)	158(16.2)	58(0.5)	401(0.8)
원치 않는 아동	142(0.8)	163(0.8)	6(0.6)	146(1.4)	457(0.9)
부부 및 가족 갈등	1,650(9.6)	2,304(11.2)	73(7.5)	971(9.0)	4,998(10.1)
종교문제	19(0.1)	38(0.2)	3(0.3)	39(0.4)	99(0.2)
기타	3(0.0)	3(0.0)	O(O.O)	O(O.O)	6(0.0)
특성 없음	1,000(5.8)	866(4.2)	82(8.4)	420(3.9)	2,368(4.8)
파악안됨	221(1.3)	188(0.9)	92(9.4)	130(1.2)	631(1,3)
계	17,215(100,0)	20,555(100.0)	976(100.0)	10,785(100.0)	49,531(100.0)

※중복포함

4 이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10,02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및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 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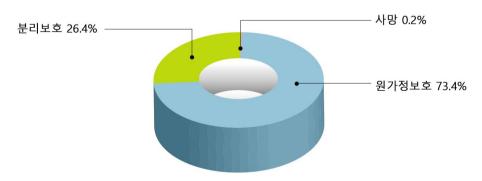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3.4%인 7,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 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26.4%인 2,649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1,377건(13.7%), 친인척보호 732건(7.3%), 장기보호 342건(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건 (1.0%), 병원입원 84건(0.8%), 가정위탁 1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7.3%이고,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경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체 계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이기저		분리보호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계
7,362 (73,4)	732 (7.3)	103 (1.0)	11 (0.1)	1,377 (13.7)	342 (3.4)	84 (0.8)	2.649 (26.4)	16 (0.2)	10.027 (100.0)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단위:%)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2,649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629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5명 중 1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을 위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 및 제36조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수강명령을 통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초기 분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분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2,649	629	2,017

2014년 아동학대사례 중 초기에 분리보호된 2,649건 가운데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629건을 바탕으로 복귀시기를 〈표 424〉와 같이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하 사례가 259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6개월 사이는 143건(22.7%), 1개월~3개월 사이는 138건 (21.9%), 6개월~1년 사이가 89건(14.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후에 가정 으로 복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건, %)

복귀시기	건수(비율)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미만	259 (41.2)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3개월	138 (21.9)
초기 분리보호 후 3개월~6개월	143 (22.7)
초기 분리보호 후 6개월~1년	89 (14.1)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상	0 (0.0)
계	629 (100.0)

(단위:%)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다음으로 〈표 4-25〉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비하여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3.5%, 강원도 33.2%, 대구광역시 3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5.5%였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19.4%를 기록하였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2.81%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초기 분리보호율은 25.5%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은 수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0.53%로 가장 낮은 수치인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후에 신고되어다른 지역보다 초기 분리보호를 해야 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볼 때 초기 분리보호율에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접수되는 사례의 특성 및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기 분리보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단위: %, %)

지 역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서울	0.62	27.6
부산	0.73	19.4
대구	0.82	31.8
인천	0.94	30.7
광주	0.53	33.5
대전	0.95	27.3
울산	1.53	15.5
경기	1.03	23.9
강원	1.39	33.2
충북	1.59	26.8
충남	1.19	23.4
전북	2.81	25.5
전남	2.02	26.5
경북	1.38	29.0
경남	1.20	31.2
제주	2.34	28.8
전국 평균	1,32	27.1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지역 및 기관 원기상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エーオコ				(단위 : 건, %)
서울트설시동부 144(74.2) 49(25.3) 1(0.5) 194(100.0)	지역 및	조치결과 기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사용근병 112(86.1) 50(30.9) (00.0) 182(100.0) 서울 사용면등표 88(8.8) 40(31.3) (00.0) 128(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28(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보스 제 59(12(3.3) 263(27.6) 1(0.1) 954(100.0) 보스 제 171(85.1) 30(14.9) (00.0) 20(11(0.0) 보스 보스 제 145(75.9) 46(24.1) (00.0) 39(100.0) 보스 보스 제 145(75.9) 46(24.1) (00.0) 191(100.0) 보스 보스 제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 보스 제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 보스 제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 보스 대구관역시보 108(62.8) 64(37.2) (00.0) 172(100.0) 인천 보스						
사용성투도 88(68,8) 40(31,3) 0(0,0) 128(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162(1		시골득필시공구 서우간서				162(100.0)
사용성투도 88(68,8) 40(31,3) 0(0,0) 128(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사용비포 109(67,3) 53(32,7) 0(0,0) 162(100,0) 162(1		서울은평				128(100.0)
서울타고 서울 109(67.3) 53(32.7) 0(0.0) 162(100.0)	서 울	서울영등포	88(68.8)	40(31.3)	0(0.0)	128(100.0)
생물동남권"						
표 계 690(72.3) 263(27.6) 10(0.1) 954(100.0) 부산 부산 부산 부산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 147(14.1) 108(0.6) 76(19.4) 0(0.0) 392(100.0) 대구 147(14.1) 108(0.8) 61(25.2) 0(0.0) 190(100.0) 대구 147(14.1) 108(0.8) 61(25.2) 0(0.0) 190(100.0) 다가 147(14.1) 108(0.8) 61(25.2) 0(0.0) 362(100.0) 인천라부보 148(48.4) 15(31.8) 0(0.0) 362(100.0) 인천부부 44(48.4) 47(51.6) 0(0.0) 91(100.0) 소 계 34(3(90.3) 152(30.7) 0(0.0) 386(100.0) 오찬리우속의 108(65.9) 55(33.5) 1(0.6) 164(100.0) 대전 148(24.4) 108(65.9) 55(33.5) 1(0.6) 164(100.0) 대전 148(24.4) 298(23.9) 54(25.5) 2(0.6) 348(100.0) 2천산의수속 176(72.1) 66(27.0) 2(0.8) 244(100.0) 경기도 176(72.1) 66(27.0) 2(0.8) 244(100.0) 경기보험 207(77.8) 59(25.2) 0(0.0) 183(100.0) 경기보험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보험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보험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보험 215(76.2) 67(23.8) 0(0.0) 328(100.0) 2건시급 176(76.2) 67(23.8) 0(0.0) 328(100.0) 2건시급 176(76.2) 67(23.8) 0(0.0) 183(100.0) 경기보험 176(77.3) 48(21.8) 2(0.9) 220(100.0) 경기보험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보험 176(77.3) 43(26.9) 0(0.0) 160(100.0) 경기보험 177(73.1) 43(26.9) 0(0.0) 160(100.0) 경기보험 117(73.1) 43(26.9) 0(0.0) 160(100.0) 경기보험 156(76.0) 597(23.9) 4(0.2) 250(1100.0) 경기보험 156(76.0) 597(23.9) 4(0.2) 250(1100.0) 경기보험 166(76.0) 597(23.9) 4(0.2) 250(1100.0) 경기보험 166(76.0) 597(23.9) 4(0.2) 250(1100.0) 경기보험 166(76.0) 597(23.9) 4(0.2) 250(1100.0) 경기보험 117(75.0) 36(24.3) 110,7) 148(100.0) 경기보험 133(30.0) 33(30.0) 0(0.0) 163(100.0)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00.0)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00.0) 소 계 1900(76.0) 597(25.9) 4(0.2) 250(100.0) 소 계 1900(76.0) 597(25.9) 4(0.2) 250(100.0) 소 계 242(65.5) 121(33.2) 1(0.3) 364(100.0) 중착보로 177(75.0) 36(24.3) 1(0.7) 148(100.0) 소 계 242(65.5) 121(33.2) 1(0.3) 364(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전보로 전라보도 18(6.0) 36(2.0) 56(37.1) 1(0.0) 151(100.0) 소 계 469(73.2) 170(26.5) 2(0.3) 641			109(67.3)	53(32,7)	0(0.0)	162(100.0)
부산 부산동부 145(75.9) 46(24.1) 0(0.0) 20(1(00.0) 부산동부 145(75.9) 46(24.1) 0(0.0) 392(100.0) 대구 30(100.0) 19(1(00.0) 4			690(72.3)	263(27.6)	1(0.1)	954(100.0)
부산 보신통부 145/75.9) 46(24.1) 0(0,0) 191(100.0) 대구원이시 139/73.2) 51(26.8) 0(0,0) 190(100.0) 대구원이시 139/73.2) 51(26.8) 0(0,0) 190(100.0) 교계 172(100.0) 소계 247(68.2) 115(31.8) 0(0.0) 362(100.0) 인천부부 444(8.4) 47(51.6) 0(0.0) 362(100.0) 인천부부 444(8.4) 47(51.6) 0(0.0) 36(100.0) 교후 기상부부 444(8.4) 47(51.6) 0(0.0) 36(100.0) 교후 기상부부 444(8.4) 47(51.6) 0(0.0) 38(100.0) 교후 기상부부 444(8.4) 47(51.6) 0(0.0) 38(100.0) 교후 기상부부 444(8.4) 47(51.6) 0(0.0) 38(100.0) 교후 기상부부부 44(8.4) 47(51.6) 0(0.0) 38(100.0) 교후 기상부부부 47(71.1) 48(21.3) 1(0.6) 495(100.0) 교후 기상부부부 47(71.1) 66(27.0) 2(0.8) 24(100.0) 교환 기상부부 207(77.8) 59(22.2) 0(0.0) 286(100.0) 김기보도 176(72.1) 66(27.0) 2(0.8) 244(100.0) 김기보도 176(72.1) 66(27.0) 2(0.8) 244(100.0) 김기보다 176(72.1) 66(27.0) 2(0.8) 244(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183(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183(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2(0.0) 282(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2(0.0) 282(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183(100.0) 김기보다 176(72.1) 48(21.8) 2(0.0) 22(0.0)		부산광역시				
대구 대구광식시부 108(62.8) 64(37.2) 0(0.0) 19(100.0)	부 산	부산동부	145(75,9)			191(100.0)
대 구 대구관에서남부 108(62.8) 64(37.2) 0(0.0) 172(100.0)		소 계				
변경 247(68.2) 115(31.8) 0(0.0) 362(100.0) 인천명보시 266(72.4) 101(127.6) 0(0.0) 366(100.0) 인천명보시 266(72.4) 4(10.5) 0(0.0) 366(100.0) 11(100.0) 2 11(100.0) 36(1	대구	대구성역시 대구과여시나브				
인천광역시 (265(72.4) (101(27.6) (00.0) (366(10.00) 인천병부 (44(48.4) 47(51.6) (00.0) (31(10.00) (10.	41 1		247(68.2)			
전비 전체(89.3) 4(10.5) 0(0.0) 38(100.0) 과 주 제 34(89.3) 152(30.7) 0(0.0) 495(100.0) 과 주 제공작업시 108(65.9) 55(33.5) 1(0.6) 164(100.0) 대 전 배전관업시 208(72.7) 78(27.3) 0(0.0) 286(100.0) 울 산 울산광업시 202(83.9) 54(15.5) 2(0.6) 348(100.0) 경기보 176(72.1) 6(27.0) 2(0.8) 244(100.0) 경기보부 276(77.8) 59(22.2) 0(0.0) 286(100.0) 경기보험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보험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보험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보험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보험 17(77.3) 48(21.8) 2(0.9) 220(100.0) 경기보험 17(77.3) 48(21.8) 0(0.0) 324(100.0) 경기보험 17(77.3) 48(21.8) 0(0.0) 180(100.0) 경기보험 17(77.3) 48(21.8) 0(0.0) 180(100.0) 경기보험 17(77.3) 48(21.8) 0(0.0) 180(100.0) 경기보험 117(73.1) 43(26.9) 0(0.0) 180(100.0) 경기보험 117(73.1) 43(26.9) 0(0.0) 180(100.0) 경기보험 15(66.5) 60(35.5) 0(0.0) 189(100.0) 경기사용 165(76.0) 52(24.0) 0(0.0) 130(100.0) 경기사용 165(76.0) 52(24.0) 0(0.0) 130(100.0)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천토부 57(55.3) 46(44.7) 0(0.0) 133(100.0) 2천토부 111(75.0) 36(24.3) 1(0.7) 148(100.0) 2천토부 111(75.0) 36(24.3) 1(0.7) 148(100.0) 소 계 242(66.5) 121(33.2) 1(0.3) 384(100.0) 소 계 242(66.5) 121(33.2) 1(0.3) 384(100.0) 충천보로 183(8.0) 86(32.0) 0(0.0) 289(100.0) 충천보로 183(8.0) 86(32.0) 0(0.0) 289(100.0) 충천보로 183(8.0) 86(32.0) 0(0.0) 289(100.0) 충천보로 183(8.0) 86(32.0) 0(0.0) 384(100.0) 소 계 333(73.2) 12(26.8) 0(0.0) 455(100.0) 충천보로 183(8.0) 86(32.0) 0(0.0) 185(100.0) 소 계 369(76.4) 131(26.0) 0(0.0) 185(100.0) 소 계 369(76.4) 131(26.0) 0(0.0) 185(100.0) 소 계 369(76.4) 131(26.0) 0(0.0) 185(100.0) 소 계 369(76.4) 131(28.8) 0(0.0) 455(100.0) 소 계 489(78.2) 12(26.8) 0(0.0) 185(100.0) 소 계 369(76.4) 13(26.6) 0(0.0) 185(100.0) 소 계 469(70.2) 288(25.5) 0(0.0) 186(100.0) 전 보내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보		이처과여시	265(72.4)	101(27.6)	0(0.0)	366(100.0)
변한 등 전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이 처	인천북부				
광주 광주관에서 108(65.9) 55(33.5) 1(0.6) 184(100.0)		인선비수올 . 게		4(10.5)		
대전 대전관역시 208(72.7) 78(27.3) 0(0.0) 286(100.0) 을 산 울산광역시 29(283.9) 54(15.5) 2(0.6) 348(100.0) 경기토부 176(72.1) 66(27.0) 2(0.8) 244(100.0) 경기토부 207(77.8) 59(22.2) 0(0.0) 183(100.0) 경기보험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과당 170(77.3) 48(21.8) 2(0.9) 220(100.0) 34(100.0) 경기과당 273(79.4) 71(20.6) 0(0.0) 344(100.0) 34(100.0) 21/12 11/17(73.1) 43(26.9) 0(0.0) 180(100.0) 222(100.0) 37(12) 11/17(73.1) 43(26.9) 0(0.0) 180(100.0) 21/12 11/12	 광 주			55(33.5)		
울산 울산광역시 292(83.9) 54(15.5) 2(0.6) 348(100.0) 경기복부 207(77.8) 59(22.2) 0(0.0) 26(100.0) 경기복부 207(77.8) 59(22.2) 0(0.0) 26(100.0) 경기복부 105(77.3) 48(26.2) 0(0.0) 183(100.0) 경기부처 135(37.8) 48(26.2) 0(0.0) 183(100.0) 경기보험 170(77.3) 48(21.8) 2(0.9) 220(100.0) 34(410.0) 경기보험 215(76.2) 67(23.8) 0(0.0) 282(100.0) 34(410.0) 311남암주 117(73.1) 43(26.9) 0(0.0) 160(100.0) 32(11년양주 117(73.1) 43(26.9) 0(0.0) 416(100.0) 34(410.0) 32(18.0) 116(100.0) 34(410.0) 32(18.0) 116(100.0) 34(100.0) 32(18.0) 19(64.5) 60(35.5) 0(0.0) 169(100.0) 32(11.8) 168(76.0) 52(24.0) 0(0.0) 217(100.0) 32(11.8) 168(76.0) 52(24.0) 0(0.0) 217(100.0) 32(11.8) 168(76.0) 59(23.9) 4(0.2) 2,501(100.0) 32(11.8) 168(76.0) 59(23.9) 4(0.2) 2,501(100.0) 32(11.8) 111(75.0) 36(24.3) 1(0.77) 148(100.0) 32(11.8) 32	대 전	대전광역시				
경기복부 207(77.8) 59(22.2) 0(0.0) 266(100.0) 경기심남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교망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교망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부정 215(76.2) 67(23.8) 0(0.0) 282(100.0) 344(100.0) 271남양주 117(73.1) 43(26.9) 0(0.0) 160(100.0) 217남양주 117(73.1) 43(26.9) 0(0.0) 416(100.0) 217남양구 119(3.1) 43(26.9) 0(0.0) 416(100.0) 37(8)인 109(64.5) 60(35.5) 0(0.0) 169(100.0) 217(100.0) 4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4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7원도 57(55.3) 46(44.7) 0(0.0) 103(100.0) 27원도 57(55.3) 46(44.7) 0(0.0) 103(100.0) 4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888(100.0) 888(100.0) 888(100.0) 888	울 산	울산광역시	292(83.9)	54(15.5)	2(0.6)	348(100.0)
경기성남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보암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부천 273(79.4) 71(20.6) 0(0.0) 344(100.0) 341(1						
경기교양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부천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부정 215(76.2) 67(23.8) 0(0.0) 184(100.0) 282(100.0) 271남양주 117(73.1) 43(26.9) 0(0.0) 160(100.0) 282(100.0) 271남양주 117(73.1) 43(26.9) 0(0.0) 160(100.0) 282(100.0) 271남양주 119(64.5) 60(35.5) 0(0.0) 169(100.0) 371시흥 165(76.0) 52(24.0) 0(0.0) 217(100.0) 4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185 57(55.3) 46(44.7) 0(0.0) 103(100.0) 2185 74(65.5) 39(34.5) 0(0.0) 113(100.0) 24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254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254 부 82(78.1) 23(31.9) 0(0.0) 105(100.0) 254 부 82(78.1) 23(31.9) 0(0.0) 105(100.0) 254 계 333(73.2) 122(26.8) 0(0.0) 455(100.0) 254 부 82(78.1) 23(21.9) 0(0.0) 455(100.0) 254 부 82(78.1) 23(20.0) 32(20.0) 0(0.0) 455(100.0) 254 부 31(83.8) 6(16.2) 0(0.0) 455(100.0) 254 부 31(83.8) 6(16.2) 0(0.0) 165(100.0) 254 1 31(83.8) 6(16.2) 0(0.0) 165(100.0) 254 1 31(83.8) 6(16.2) 0(0.0) 165(100.0) 254 1 31(83.8) 6(16.2) 0(0.0) 165(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83.8) 6(16.2) 0(0.0) 154(100.0) 254 1 31(100.0) 254 1 3		성기국무 경기서나				
경기부청 273(79.4) 71(20.6) 0(0.0) 344(100.0) 경기화성 215(76.2) 67(23.8) 0(0.0) 282(100.0) 입기하상 2117(73.1) 43(26.9) 0(0.0) 160(100.0) 안산시 333(80.0) 83(20.0) 0(0.0) 416(100.0) 감기유인 109(64.5) 60(35.5) 0(0.0) 169(100.0) 경기유인 109(64.5) 60(35.5) 0(0.0) 217(100.0) 전기유흥 165(76.0) 52(24.0) 0(0.0) 217(100.0) 27년도 57(55.3) 46(44.7) 0(0.0) 103(100.0) 27년도 57(55.3) 46(44.7) 0(0.0) 103(100.0) 27년도 57(55.3) 46(44.7) 0(0.0) 103(100.0) 27년도 111(75.0) 36(24.3) 1(0.7) 148(100.0) 24년지 74(65.5) 39(34.5) 0(0.0) 113(100.0) 26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경기 경임				
경기타양주 117(73.1) 43(26.9) 0(0.0) 180(100.0) 안난시 33(80.0) 83(20.0) 0(0.0) 160(100.0) 안난시 33(80.0) 83(20.0) 0(0.0) 160(100.0) 217(100.0) 경기당인 109(64.5) 60(35.5) 0(0.0) 169(100.0) 217(100.0) 소계 1,900(76.0) 52(24.0) 0(0.0) 217(100.0) 217(100.0) 소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5전도 7(55.3) 46(44.7) 0(0.0) 103(100.0) 25전도부 111(75.0) 36(24.3) 1(0.7) 148(100.0) 25전도부 111(75.0) 36(24.3) 1(0.7) 148(100.0) 25전도부 111(75.0) 36(24.3) 1(0.7) 148(100.0) 25전도부 118(368.0) 86(32.0) 0(0.0) 113(100.0) 288(100		경기부천				
경기용인 109(64.5) 60(35.5) 0(0.0) 189(100.0) 217(100.0) 4 계 1,900(76.0) 52(24.0) 0(0.0) 217(100.0) 4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18(100.0)	경 기	경기화성		67(23.8)		
경기용인 109(64.5) 60(35.5) 0(0.0) 189(100.0) 217(100.0) 4 계 1,900(76.0) 52(24.0) 0(0.0) 217(100.0) 4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218(100.0)		경기남양주				
경기시흥 165(76,0) 52(24,0) 0(0,0) 217(100,0) 쇼 계 1,900(76,0) 597(29,9) 4(0,2) 2,501(100,0) 강원도부 57(55,3) 46(44,7) 0(0,0) 103(100,0) 강원도부 111(75,0) 36(24,3) 1(0,7) 148(100,0) 원주시 74(65,5) 39(34,5) 0(0,0) 113(100,0) 쇼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충청북도 183(68,0) 86(32,0) 0(0,0) 269(100,0) 충북부부 68(78,1) 23(21,9) 0(0,0) 105(100,0) 쇼 계 333(73,2) 12(26,8) 0(0,0) 455(100,0) 쇼 계 333(73,2) 12(26,8) 0(0,0) 455(100,0) 충청남도 206(73,3) 74(26,3) 1(0,4) 225(1(0,0) 충청남도 132(80,0) 33(20,0) 0(0,0) 455(100,0) 충청남도 132(80,0) 33(20,0) 0(0,0) 455(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08(100,0)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08(100,0) 전라북도 123(79,9) 31(20,1) 0(0,0) 154(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3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332(100,0) 전라남도 188(69,4) 32(14,6) 1(0,5) 219(100,0) 소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북남부 118(63,4) 88(36,6) 0(0,0) 126(100,0) 소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소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소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전라남도 335(66,6) 168(33,4) 0(0,0) 749(100,0) 소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지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시주목보자의 93(85,3) 16(14,7) 0(0,0) 179(100,0) 시주목보자의 93(85,3) 16(14,7) 0(0,0) 129(100,0) 소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소 계 75(100,0) 288(100,0)		인산시 경기요이				
상원도 57(55.3) 46(44.7) 0(0.0) 103(100.0) 강원도 57(55.3) 46(44.7) 0(0.0) 103(100.0) 강원동부 1111(75.0) 36(24.3) 1(0.7) 148(100.0) 원주시 74(65.5) 39(34.5) 0(0.0) 113(100.0) 쇼 계 242(66.5) 121(33.2) 10(3) 384(100.0) 충청북도 183(68.0) 86(32.0) 0(0.0) 269(100.0) 충북부부 82(78.1) 23(21.9) 0(0.0) 105(100.0) 쇼 계 333(73.2) 12(26.8) 0(0.0) 455(100.0) 쇼 계 333(73.2) 122(26.8) 0(0.0) 455(100.0) 초청남도 206(73.3) 74(26.3) 1(0.4) 281(100.0) 충청남도 132(80.0) 33(20.0) 0(0.0) 165(100.0) 충청남도나남 132(80.0) 33(20.0) 0(0.0) 37(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86(100.0) 전라북도부 123(79.9) 31(20.1) 0(0.0) 488(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3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39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소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북북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북북부 118(63.4) 68(36.6) 0(0.0) 186(100.0) 경북북부 118(63.4) 68(36.6) 0(0.0) 186(100.0) 경북부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쇼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전라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전라남도 335(66.6) 168(33.4) 0(0.0) 179(100.0) 지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시구도시 33(28.8) 0(0.0) 288(100.0)		경기시흥				
강원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용 년 원주시 74(65.5) 39(34.5) 0(0.0) 113(100.0)		강원도				
소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강 원	강편공무 위즈시	74(65.5)			
충북		소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중 북남부 68(84.0) 13(16.0) 0(0.0) 81(100.0)		충청북도		86(32.0)		
소 계 333(73.2) 122(26.8) 0(0.0) 455(100.0) 충청남도 206(73.3) 74(26.3) 1(0.4) 281(100.0) 충청남도라부 132(80.0) 33(20.0) 0(0.0) 165(100.0) 충청남도서부 31(83.8) 6(16.2) 0(0.0) 37(100.0) 소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98(100.0) 전라북도서부 269(72.7) 99(26.8) 2(0.5) 370(100.0) 전라북도자부 123(79.9) 31(20.1) 0(0.0) 154(100.0) 소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소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소계 469(73.2) 170(26.5) 2(0.2) 932(100.0) 경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td>충 북</td> <td>중묵묵부</td> <td></td> <td></td> <td></td> <td></td>	충 북	중묵묵부				
충청남도 206(73,3) 74(26,3) 1(0,4) 281(100,0) 충청남도남부 132(80,0) 33(20,0) 0(0,0) 165(100,0) 4 31(83,8) 6(16,2) 0(0,0) 37(100,0)						81(100,0) 455(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132(80.0) 33(20.0) 0(0.0) 165(100.0) 37(100.0) 4 31(83.8) 6(16.2) 0(0.0) 37(100.0) 37(100.0) 4 368(15.4) 113(23.4) 1(0.2) 483(100.0) 4 48			206(73.3)			
조심지(100.0)	츠 나	충청남도남부	132(80.0)	33(20.0)	0(0.0)	165(100.0)
전 북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08(100.0) 전라북도서부 269(72.7) 99(26.8) 2(0.5) 370(100.0) 154(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151(100.0) 전라남도처부권 95(62.9) 56(37.1) 0(0.0) 151(100.0) 219(100.0) 소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24 부부 80(63.5) 46(36.5) 0(0.0) 126(100.0) 23 북북부 128(78.0) 36(22.0) 0(0.0) 164(100.0) 23 북서부 118(63.4) 68(36.6) 0(0.0) 186(100.0) 23 大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24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26 남서부 180(73.2) 66(26.8) 0(0.0) 503(100.0) 246(100.0) 3 (20.3) 3 (21.4) 2(1.5) 137(100.0) 25 (20.3) 3 (21.4) 2(1.5) 137(100.0) 25 (20.3) 3 (21.4) 2(1.5) 137(100.0) 25 (20.3) 26 (20.3)	0 0	충청남도서부				
전 북 전라북도서부 269(72.7) 99(26.8) 2(0.5) 370(100.0) 전라북도동부 123(79.9) 31(20.1) 0(0.0) 154(100.0) 4 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전라남도저부권 95(62.9) 56(37.1) 0(0.0) 151(100.0) 4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23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23북남부 128(78.0) 36(22.0) 0(0.0) 164(100.0) 23북서부 118(63.4) 68(36.6) 0(0.0) 164(100.0) 23북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24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23 성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246(100.0) 246(100.0) 246(100.0) 4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179(100.0) 4 계 515(68.8) 234(31.2) 0(0.0) 179(100.0) 4 계 514(100.0) 246(100.0) 4 계 93(85.3) 16(14.7) 0(0.0) 109(100.0) 4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전북도동부 123(79.9) 31(20.1) 0(0.0) 154(100.0)	-J -L	전라북도서부				
소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전라남도서부권 95(62.9) 56(37.1) 0(0.0) 151(100.0) 전라남도중부권 186(84.9) 32(14.6) 1(0.5) 219(100.0) 소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복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복남부 128(78.0) 36(22.0) 0(0.0) 164(100.0) 경복당부 118(63.4) 68(36.6) 0(0.0) 186(100.0) 경복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소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246(100.0) 전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소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288(100.0) 소계 205(71.2) 83(28.8) 0(0.0) 288(100.0)	선 묵	전라북도동부	123(79.9)	31(20.1)	0(0.0)	154(100.0)
전 남 전라남도서부권 186(84.9) 32(14.6) 1(0.5) 219(100.0) 4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복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36(22.0) 0(0.0) 126(100.0) 36(22.0) 0(0.0) 164(100.0) 36(22				238(25.5)		932(100.0)
전라남도중부권 186(84.9) 32(14.6) 1(0.5) 219(100.0)		선라남노 정과나도서브귀				2/1(100.0)
소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복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복부부 128(78.0) 36(22.0) 0(0.0) 164(100.0) 경복동부 118(63.4) 68(36.6) 0(0.0) 186(100.0) 경복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소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소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288(100.0)	전 남					
경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북북부 128(78.0) 36(22.0) 0(0.0) 164(100.0) 36(25.0) 0(0.0) 164(100.0) 36(25.0)		소 계				
경복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쇼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쇼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세 주 서규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쇼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경북남분			0(0.0)	
경복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쇼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쇼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세 주 서규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쇼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겨 ㅂ	경묵묵무 경보도비				
소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소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세 주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계 205(71.2) 83(28.8) 0(0.0) 288(100.0)	성 푹	(영국농구 경보서부			2(1.5)	137(100.0)
경남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소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4 개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소 계				
소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세 주 서고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_, .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제 주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제 주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계 205(71.2) 83(28.8) 0(0.0) 288(100.0)	경 남					
제 주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u>소</u> 계 제주트병자되도				
소계 205(71.2) 83(28.8) 0(0.0) 288(100.0)	제 주	시마 크 시시포 서귀포시				
계 7,362(73.4) 2,649(26.4) 16(0.2) 10,027(100.0)		소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계	7.362(73.4)	2,649(26,4)	16(0.2)	10.027(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를 〈표 4-27〉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초기조치는 원가정보호로 각각 73.3%, 73.1%, 68.1%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9%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족보존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 학대유발 요인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재학대의 위험은 늘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재학대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표 4-27〉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학대유형 초기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4,176(73.3)	4,513(73.1)	223(49.9)	2,135(68.1)	11,047(71.5)
	친족보호	479(8.4)	504(8.2)	29(6.5)	199(6.3)	1,211(7.8)
	연고자에 의한 보호	57(1.0)	76(1.2)	6(1.3)	36(1.1)	175(1.1)
	가정위탁	4(0.1)	3(0.0)	O(O.O)	7(0.2)	14(0.1)
분리 보호	일시보호	776(13.6)	841(13.6)	145(32.4)	526(16.8)	2,288(14.8)
포오	장기보호	160(2.8)	200(3.2)	39(8.7)	174(5.5)	573(3,7)
	병원입원	35(0.6)	35(0.6)	5(1.1)	52(1.7)	127(0.8)
	소계	1,511(26.5)	1,659(26.9)	224(50.1)	994(31.7)	4,388(28,4)
사 망		12(0.2)	4(0.1)	O(O.O)	7(0.2)	23(0,1)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란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4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표 428〉을 통해 201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부류하여 살펴 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 비중은 0%~66.9%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진행중인 사례의 경우 33.1%~100.0%의 범위를 보였다.

2014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건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7,661건(76,4%)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종결여부 지역 및 기관		사례종결	진행중	계
	서울특별시	1(1.8)	56(98.2)	57(100.0)
	서울특별시동부	38(19.6)	156(80.4)	194(100.0)
	서울강서	40(24.7)	122(75.3)	162(100,0)
	서울은평	19(14.8)	109(85.2)	128(100.0)
서 울	서울영등포	22(17.2)	106(82.8)	128(100.0)
	서울성북	20(16.3)	103(83.7)	123(100.0)
	서울마포	93(57.4)	69(42.6)	162(100.0)
	서울동남권*	_	_	_
	소 계	233(24.4)	721(75.6)	954(100.0)
	부산광역시	10(5.0)	191(95.0)	201(100.0)
부 산	부산동부	5(2.6)	186(97.4)	191(100.0)
	소 계	15(3.8)	377(96.2)	392(100.0)
	대구광역시	100(52.6)	90(47.4)	190(100.0)
대 구	대구광역시남부	77(44.8)	95(55.2)	172(100.0)
	소계	177(48.9)	185(51.1)	362(100.0)

(계속)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단위 : 건, %)

	— -1-11			(인위 · 신, 7
지역 및 기	종결여부 과	사례종결	진행중	계
	인천광역시	144(39.3)	222(60.7)	366(100.0)
	인천북부	21(23.1)	70(76.9)	91(100.0)
인 천	인천미추홀	5(13.2)	33(86.8)	38(100,0)
	소 계	170(34.3)	325(65.7)	495(100,0)
광 주	광주광역시	70(42.7)	94(57.3)	164(100.0)
<u> </u>	대전광역시	23(8,0)	263(92.0)	286(100,0)
 울 산	울산광역시	82(23.6)	266(76.4)	348(100,0)
	경기도	19(7,8)	225(92.2)	244(100.0)
	경기북부	11(4.1)	255(95.9)	266(100,0)
	경기성남	1 1(6.0)	172(94.0)	183(100,0)
	경기고양	86(39.1)	134(60.9)	220(100,0)
	경기부천	175(50.9)	169(49.1)	344(100,0)
경 기	경기화성	23(8.2)	259(91.8)	282(100,0)
0 1	경기남양주	107(66.9)	53(33.1)	160(100,0)
	안산시	125(30.0)	291(70.0)	416(100.0)
	경기용인	53(31.4)	116(68.6)	169(100,0)
	경기시흥	38(17.5)	179(82,5)	217(100.0)
	소계	648(25.9)	1,853(74.1)	2,501(100,0)
	강원도	21(20.4)	82(79.6)	103(100.0)
	강원동부	17(11.5)	131(88.5)	148(100,0)
강 원	원주시	19(16.8)	94(83.2)	113(100.0)
	소 계	57(15.7)	307(84.3)	364(100.0)
	충청북도	41(15.2)	228(84.8)	269(100.0)
	충북북부	4(3,8)	101(96.2)	105(100.0)
충 북	충북남부	11(13.6)	70(86.4)	81(100.0)
	소 계	56(12.3)	399(87.7)	455(100,0)
	충청남도	65(23.1)	216(76.9)	281(100,0)
	충청남도남부	27(16.4)	138(83,6)	165(100,0)
충 남	충청남도서부*	0(0.0)	37(100.0)	37(100,0)
	소계	92(19.0)	391(81.0)	483(100,0)
	전라북도	58(14.2)	350(85.8)	408(100,0)
	전라북도서부	79(21.4)	291(78.6)	370(100,0)
전 북	전라북도동부	16(10.4)	138(89.6)	154(100,0)
	소계	153(16.4)	779(83.6)	932(100,0)
	전라남도	112(41.3)	159(58.7)	271(100.0)
	전라남도서부권	48(31.8)	103(68.2)	151(100.0)
전 남	전라남도중부권	9(4.1)	210(95.9)	219(100.0)
	소계	169(26.4)	472(73,6)	641(100.0)
	경북남부	66(52.4)	60(47.6)	126(100,0)
	경북북부	75(45.7)	89(54.3)	164(100.0)
경 북**	경북동부	93(50.0)	93(50.0)	186(100,0)
0 4	경북서부	38(27.7)	99(72.3)	137(100.0)
	소계	272(44.4)	341(55.6)	613(100.0)
	경상남도	72(14.3)	431(85,7)	503(100.0)
경 남	경남서부	24(9.8)	222(90.2)	246(100,0)
	소 계	96(12.8)	653(87,2)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38(21.2)	141(78,8)	179(100.0)
제 주	서귀포시	15(13.8)	94(86.2)	109(100.0)
△II ⊤	소 계	53(18.4)	235(81.6)	288(100.0)
	<u>고</u> 계	2,366(23.6)	7,661(76.4)	10,027(100.0)
	/1	ک,نان(کا,ن) 	7,001(70,4)	10,027(100,0)

^{*}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8월 1일 신규 개소하였으므로 현재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복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014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027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6.666건(66.5%)을 기록하였는데, 초기 조치 시 워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71.5%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이는 계속 원가정에 보호되지 못한 아동들은 학대 위험으로 추후에 분리보호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분리보호된 사례가 2.610건(26.0%)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친족(친인척) 보호 924건(9.2%), 장기보호 891건(8.9%), 일시보호 614건(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3건(0.7%), 가정위탁 56건(0.6%), 병원입원 52건 (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분리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는 734건(7.3%)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는 17건 (7.3%)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9.8%였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5.9%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22.9%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진행 중인 사례보다 약 15%가 상승한 36.0%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단위: 건.%)

T-174-	ት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조치결과 종결여부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사망	가정 복귀	계
진행 중 사례	5,344(69.8)	622 (8.1)	57 (0.7)	25 (0.3)	536 (7.0)	476 (6.2)	42 (0.5)	1,758(22.9)	8 (0.1)	551 (7.2)	7,661 (100,0)
종결사례	1,322(55.9)	302(12,8)	16 (0.7)	31 (1.3)	78 (3.3)	415(17.5)	10 (0.4)	852(36.0)	9 (0.4)	183 (7.7)	2,366(100,0)
계	6,666(66,5)	924 (9.2)	73 (0.7)	56 (0.6)	614 (6.1)	891 (8.9)	52 (0.5)	2,610(26.0)	17 (0.2)	734 (7.3)	10,027(100,0)

(단위:%)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4·30〉과 같이 살펴보았다. 초기조치결과와 동일하게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례유형 특성상 성학대 사례는 분리보호율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19.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임사례에서는 분리보호 유형 중 다른 유형보다 장기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방임사례의 학대행위자의 변화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유형 조치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3,875(68.0)	4,096(66.3)	196(43.8)	1,802(57.5)	9,969(64.5)
	친족보호	585(10.3)	645(10.4)	52(11.6)	257(8.2)	1,539(10,0)
	연고자에 의한 보호	45(0.8)	51(0.8)	8(1.8)	14(0.4)	118(0.8)
	가정위탁	19(0.3)	24(0.4)	1(0.2)	37(1.2)	81(0.5)
분리 보호	일시보호	310(5.4)	360(5.8)	62(13.9)	249(7.9)	981(6.3)
	장기보호	375(6.6)	484(7.8)	85(19.0)	508(16.2)	1,452(9.4)
	병원입원	34(0.6)	31(0.5)	3(0.7)	17(0.5)	85(0.5)
	소계	1,368(24.0)	1,595(25.8)	211(47.2)	1,082(34.5)	4,256(27.5)
사 망		13(0,2)	5(0.1)	0(0.0)	7(0.2)	25(0.2)
	가정복귀	443(7.8)	480(7.8)	40(8.9)	245(7.8)	1,208(7.8)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중복포함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 아동에게 숙식 뿐 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현황은 〈표 4-31〉과 같이 전국 총 35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운영 중이며, 상근 보육사는 84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명이고,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4명이였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사와 임상 심리치료전문인력을 각각 1명 충원할 수 있게 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와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단위: 개소, 명)

-1 ~	ALEL A		프리랜서			
지 역	쉼터 수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소 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서울	0	0	0	0	0	
부산	2	6	0	6	14	
대구	1	2	0	2	0	
인천	0	0	0	0	0	
광주	1	2	0	2	0	
대전	1	2	0	2	0	
울산	1	3	0	3	0	
경기	8	18	1	19	2	
강원	3	6	0	6	2	
충북	5	12	1	13	0	
충남	1	2	0	2	2	
전북	3	8	0	8	2	
전남	3	6	0	6	2	
경북	2	5	0	5	0	
경남	2	8	0	8	0	
제주	2	4	0	4	0	
<u>계</u>	35	84	2	86	24	

^{* 2014}년 12월 31일 기준

① 2014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표 4-32)와 같이 2014년에는 전국에 총 3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970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4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15.2%인 147명이었고, 2014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23명(84.8%)이었다.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14년 이전 입소아동	2014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147(15.2)	823(84.8)	970(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을 〈표 4-33〉과 같이 살펴보면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0명 중 퇴소한 아동은 86.5%인 839명이었고, 2014년도에 퇴소하지 않고 2015년 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31명(13.5%)이었다.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839(86.5)	131(13.5)	97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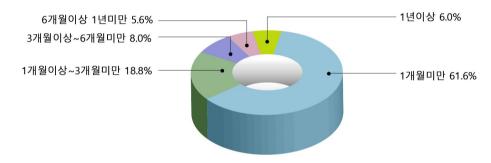
② 2014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839명을 대상으로 〈표 434〉와 같이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대 피해상황과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아동은 전체의 61.6%에 해당하는 517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58명(18.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7명(8.0%), 1년 이상 50명(6.0%), 6개월 이상~1년 미만 47명(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517(61.6)
1개월 이상 \sim 3개월 미만	158(18.8)
3개월 이상 \sim 6개월 미만	67(8.0)
6 개월 이상 \sim 1년 미만	47(5.6)
1년 이상	50(6.0)
계	839(100.0)



〈그림 4-23〉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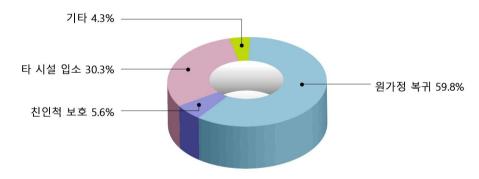
③ 2014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4년에 학대피해이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839명을 대상으로 〈표 435〉와 같이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학대 위험 상황이 제거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타 시설 입소는 252명(30.3%)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나 장애, 영유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있다. 친인척 보호와 기타는 각각 47명(5.6%), 37명(4.3%)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표 4-35〉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503(59.8)
친인척 보호	47(5.6)
타 시설 입소	252(30.3)
기타	37(4,3)
	839(100,0)



〈그림 4-24〉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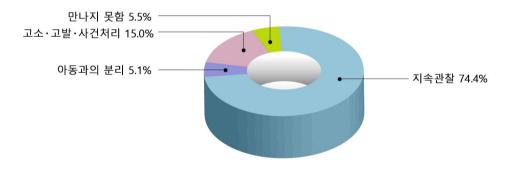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4-36〉과 같이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2014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7,461건(74,4%) 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속관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고소·고발· 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1,508건(15,0%)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소 및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는 1.188건이고, 사건처리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 집계되었으며 그 건수 는 320건이다. 이외에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550건(5.5%)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 입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분리된 사례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7,461(74.4)	508(5.1)	1,508(15.0)	550(5.5)	10,027(100.0)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7》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70% 이상인 반면, 성학대 사례의 경우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63.8%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신체학대에서 16.7%, 정서학대에서 14.0%, 방임에서 9.9%로 작년에 3~8%에 불과하던 비율이 약 두 배씩 상승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개시가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후 고소·고발·사건처리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4-37〉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학대유형 조치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4,234(74.3)	4,643(75.2)	113(25.3)	2,469(78.7)	11,459(74.1)
고소·고발·사건처리	949(16.7)	866(14.0)	285(63.8)	311(9.9)	2,411(15,6)
아동과의 분리	290(5.1)	351(5.7)	10(2.2)	138(4.4)	789(5,1)
만나지 못함	226(4.0)	316(5.1)	39(8.7)	218(7.0)	799(5,2)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4-26〉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10,027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1,188건으로 전체의 11.8%에 해당한다*.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 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1.188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327건(27.5%)으로 파악 되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28건(19.2%), 내사종결된 사례는 98건(8.2%), 아 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1건(0.1%)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293건(24.7%), 불기소된 사례는 176건(14.8%), 아동보호송치사건은 17건(1.4%), 형사기소는 4건(0.3%)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103건(8,7%)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77건(6.5%), 항소심(2심)이 진행중인 사례는 17건(1.4%),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 례는 9건(0.8%)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례가 920건으로 전체 고소·고발 사례의 77.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사례가 4분 기에 집중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고소·고발되어 1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판결을 선고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사례에서 아동을 신속하 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인지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67건으로 전체의 22.5%에 해당한다. 이 중 보안처분 사례는 89건(7.5%), 형사처분 사례가 137건(11.5%),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집행된 사례가 41건 (3.5%)으로 집계되었다. 보안처분 중에서 상담위탁이 21건(1.8%)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 19건(1.6%), 사회봉사 18건(1.5%) 순으로 높았다. 형사처분 중에서는 징역형이 69건(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금형이 49건(4.1%)이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집행된 사례 중에서는 징역과 수강명령이 함께 집행된 사례가 15건(1.3%)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아동과의 보호관계 회복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도입이 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보안처분의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 예측되고, 학대행위 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처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해당 분석은 학대행위자의 고소 및 고발 조치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의 1,508건 중 사건처리 조치 320건을 제외한 1,188 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함.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근用·건, /0)			
	구 분	분	건수(비율)			
		수사중	228(19.2)			
겨차스사		내사종결	98(8,2)			
OETA	할수사 이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등보호송치사건	1(0.1)			
	형사기소 소계 1심 진행 항소심 진행 상고심 진행 소계 접근 전기통신이원 사 보안처분 보	소계	327(27.5)			
		수사중	293(24.7)			
		불기소	176(14.8)			
검찰수사	아동	등보호송치사건	17(1.4)			
		형사기소	4(0.3)			
		소계	490(41.2)			
		1심 진행	77(6.5)			
재파지해주	7	항소심 진행	17(1.4)			
재판진행중		상고심 진행	9(0.8)			
		소계	103(8.7)			
		접근행위제한	6(0.5)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O(O.O)			
		사회봉사	18(1.5)			
	무아되므	수강명령	16(1.3)			
	모던지문	보호관찰	19(1.6)			
		상담위탁	21(1.8)			
		치료위탁	1(0.1)			
		기타	8(0.7)			
		소계	89(7.5)			
		무죄	7(0.6)			
		징역	69(5.8)			
	형사처분	벌금	49(4.1)			
판결		집행유예	12(1.0)			
		선고유예	O(O.O)			
		소계	137(11.5)			
		벌금+상담위탁	1(0.1)			
		벌금+수강명령	1(0.1)			
		집행유예+수강명령	2(0.2)			
	H 중 된 단 : 청 나 된 단	징역+기타	4(0.3)			
	모오서군+영시서군	징역+보호관찰	4(0.3)			
		징역+사회봉사	6(0.5)			
		징역+수강명령	15(1.3)			
		징역+접근행위제한	1(0.1)			
		기타	7(0.6)			
		소계	41(3.5)			
	파악인		1(0.1)			
	계		1,188 (100,0)			

고소 · 고발된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표 4-39)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 · 고 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총 6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171건, 성학대 160건, 정서학대 131건, 방임 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428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 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79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15.2%, 9.9%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았고, 정서학대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4.6%, 3.8%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각각 11.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도 형사처벌이 10.6%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중복학 대의 경우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11.1%, 10.5%로 나타났다.

〈표 4-39〉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거 %)

	고소·고발 결과						판	결				위 : 건, %)
유형	TTT5 5H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보안처분	형사처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무죄	기타	소 계	파악 안됨	계
	신체학대	59(34,5)	51 (29.8)	13(7.6)	17(9,9)	26(15,2)	2(1,2)	2(1,2)	1(0,6)	48(28,1)	O(0,0)	171(100.0)
	정서학대	27(20,6)	77(58,8)	15(11.5)	5(3.8)	6(4.6)	0(0,0)	1(0.8)	0(0,0)	12(9,2)	0(0,0)	131(100.0)
	성학대	34(21.3)	62(38,8)	25(15,6)	1(0,6)	18(11.3)	18(11.3)	0(0,0)	2(1,3)	39(24.4)	0(0,0)	160(100,0)
	방 임	45(43,3)	41 (39.4)	4(3,8)	1(1.0)	11(10,6)	1(1.0)	0(0,0)	1(1,0)	14(13,5)	0(0,0)	104(100,0)
	신체·정서	123(28,7)	175(40.9)	29(6,8)	51(11.9)	42(9.8)	3(0,7)	1(0,2)	3(0.7)	100(23,4)	1(0,2)	428(100,0)
	신체·성	2(18,2)	2(18.2)	5(45,5)	0(0,0)	1(9.1)	0(0,0)	1(9,1)	0(0,0)	2(18,2)	0(0,0)	11(100,0)
	신체·방임	3(16,7)	10(55.6)	0(0,0)	4(22,2)	1(5,6)	0(0.0)	0(0,0)	0(0,0)	5(27,8)	0(0,0)	18(100,0)
	정서·성	5(25,0)	7(35.0)	0(0,0)	1(5,0)	5(25,0)	2(10,0)	0(0,0)	0(0,0)	8(40.0)	0(0,0)	20(100,0)
	정서·방임	7(30,4)	14(60.9)	1(4,3)	0(0,0)	0(0,0)	1(4,3)	0(0,0)	0(0,0)	1(4.3)	0(0,0)	23(100,0)
중 복	성·방임	0,00	1 (50,0)	0(0,0)	0(0,0)	1(50,0)	0(0,0)	0(0,0)	0(0,0)	1(50.0)	0(0,0)	2(100,0)
학 대	신체·정서·성	9(29.0)	10(32,3)	5(16,1)	0(0,0)	4(12,9)	3(9.7)	0(0,0)	0(0.0)	7(22,6)	0(0,0)	31(100,0)
	신체·정서·방임	12(15,2)	39(49.4)	5(6,3)	7(8,9)	14(17.7)	1(1,3)	1(1,3)	0(0,0)	23(29.1)	0(0,0)	79(100,0)
	신체·성·방임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정서·성·방임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신체정서성방임	1(12,5)	00.00	1(12,5)	2(25,0)	0(0,0)	3(37.5)	1(12,5)	0(0,0)	6(75.0)	0(0.0)	8(100.0)
	소계	162(26,0)	259(41.6)	46(7.4)	65(10,5)	69(11,1)	13(2,1)	4(0.6)	3(0.5)	154(24.8)	1(0,2)	622(100,0)

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현황*

정부 주도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0년을 전후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단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18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안)에 내용 반영으로 그쳤다.

2012년(19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각각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2013년 칠곡·울산 사망사건,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강화 필요성 등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개의 법안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병합되어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2014년 9월 29일(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약 3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라 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조치 현황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 아동학대처벌법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에 대한 청구 및 결과 그리고 조치 미결정 사유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는 2,512건이었고, 이 중 325건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전체 신고접수건수 중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는 전체 사례의 12.9%이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 약 3개월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점과 국가이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례에 한정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조치의 적정 비율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512	325	12,9			

^{* 2014}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이다. 응급조치 1호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행위자를 72시간 동안 피해 아동으로부터 공가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이다. 3호는 피해아동을 학대했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이고, 마지막 4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이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표 4-41〉과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149건,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99건으로 총 248건이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136건(76.4%)이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20건(11.2%), 1호(학대행위 제지) 14건(7.9%), 4호(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8건(4.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78건(54.5%)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와 1호(학대행위 제지 조치)가 각각 35건(24.5%), 22건(15.4%)으로 상담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외에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는 8건(5.6%)이었다.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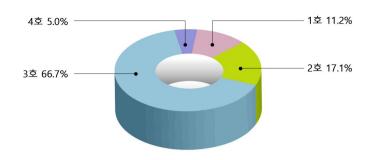
	조치 내용								
분류	분류 실건수		2호	3호	4호	총 계 (중복집계)			
상담원	149	14 (7.9)	20 (11.2)	136 (76.4)	8 (4.5)	178 (100.0)			
경찰	99	22 (15.4)	35 (24.5)	78(54.5)	8 (5.6)	143 (100.0)			
총계	248	36 (11.2)	55 (17.1)	214(66.7)	16 (5.0)	321 (100,0)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이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이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로 접근금지 장소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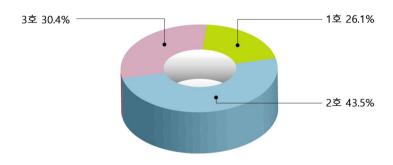
(표 4-42)를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 결정건수는 총 10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의 직권으로 5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건이 결정되었다. 가장 많은 조치가 결정된 조치는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로 10건(43.5%)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7건(30.4%), 1호(퇴거 등 격리)가 6건(26.1%) 순으로 나타났다.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여 해당 조치를 따로 살펴보면, 보호시설이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와학교 및 학원이 각각 4건(23.5%), 병원과 기타장소는 각각 1건(5.9%)이었다. 긴급임시조치의실건수는 10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23건으로 2~3개의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단위: 건, %)

					2호*							
신청자	신청 실건수	결정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포함)	소계 (중복 제외)	3호	총 계 (중복집계)
경찰 직권	_	5	5(35.7)	2(20.0)	3(30.0)	3(30.0)	1(10.0)	1(10.0)	10(100.0)	5(35.7)	4(28.6)	14(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	5	1(11.1)	2(28.6)	1(14.3)	4(57.1)	0(0.0)	0(0.0)	7(100.0)	5(55.6)	3(33.3)	9(100.0)
총계	6	10	6(26.1)	4(23.5)	4(23.5)	7(41.2)	1(5.9)	1(5.9)	17(100.0)	10(43,5)	7(30.4)	23(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다.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5조)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이다. 임시조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 조치 청구신청을 하고,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ㆍ법정대리인ㆍ변호사ㆍ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은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검사에게 각각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과 임시조치 청구요청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상세 내용으로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3호는 피해아동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4호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마지막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먼저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14조 임시조치 시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례는 총 299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80.9%에해당하는 242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로 행된 사례는 57건(19.1%)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4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조 임시조치 실건수

(단위: 건, %)

	제14조 임시조치	제15조 임시조치	총계
실건수	57(19.1)	242(80.9)	299(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조치가 취해진 248 건 중에서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된 사례는 242건이고,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6건으로 응급조치 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은 97.6%로 나타났다. 응급조치 이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가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이 추후 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응급조치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미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
248	6	242	97.6

아동학대처벌법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검색일자 기준(2015년 3월 17일)에 해당하는 단계(청구신청ㆍ청구ㆍ결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피해이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무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74건 이고, 49건(66.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 되었으며, 25건(33.8%)은 검사에게 임시 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표 4-45〉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단위: 건 %)

					세부 내용														
절차	거부	거부 결정 총		결정	총					2호*									
절차 분류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중복집계)		
청구신청 (요청)	25 (33.8)	49 (66.2)	74 (100.0)	10 (9.8)	19 (23.8)	24 (30.0)	31 (38.8)	3 (3.8)	3 (3.8)	80 (100.0)	39 (38.2)	26 (25.5)	8 (7.8)	16 (15.7)	3 (2.9)	0 (0.0)	102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80건이고, 이 중 72건(90,0%)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건 (10.0%)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표 4-46〉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단위: 건, %)

					세부 내용														
절차	절차 거부 결정		총					2호*											
분류	절차 거부 결정 분류 실건수실건수	실건수	실건수	변수 실건수		그모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제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중복집계)
청구(요청)	8 (10.0)	72 (90.0)	80 (100.0)	22 (15.1)	32 (23.5)	44 (32.4)	48 (35.3)	9 (6.6)	3 (2,2)	136 (100.0)	63 (43.2)	30 (20.5)	5 (3.4)	19 (13.0)	7 (4.8)	0 (0.0)	146 (100.0)		

^{·1}호: 피해이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③ 임시조치 결정 현황

판사 직권 또는 법원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결정된 사례는 총 140건으로 96.6%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건(3.4%)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00건(3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66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로의 접근금지 57건(30.2%),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 50건(26.5%)으로 높은 분포들을 보였다. 2호를 제외하고 5호(상담 및 교육 위탁) 65건(24.3%),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49건(18.4%)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이전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제 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개입을 하기 어려웠었고, 또 학대행위자 변화 없이는 학대 위험요인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었다. 그러므로 5호(상담 및 교육 위탁)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제화 하고 동시에학대행위 및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처분이다. 아직까지 임시조치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다.

^{·2}호: 피해이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피해이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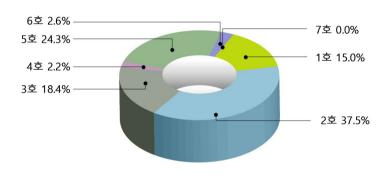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표 4-47〉임시조치 결정 현황

																	, .
					세부 내용												
절차	거부	결정	총					2호*									
분류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집계)	(중복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중복집계)
법원 결정	5 (3.4)	140 (96.6)	145 (100.0)	40 (15.0)	57 (30.2)	50 (26.5)	66 (34.9)	9 (4.8)	7 (3.7)	189 (100.0)	100 (37.5)	49 (18.4)	6 (2,2)	65 (24.3)	7 (2,6)	0 (0.0)	267 (100.0)

- ·1호: 피해이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이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림 4-29〉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ㆍ법정대리인ㆍ변호사ㆍ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청구하는 제도로서 의미있는 조항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호~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호~6호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학대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권한에 대한 조치로 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인정하는 때에 임시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1~9호 중 해당하는조치를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 될 때까지이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아동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청구한 건수는 59건 중 58건으로 무려 98.3%에 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수는 단 1건(1.7%)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53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37건(31.9 %), 3호(전기통신 접근 제한) 15건(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모두 2호, 3호, 4호 조치를 주로 청구하였다.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6건(6.1%), 6호(피해아동 가정위탁) 3건(3.1%), 5호(의료기관 치료위탁) 1건(1.0%)을 청구하였다.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단위: 건, %)

				청구 내용										
청구인	임시보호 필요	임시보호 불필요	청구 실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총계 (중복 집계)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50	1	51	1 (1.0)	32 (32.7)	10 (10.2)	45 (45.9)	1 (1.0)	3 (3.1)	6 (6.1)	0 (0.0)	0 (0.0)	98 (100.0)	
변호사	8	0	8	0 (0.0)	5 (27.8)	5 (27.8)	8 (44.4)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00 <u>.</u> 0)	
총계	58	1	59	1 (0.9)	37 (31.9)	15 (12.9)	53 (45.7)	1 (0.9)	3 (2,6)	6 (5.2)	0 (0.0)	0 (0.0)	116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이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이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이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명령 청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32건 중 21건으로 65.6%에 해당하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11건(34.4%)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 3개월 경과한 시점이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신청 수인 59건에 비해 결정 건수는 32건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수치이다. 나머지 건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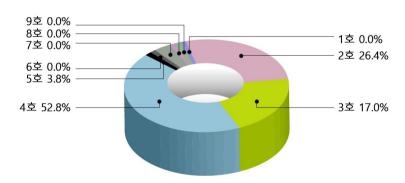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0건 중 기각된 2건을 제외하고 18건이었고, 변호사는 4건을 청구하여 4건 모두 결정되었다.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28건(52 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4건(26.4%),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9건 (17.0%), 5호(의료기관 치료위탁) 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청구	내용				'귀· 단, /0/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임시보호 결정	임시보호 기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총계 (중복 집계)
판사 직권	8	_	8	7	1	O (0.0)	1 (10.0)	1 (10.0)	7 (70.0)	1 (10.0)	0 (0.0)	0 (0.0)	O (0.0)	0(0.0)	10 (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8	2	20	14	6	0(0.0)	12 (32.4)	7 (18.9)	17 (45.9)	1 (2.7)	0 (0.0)	0 (0.0)	O (0.0)	0(0.0)	37 (100.0)
변호사	4	0	4	_	4	O (0.0)	1 (16.7)	1 (16.7)	4 (66.7)	O (0.0)	O (0.0)	O (0.0)	O (0.0)	O (0.0)	6 (100.0)
총계	30	2	32	21	11	0 (0.0)	14 (26.4)	9 (17.0)	28 (52,8)	2 (3.8)	O (0,0)	O (0.0)	O.O)	O (0,0)	53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이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이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이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이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5 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ㆍ집단상담ㆍ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 · 미술치료 · 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 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쉮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 · 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년 신고사례, 그리 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2014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335,424				
학대행위자	73,817				
부모 또는 가족	79,160				
<u></u>	488,401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2014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335,424회이다. 〈표 4-51〉에서 2014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39,119회이며, 2014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96,305회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68,507회 (49.2%), 96,727회(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유형 중에서 상담서비스 중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이전 신고사례는 개별상담 30,494회(21.9%), 기관상담 35,164회(25.3%)가 제공되었으며, 2014년 신고사례의 경우 개별상담 34,278(17.5%), 기관상담 57,754회(29.4%)가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되었다.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39,512회(28.4%), 63,830회(32.5%)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는 각각 18,636회(13.4%), 15,761회(8.0%)로 2014년 이전 신고사례에서 더 많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족기능 강화서비스는 각각 5,811회(4.2%), 7,691회(3.9%)로 신고 시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단위: 회, %)

	신고시점		(ETI: 41, %		
서비스	전포지점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개별상담	30,494(21.9)	34,278(17.5)		
	집단상담	596(0.4)	1,455(0.7)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35,164(25.3)	57,754(29.4)		
	주변인상담	2,253(1.6)	3,240(1.7)		
	소계	68,507(49.2)	96,727(49.3)		
	검진 및 검사	177(0.1)	580(0.3)		
	입원치료	1,878(1.3)	2,752(1.4)		
의료서비스	통원치료	225(0.2)	570(0.3)		
	소계	2,280(1.6)	3,902(2.0)		
	심리검사	448(0.3)	1,917(1.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18,188(13.1)	13,844(7.1)		
	소계	18,636(13.4)	15,761(8.0)		
	가정지원서비스	5,468(3.9)	7,241(3.7)		
키 ᄌ 키 ㄴ ㄱ니니 ㅣ ㅣ ㅣ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221(0.2)	308(0.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공적지원연결	122(0.1)	142(0.1)		
	소계	5,811(4.2)	7,691(3.9)		
일시	· 보호서비스	39,512(28.4)	63,830(32.5)		
사건처	리지원서비스	236(0.2)	1,641(0.8)		
	기타	4,137(3.0)	6,753(3.4)		
	계	139,119(100.0)	196,305(100.0)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총 335,424회로 2014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 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진행 중인 사례는 301,581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33.843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약 9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7.1%,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기관상담, 개별 상담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는 진행중 사례에서는 103,342회(34.3%)로 높은 수치이나 사후관리 사례에는 0건(0,0%)이었다. 이는 일시보호서비스가 종료되어야 사례가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 서비스는 진행중 사례에서 9.0%에 해당하지만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7.154건으로 약 2배 높은 21.1%를 기록하였다.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55,970(18.6)	8,802(26.0)
	집단상담	1,661(0.6)	390(1.2)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80,077(26.6)	12,841(37.9)
	주변인상담	4,393(1.5)	1,100(3.3)
	소계	142,101(47.1)	23,133(68.4)
	검진 및 검사	716(0.2)	41(0.1)
이크 네비 사	입원치료	4,608(1.5)	22(0.1)
의료서비스	통원치료	705(0.2)	90(0.3)
	소계	6,029(2.0)	153(0.5)
	심리검사	2,155(0.7)	210(0.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25,088(8.3)	6,944(20.5)
	소계	27,243(9.0)	7,154(21.1)
	가정지원서비스	11,411(3.8)	1,298(3.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88(0.2)	41(0.1)
가꼭기능강와지미스	공적지원연결	256(0.1)	8(0.0)
	소계	12,155(4.0)	1,347(4.0)
일시	보호서비스	103,342(34.3)	O(O.O)
사건처	리지원서비스	1,743(0.6)	134(0.4)
	기타	8,968(3.0)	1,922(5.7)
	계	301,581(100,0)	33,843(100.0)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2014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73,817회로 집계되었다. 2014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30,67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4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43,143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년 신고사례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담서비스가 각각 26,594회(86.7%), 36,092회(83.7%)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가 각각 2,131회(6.9%), 3,287회(7.6%)를 제공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의료서비스는 2014년 이전 신고사례가 784회(2.6%)로 2014년 신고사례의 2,430회(5.6%)보다 약 3%가 낮게 나타났다.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단위: 회, %)

	서비스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개별상담	23,495(76.6)	29,023(67.3)
	집단상담	156(0.5)	464(1.1)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2,638(8.6)	6,075(14.1)
	주변인상담	305(1.0)	530(1.2)
	소계	26,594(86.7)	36,092(83.7)
	검진 및 검사	15(0.0)	47(0.1)
	입원치료	717(2.3)	2,294(5.3)
의료서비스	통원치료	52(0.2)	89(0.2)
	소계	784(2.6)	2,430(5.6)
	심리검사	100(0.3)	331(0.8)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2,031(6.6)	2,956(6.9)
	소계	2,131(6.9)	3,287(7.6)
	가정지원서비스	700(2.3)	604(1.4)
ᄀᆝᅎᄀᆝᆫᄀᅜᅴᆡᆔᅧ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98(0.3)	72(0.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공적지원연결	15(0.0)	19(0.0)
	소계	813(2.7)	695(1.6)
	기타	352(1.1)	639(1.5)
	계	30,674(100.0)	43,143(100.0)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표 454〉와 같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64.413회, 사후관리 사례 에 제공된 서비스는 9,404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보다 사후관리 사례가 약 7배 많은 서비스가 지워되었다.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54,408회(84,5%), 심리치료 서비스 4,725회(7.3%), 의료서비스 3,163회(4.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305회(2.0%)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8,278회(8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치료 서비스 693회(7.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03회(2.2%), 기타 179회(1.9%), 의료서비스 51회(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45,411(70.5)	7,107(75.6)
	집단상담	572(0.9)	48(0.5)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7,677(11.9)	1,036(11.0)
	주변인상담	748(1.2)	87(0.9)
	소계	54,408(84.5)	8,278(88.0)
	검진 및 검사	58(0.1)	4(0.0)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2,986(4.6)	25(0.3)
의묘시미스	통원치료	119(0.2)	22(0.2)
	소계	3,163(4.9)	51(0.5)
	심리검사	394(0.6)	37(0.4)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4,331(6.7)	656(7.0)
	소계	4,725(7.3)	693(7.4)
	가정지원서비스	1,109(1.7)	195(2.1)
기즈기느가린 IJULA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64(0.3)	6(0.1)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공적지원연결	32(0.0)	2(0.0)
	소계	1,305(2.0)	203(2,2)
	기타	812(1.3)	179(1.9)
	계	64,413(100.0)	9,404(100.0)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은 피해아동의 비가해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79,160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약 87%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55〉에서 보듯이 2014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32,488회를 제공하였고, 2014년 신고된 사례는 46,672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년 신고사례 각각 28,257회(87.0%), 40,602회(87.0%)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치료 서비스는 각각 2,540회(7.8%), 2,805회(6.0%)로 그 뒤를 이었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기타서비스는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년 이전/2014년)

(단위: 회, %)

	서비스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2,821(70.2)	31,327(67.1)			
	집단상담	262(0.8)	421(0.9)			
	기관상담	3,381(10.4)	6,521(14.0)			
	주변인상담	1,793(5.5)	2,333(5.0)			
	소계	28,257(87.0)	40,602(87.0)			
	검진 및 검사	44(0.1)	116(0.2)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67(0.2)	398(0.9)			
의묘시미스	통원치료	90(0.3)	39(0.1)			
	소계	201(0.6)	553(1.2)			
	심리검사	145(0.4)	409(0.9)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2,395(7.4)	2,396(5.1)			
	소계	2,540(7.8)	2,805(6.0)			
	가정지원서비스	1,027(3.2)	1,125(2.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6(0.1)	83(0.2)			
	공적지원연결	12(0.0)	26(0.1)			
	소계	1,085(3.3)	1,234(2.6)			
	기타	405(1.2)	1,478(3.2)			
	계	32,488(100.0)	46,672(100.0)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표 456〉과 같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68,665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0.495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보다 사후관리 사례가 약 6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59,478회로 86.6%를 차지하였고, 심리 치료 서비스가 4,753회(6,9%),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2,021회(2,9%), 의료서비스 687회(1,0%)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9,381회(89,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592회(5.6%),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98회(2.8%), 기타 157회 (1.5%), 의료서비스 67회(0.6%)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회, %)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46,963(68.4)	7,185(68.5)				
상담서비스	집단상담	609(0.9)	74(0.7)				
	기관상담	8,766(12.8)	1,136(10.8)				
	주변인상담	3,140(4.6)	986(9.4)				
	소계	59,478(86.6)	9,381(89.4)				
	검진 및 검사	155(0,2)	5(0.0)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465(0.7)	O(O.O)				
의묘시미스	통원치료	67(0.1)	62(0.6)				
	소계	687(1.0)	67(0.6)				
	심리검사	519(0.8)	35(0.3)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4,234(6.2)	557(5.3)				
	소계	4,753(6.9)	592(5.6)				
	가정지원서비스	1,881(2.7)	271(2,6)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04(0.2)	25(0.2)				
기축기증성화시미스	공적지원연결	36(0.1)	2(0.0)				
	소계	2,021(2.9)	298(2,8)				
	기타	1,726(2.5)	157(1.5)				
	계	68,665(100.0)	10,495(100.0)				

※중복포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서비스 제공 중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목적은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2. 재학대 사례
- 3. 사망아동 사례
-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의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 돌보미와 취약계층 이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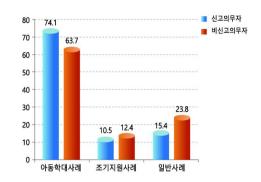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판단 결과를 (표 5-1)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은 74.1%로 비신고의무자의 63.7%와 비교하여 약 10%가 더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 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사례 판단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구분 신고자유형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3,230(74.1)	457 (10.5)	671(15.4)	4,358 (100.0)		
비신고의무자	6,797(63.7)	1,326(12.4)	2,544(23.8)	10,667 (100.0)		
계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 (100.0)		

(단위:%)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를 〈표 5-2〉와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에서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85.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각각 80.0%, 초·중·고교 직원 79.7% 순으로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사례판단 비율인 63.7%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에서 일반사례로 판단 비율이 높은 직군은 가정위탁 지원센터종사자 40.7%,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0.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40.0%, 학원강사 3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구분 신고자유형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초 · 중 · 고교 직원	1,585(79.7)	205(10.3)	198(10.0)	1,988(100.0)	
의료인	80(65.0)	18(14.6)	25(20.3)	123(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1(73.1)	28(10.2)	46(16.7)	275(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6(66.7)	3(12.5)	5(20.8)	24(100.0)	
보육교직원	173(63.4)	22(8.1)	78(28.6)	273(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25(58.1)	7(16.3)	11(25.6)	43(100.0)	
학원강사	15(57.7)	1(3.8)	10(38.5)	26(100.0)	
소방구급대원	18(64.3)	3(10.7)	7(25.0)	28(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2(100.0)	0(0.0)	0(0.0)	2(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60.0)	0(0.0)	4(40.0)	10(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48(85.1)	4(2.3)	22(12.6)	174(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94(70.6)	73(10.4)	133(19.0)	700(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13(74.8)	113(74.8) 15(9.9)		151(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2(44.4)	4(14.8)	11(40.7)	27(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5(43.3)	17(16.3)	42(40.4)	104(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9(50.0)	8(44.4)	1(5.6)	18(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6(80.0)	3(15.0)	1(5.0)	20(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9(75.6)	6(7.7)	13(16.7)	78(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6(80.0)	1(5.0)	3(15.0)	20(100.0)	
응급구조사	1(50.0)	0(0.0)	1(50.0)	2(100.0)	
의료기사	O((O _. O)	0(0.0)	0(0.0)	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37(74.1)	27(14.6)	21(11.4)	185(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9(64.3)	3(21.4)	2(14.3)	14(100.0)	
아이돌보미	0(0.0)	0(0.0)	0(0.0)	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50(68.5)	9(12.3)	14(19.2)	73(100.0)	
계	3,230(74.1)	457(10.5)	671(15,4)	4,358(100.0)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과 같이 살펴본결과,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가 84.4%, 비신고의무자가 80.6%로 신고의무자가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친인척인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6.7%, 비신고의무자가5.1%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 비율이조금 더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의경우 신고의무자가 6.6%, 비신고의무자가 11.4%로 비신고의무자가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신고의무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대리양육자에의한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신고자유형	건 수 건 수							
관계	<u>Ε</u> ΣΛ1π 6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친부	1,521(47,1)	3.010(44.3)						
	_ · 친모	1,036(32.1)	2,175(32,0)						
	계부	72(2,2)	117(1.7)						
부모	계모	85(2,6)	157(2.3)						
·	양부	6(0.2)	11(0,2)						
	· · · · · · · · · · · · · · · · · · ·	7(0.2)	10(0.1)						
	소계	2,727(84,4)	5,480(80,6)						
	친조부	23(0.7)	46(0.7)						
	 친조모	42(1.3)	93(1.4)						
	외조부	6(0.2)	11(0.2)						
친인척	외조모	24(0.7)	30(0.4)						
	친인척	94(2.9)	135(2.0)						
	형제, 자매	26(0.8)	29(0.4)						
	소계	215(6.7)	344(5.1)						
	부, 모의 동거인	57(1.8)	89(1.3)						
	유치원교직원	2(0.1)	97(1.4)						
	초·중·고교 직원	20(0.6)	125(1.8)						
	학원 강사	5(0.2)	75(1.1)						
대리	보육교직원	73(2.3)	222(3.3)						
네니 양육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1.5)	129(1.9)						
강포시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2(0.1)	27(0.4)						
	베이비시터	0(0.0)	7(0.1)						
	위탁부	2(0.1)	3(0.0)						
	위탁모	3(0.1)	4(0.1)						
	소계	212(6.6)	778(11.4)						
	이웃	23(0.7)	50(0.7)						
타인	낯선사람	9(0.3)	42(0.6)						
	소계	32(1.0)	92(1.4)						
	기타	37(1.1)	92(1.4)						
	파악안됨	7(0.2)	11(0.2)						
	계	3,230(100.0)	6,797(100.0)						

(단위:%)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4)와 같이 살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비신고 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하였다.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 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의 모든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신고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장소 신고자유형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인척 의 집	이웃집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신고의무자	2,874 (89 <u>.</u> 0)	52 (1.6)	18 (0,6)	1 (0.0)	76 (2,4)	2 (0.1)	26 (0.8)	6 (0.2)	8 (0.2)	52 (1.6)	7 (0.2)	42 (1.3)	11 (0.3)	6 (0.2)	48 (1.5)	1 (0.0)	3,230 (100,0)
비신고의무자	5,526 (81.3)	158 (2,3)	61 (0.9)	8 (0.1)	224 (3,3)	94 (1.4)	145 (2.1)	90 (1.3)	32 (0.5)	128 (1.9)	23 (0.3)	143 (2.1)	38 (0.6)	14 (0.2)	99 (1.5)	14 (0.2)	6,797 (100,0)
계	8,400 (83,8)	210 (2,1)	79 (0,8)	9 (0,1)	300 (3.0)	96 (1,0)	171 (1.7)	96 (1.0)	40 (0,4)	180 (1,8)	30 (0,3)	185 (1,8)	49 (0,5)	20 (0,2)	147 (1,5)	15 (0,1)	10,027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5〉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비율이 37.8%로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관리·감독 등의 관련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7건 (15.6%),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등 위험으로 인해 내부에서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영유아보육법만 규정 되어 있어 보육교직원만 해당이 된다. 추후에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에서 아동학대 신고한 신고자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 장소 신고의무자 유형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초·중·고교 직원	1,488 (93,9)	21 (1,3)	12 (0.8)	0 (0,0)	0 (0.0)	0(0,0)	17 (1.1)	5 (0,3)	3 (0.2)	8 (0,5)	0(0.0)	15 (0,9)	2 (0.1)	1 (0.1)	12 (0.8)	(0,1)	1,585 (100.0)
의료인	66 (82,5)	0 (0.0)	0 (0.0)	0 (0,0)	1 (1.3)	0(0,0)	4 (5.0)	0.0)	3 (3.8)	0 (0,0)	0.0)	4 (5.0)	0 (0.0)	1 (1.3)	1 (1.3)	0 (0.0)	80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60 (79.6)	4 (2.0)	0 (0,0)	0 (0.0)	0 (0.0)	2 (1,0)	2 (1.0)	0.0)	0 (0.0)	22 (10,9)	2 (1,0)	3 (1.5)	1 (0.5)	1 (0.5)	4 (20)	0 (0.0)	201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4 (87.5)	0 (0,0)	0 (0,0)	0 (0,0)	0 (0.0)	0(0,0)	1 (6.3)	0.0)	0 (0,0)	1 (6,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보육교직원	140 (80.9)	3 (1.7)	0 (0.0)	0 (0.0)	27 (15,6)	0(0,0)	0 (0.0)	0.0)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0 (0.0)	0 (0,0)	173 (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23 (92,0)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 (0,0)	2 (8,0)	0 (0.0)	0 (0.0)	0 (0.0)	0 (0.0)	25 (100.0)
학원강사	10 (66,7)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5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 (100.0)
소방구급대원	17 (94.4)	1 (5,6)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00,0)
성매매피해시설 상담소종사자	2 (100,0)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종사자	5 (83.3)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134 (90.5)	6 (4.1)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2 (1.4)	3 (20)	1 (0.7)	0 (0.0)	2 (1.4)	0 (0.0)	148 (100.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10 (83.0)	8 (1.6)	3 (0.6)	1 (0.2)	31 (6.3)	0(0,0)	0 (0,0)	1 (0.2)	0 (0.0)	13 (26)	1 (0,2)	3 (0.6)	3 (0.6)	3 (0.6)	17 (3.4)	0 (0.0)	494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5 (92,9)	1 (0.9)	1 (0.9)	0 (0.0)	0 (0.0)	0(0,0)	0 (0,0)	0.0)	1 (0.9)	0 (0.0)	0(0,0)	2 (1.8)	1 (0.9)	0 (0.0)	2 (1.8)	0 (0.0)	113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1 (91.7)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1 (8.3)	0 (0.0)	12 (100.0)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17 (37.8)	0 (0,0)	2 (4.4)	0 (0,0)	17 (37.8)	0(0,0)	1 (22)	0 (0.0)	0 (0,0)	2 (4.4)	0 (0.0)	1 (2.2)	0 (0.0)	0 (0.0)	5 (11,1)	0 (0.0)	45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8 (88.9)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9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5 (93.8)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0,0)	1 (6,3)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58 (98.3)	0 (0,0)	0 (0.0)	0 (0.0)	0 (0.0)	0,0)	0 (0,0)	0 (0.0)	1 (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9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종사자	11 (68.8)	4 (25,0)	0 (0.0)	0 (0.0)	0 (0.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16 (100.0)
응급구조사	1 (100,0)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0 (0,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O (0.0)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123 (89.8)	3 (22)	0 (0.0)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7)	5 (3.6)	1 (0.7)	0 (0.0)	3 (22)	0 (0.0)	137 (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아이돌보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O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47 (94,0)	1 (20)	0 (0,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0(0,0)	0 (0,0)	0 (0.0)	0 (0,0)	1 (20)	0(0,0)	50 (100.0)
계	2,874 (89,0)	52 (1.6)	18 (0,6)	1 (0.0)	76 (2,4)	2 (0,1)	26 (0,8)	6 (0,2)	8 (0,2)	52 (1,6)	7 (0,2)	42 (1.3)	11 (0,3)	6 (0,2)	48 (1,5)	1 (0,0)	3,230 (100,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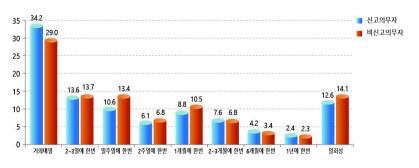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표 5-6〉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34.2%였고, 비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29.0%로 약 5%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빈도 신고자유형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월 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104	438	342	196	285	245	137	77	406	3,230
	(34.2)	(13.6)	(10.6)	(6.1)	(8.8)	(7.6)	(4.2)	(2.4)	(12.6)	(100,0)
비신고의무자	1,969	933	911	462	717	460	229	159	957	6,797
	(29.0)	(13.7)	(13.4)	(6.8)	(10.5)	(6.8)	(3.4)	(2.3)	(14.1)	(100,0)
계	3,073	1,371	1,253	658	1,002	705	366	236	1,363	10,027
	(30,6)	(13,7)	(12,5)	(6,6)	(10,0)	(7.0)	(3.7)	(2,4)	(13,6)	(100,0)

(단위 : %)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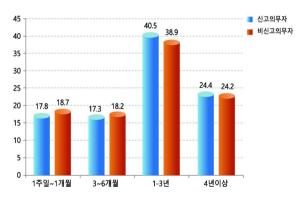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를 〈표 5-7〉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가 1년~3년 사이가 신고 의무자 40.5%, 비신고의무자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 이상이 신고의무자 24.4%, 비신고의무자 24.2%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철저한 신고의무자교육 및 적극적인 국민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례가 초기에 발견되어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단위: 건,%)

시기 신고자 유형	1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신고의무자	574(17.8)	560(17.3)	1,307(40.5)	789(24.4)	3,230(100.0)
비신고의무자	1,269(18.7)	1,240(18.2)	2,643(38.9)	1,645(24.2)	6,797(100.0)
계	1,843(18.4)	1,800(18.0)	3,950(39.4)	2,434(24.3)	10,027(100.0)

(단위:%)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8〉과 같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36.7%로 가장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1.8%로 가장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유형 신고자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고의무자	1,808(36.7)	1,771(35.9)	161(3.3)	1,192(24.2)	4,932(100.0)
비신고의무자	3,891(37.0)	4,405(41.8)	286(2.7)	1,944(18.5)	10,526(100.0)
계	5,699(36.9)	6,176(40.0)	447(2,9)	3,136(20,3)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라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표 5-9)와 같이 살펴보면, 각 학대 유형별로 높은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학대 발견율은 학원강사 55.0%, 의료인 50.4%, 유치원교직원·강사와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50.0%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 발견율은 응급구조사가 100%, 가 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5.4%,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1% 순이었다. 성학대 발견율에 있 어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이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46.6%, 유치원교직원·강사 4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근귀 · 신, 40)
유형 신고자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초·중·고교 직원	1,077(43.1)	935(37.4)	84(3.4)	405(16.2)	2,501(100,0)
의료인	61(50.4)	36(29.8)	1(0.8)	23(19.0)	121(100.0)
이동복지시설종사자	96(30.8)	98(31.4)	22(7.1)	96(30.8)	312(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8(36.4)	5(22.7)	3(13.6)	6(27.3)	22(100.0)
보육교직원	88(35.5)	74(29.8)	6(2.4)	80(32,3)	248(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13(50.0)	1(3.8)	0(0.0)	12(46.2)	26(100.0)
학원강사	11(55.0)	8(40.0)	0(0.0)	1(5.0)	20(100.0)
소방구급대원	9(34.6)	8(30.8)	0(0.0)	9(34.6)	26(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33.3)	1(33.3)	0(0.0)	1(33.3)	3(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3(25.0)	4(33.3)	0(0.0)	5(41.7)	12(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92(38.0)	134(55.4)	5(2.1)	11(4.5)	242(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6(19.6)	198(28.6)	9(1.3)	350(50.5)	693(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7(22.6)	51(31.1)	3(1.8)	73(44.5)	164(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3(21.4)	7(50.0)	O(O.O)	4(28.6)	14(100,0)
이동복지전담공무원	26(35.6)	27(37.0)	O(O.O)	20(27.4)	73(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4(36.4)	3(27.3)	O(O.O)	4(36.4)	11(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9(34.6)	9(34.6)	1(3.8)	7(26.9)	26(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7(21.0)	43(53.1)	2(2.5)	19(23.5)	81(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4(16.7)	10(41.7)	10(41.7)	0(0.0)	24(100.0)
응급구조사	O(O.O)	1(100.0)	O(O.O)	O(O.O)	1(100.0)
의료기사	O(O.O)	0(0.0)	O(O.O)	O(O.O)	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88(39.1)	98(43.6)	9(4.0)	30(13.3)	225(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7(50.0)	5(35.7)	O(O.O)	2(14.3)	14(100.0)
미보룈어0	O(O.O)	0(0.0)	O(O.O)	O(O.O)	0(0,0)
취약계층이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18(24.7)	15(20.5)	6(8.2)	34(46.6)	73(100.0)
계	1,808(36.7)	1,771(35.9)	161(3.3)	1,192(24.2)	4,932(100.0)

※중복포함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10〉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가정보호율은 비신고의무자가 약 1.5% 높았고, 분리보호율은 신고의무자가 약 1.5% 높았다.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신고자 유형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신고의무자	2,338(72.4)	886(27.4)	6(0.2)	3,230(100.0)
비신고의무자	5,024(73.9)	1,763(25.9)	10(0.1)	6,797(100.0)
	7,362(73.4)	2,649(26.4)	16(0.2)	10,027(100,0)

(단위:%)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11)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78.3%,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72.6%로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지속관찰 비율이 더 높았다.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11.9%, 비신고의무자 16.6%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조치결과 신고자 유형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신고의무자	2,529(78.3)	136(4.2)	383(11.9)	182(5.6)	3,230(100.0)
비신고의무자	4,932(72.6)	372(5.5)	1,125(16.6)	368(5.4)	6,797(100.0)
계	7,461(74.4)	508(5.1)	1,508(15.0)	550(5.5)	10,027(100.0)

(단위:%)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 재학대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2014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4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1,027건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10,027건 대비하여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2%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1건은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

재학대 사례 건수 [*]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1,027	10.2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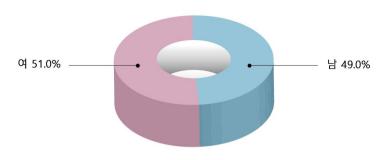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표 5-13〉과 같이 살펴보면 여아 524건(51.0%), 남아 503건(49.0%)으로 여아가 약 2%가량 높지만,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재학대 피해아동 성별

성별	건수(비율)			
남	503(49.0)			
여	524(51.0)			
Й	1,027(100.0)			

^{*} 실제 재학대 아동 수는 949명임.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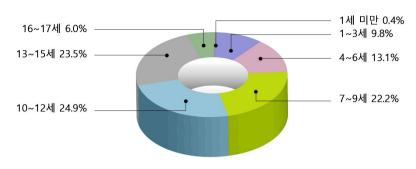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표 5-14〉와 같이 살펴보면, 만 10~12세가 256건 (24.9%), 만 13세~15세가 241건(23.5%), 만 7~9세가 228건(22.2%)으로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70%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세 미만은 4건(0.4%)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비율이 높다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4(O.4)
1~3세	101(9.8)
4~6세	135(13.1)
7~9세	228(22,2)
10~12세	256(24.9)
13~15세	241(23.5)
16~17세	62(6.0)
<u></u>	1,027(100.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Reporting and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Finding from NC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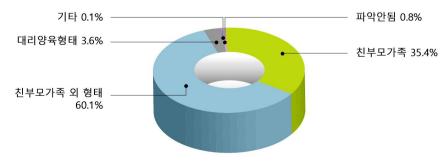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포를 〈표 5-15〉와 같이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617건으로 전체의 6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266건(25.9%), 192건(18.7%)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이 21건(2.0%)으로 한부모 가족이 46.6%로 재학대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부모가족은 364건(35.4%), 대리양육 형태는 37건(3.6%)이었다.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되	고가족 오	형태			대리양육형태				-101		
친부모 가족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기타	파악 안됨	계
364 (35.4)	266 (25.9)	192 (18.7)	21 (2.0)	65 (6.3)	23 (2,2)	50 (4.9)	617 (60.1)	3 (0.3)	3 (0.3)	31 (3.0)	37 (3.6)	1 (0.1)	8 (0.8)	1,027 (100,0)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표 5-16〉와 같이 살펴보면, 적응 및 행동 특성이 1,099건 (38.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적응 및 행동 특성 중에서도 반항·충동· 공격성이 170건(6.0%), 거짓말 137건(4.8%), 학습문제 101건(3.5%), 학교 부적응 101건(3.5%), 도벽 98건(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이 903건(31,6%)으로 나타났는데, 주의산만과 불안이 각각 156건(5.5%), 149건(5.2%)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교함 때 공격성과 반항, 충동 등의 적응·행동 특성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적응ㆍ행동 특성이나 정서ㆍ정신건강 특성을 가진 재학대 사례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수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28(1.0)		
Th OII	정신적 장애	71(2,5)		
장 애	장애의심	52(1.8)		
	소계	151(5.3)		
	주의산만	156(5.5)		
	과잉행동	111(3.9)		
	인터넷(게임)중독	35(1.2)		
	불안	149(5.2)		
	애착문제	83(2.9)		
정서 · 정신건강	무력감	65(2,3)		
	우울	81(2.8)		
	낮은 자아존중감	100(3,5)		
	성격 및 기질문제	79(2,8)		
	탐식 및 결식	44(1.5)		
	소계	90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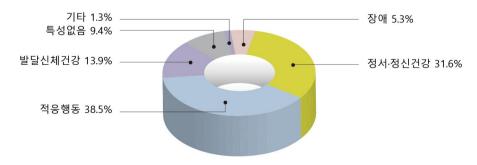
(계속)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반항 · 충동 · 공격성	170(6.0)		
	거짓말	137(4.8)		
	도벽	98(3.4)		
	가출	93(3.3)		
	약물 · 흡연 · 음주	79(2.8)		
	성문제	28(1.0)		
	학교 부적응	101(3.5)		
적응 · 행동	잦은 결석, 무단 결과	94(3.3)		
	늦은 귀가	65(2,3)		
	학습문제	101(3.5)		
	폭력행동	47(1.6)		
	비행집단활동	21(0.7)		
	불건전한 또래관계	45(1.6)		
	대인관계 기피	20(0.7)		
	소계	1,099(38.5)		
	신체발달지연	49(1.7)		
	언어문제	94(3.3)		
	영양결핍	23(0.8)		
	대소변문제	32(1.1)		
발달·신체건강	위생문제	153(5.4)		
	틱(음성,신체,뚜렛)	5(0.2)		
	잦은 병치레, 허약	14(0.5)		
	주요병력	27(0.9)		
	소계	397(13.9)		
	특성 없음	268(9.4)		
	기타	36(1.3)		
		2,854(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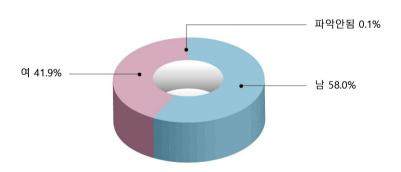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표 5-17〉과 같이 살펴보면 남성이 596건(58.0%)으로 여성 430건(41.9%) 보다 약 16%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는 1건(0.1%)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성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의 학대행 위자가 더 많았다.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성별	건수(비율)		
남	596(58.0)		
여	430(41.9)		
파악안됨	1(0.1)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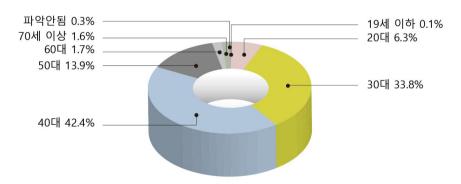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5-18〉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435건(42.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347건(33.8%), 50대 143건(13.9%), 20대 65건(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학대의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1(0.1)
20~29세	65(6.3)
30~39세	347(33.8)
40~49세	435(42.4)
50~59세	143(13.9)
60~69세	17(1.7)
70세 이상	16(1.6)
파악안됨	3(0.3)
<u></u>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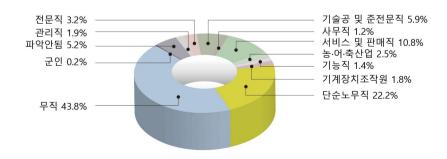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분포를 〈표 5-19〉와 같이 살펴보면, 무직이 450건으로 전체 43.8%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28건(22.2%), 서비스 및 판매직 111건(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1%로 조사되었는데,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지는 이보다 더 높은 6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작업유형

직업	건수(비율)		
관리직	19(1.9)		
전문직	33(3.2)		
기술공 및 준전문직	61(5.9)		
사무직	12(1.2)		
서비스 및 판매직	111(10.8)		
농·어·축산업	26(2,5)		
기능직	14(1.4)		
기계장치조작원	18(1.8)		
단순노무직	228(22.2)		
무직	450(43.8)		
군인	2(0.2)		
파악안됨	53(5.2)		
Я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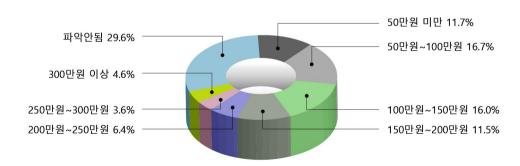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표 5-20〉과 같이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건(16.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64건(16.0%), 50만 원 미만이 120건(11.7%)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4.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7건(4.6%)으로 조사되었고,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304건(29.6%)이었다.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소득	건수(비율)
50만 원 미만	120(11.7)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71(16.7)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64(16.0)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18(11.5)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66(6.4)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7(3.6)
300만 원 이상	47(4.6)
파악안됨	304(29.6)
계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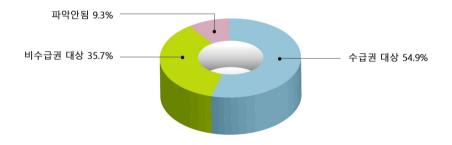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5-21〉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564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54.9%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수급권 대상은 367건(35.7%)이었고, 파악이 안된 사례는 96건(9.3%)으로 나타났다.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수급권 대상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564 (54.9)
비수급권 대상	367 (35.7)
파악안됨	96 (9.3)
계	1,027 (100,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22〉와 같이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62건(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사례의 3명 중 1명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766건(20.2%), 부부 및 가족 갈등이 353건(9.3%), 알콜 및 약물·게임 등의 중독문제가 315건(8.3%)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EH · E, N)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40(1.1)
정신적 장애	40(1.1)
장애 의심	48(1.3)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262(33.2)
중독문제	315(8.3)
질환문제	31(0.8)
성격 및 기질문제	286(7.5)
위생문제	90(2.4)
나태 및 무기력	53(1.4)
난독해, 난작문	7(0.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766(20.2)
어릴 적 학대 경험	94(2.5)
폭력성	175(4.6)
전과력	34(0.9)
성문제	41(1.1)
원치 않은 아동	24(0.6)
부부 및 가족 갈등	353(9.3)
종교문제	5(0.1)
특성 없음	95(2.5)
파악안됨	38(1.0)
	3,79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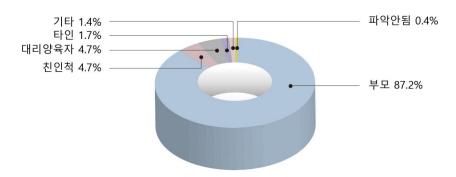
※중복포함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23)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896건(87.2%)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8건(4.7%)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2건(2.1%), 부모의 동거인은 17건(1.7%)이었다.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관계		건수(비율)		
	친부	505(49.2)		
부모	친모	348(33.9)		
	계부	16(1.6)		
	계모	23(2.2)		
	양부	2(0.2)		
	양모	2(0.2)		
	소계	896(87.2)		
	친조부	9(0.9)		
	친조모	1 4(1.4)		
	외조부	1(0.1)		
친인척	외조모	3(0.3)		
신한석	위탁부	1(0.1)		
	친인척	17(1.7)		
	형제·자매	3(0.3)		
	소계	48(4.7)		
	부모의 동거인	17(1.7)		
	보육교직원	5(0.5)		
대리양육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2(2.1)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4(0.4)		
	소계	48(4.7)		
	이웃	1 1(1.1)		
타인	낯선 사람	6(0.6)		
	소계	17(1.7)		
	기타	1 4(1.4)		
	파악안됨	4(O.4)		
계		1,027(100,0)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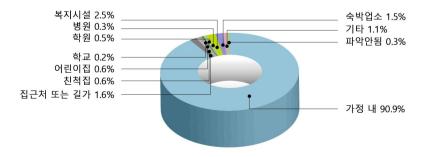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24〉와 같이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934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0.9%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85.9%였던 것에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는 약 5% 더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는 26건(2.5%)이었다.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비율)		
	아동 가정 내	918(89.4)		
가정 내	학대행위자 가정 내	16(1.6)		
	소계	934(90.9)		
	집근처 또는 길가	16(1.6)		
	친척집	6(0.6)		
	어린이집	6(0.6)		
	학교	2(0.2)		
	학원	5(0.5)		
병원		3(0.3)		
	아동복지시설	24(2.3)		
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2(0.2)		
	소계	26(2.5)		
	숙박업소	15(1.5)		
기타		11(1.1)		
파악안됨		3(0.3)		
	Л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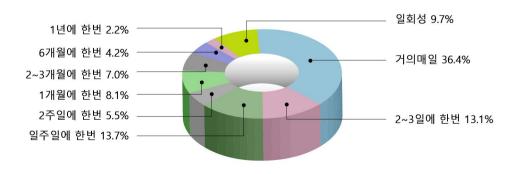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표 5-25〉와 같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재학대 사례가 374건(36.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141건(13.7%), 2~3일에 한 번이 135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매우 빈번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은 63.2%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일회성의 학대는 100건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374(36.4)	
2~3일에 한 번	135(13.1)	
일주일에 한 번	141(13.7)	
2주일에 한 번	56(5.5)	
1개월에 한 번	83(8.1)	
2~3개월에 한 번	72(7,0)	
6개월에 한 번	43(4.2)	
1년에 한 번	23(2.2)	
일회성	100(9.7)	
Я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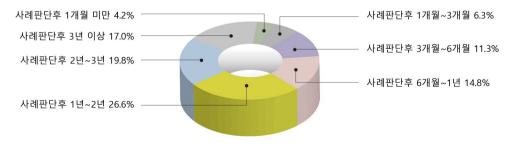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5-26〉과 같이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73건 (26.6%)으로 가장 많았고, 2년~3년 사이가 203건(19.8%), 3년 이상이 175건(17.0%)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재학대의 63.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가이미 발생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및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과 지역사회의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발생시기	건수(비율)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	43(4.2)
사례판단 후 1개월~3개월	65(6.3)
사례판단 후 3개월~6개월	116(11.3)
사례판단 후 6개월~1년	152(14.8)
사례판단 후 1년~2년	273(26.6)
사례판단 후 2년~3년	203(19.8)
사례판단 후 3년 이상	175(17.0)
Й	1,027(100.0)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7〉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 시기 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ㆍ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 · 정신건강 특성, 발달 · 신체 · 건강,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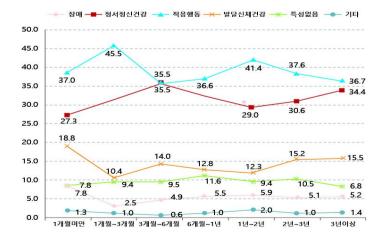
피해(시기 아동 특성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TIOU	신체적 장애	2(1.3)	0(0.0)	2(0.6)	5(1.2)	2(0.3)	9(1.8)	8(1.6)
	정신적 장애	6(3.9)	2(1.0)	7(2.0)	12(2.9)	20(2.9)	13(2.5)	11(2.1)
장애	장애 의심	4(2.6)	3(1.5)	8(2.3)	6(1.4)	19(2.7)	4(0.8)	8(1.6)
	소계	12(7.8)	5(2.5)	17(4.9)	23(5.5)	41(5.9)	26(5.1)	27(5.2)
	주의산만	5(3.2)	14(6.9)	21(6.0)	24(5.7)	39(5.6)	25(4.9)	28(5.4)
	과잉행동	6(3.9)	10(5.0)	18(5.2)	20(4.8)	20(2.9)	20(3.9)	17(3.3)
	인터넷(게임)중독	2(1.3)	2(1.0)	5(1.4)	6(1.4)	7(1.0)	6(1.2)	7(1.4)
	불안	9(5.8)	5(2.5)	24(6.9)	26(6.2)	32(4.6)	28(5.5)	25(4.9)
74.11	애착문제	1(0.6)	3(1.5)	11(3.2)	13(3.1)	19(2.7)	16(3.1)	20(3.9)
정서 정신 건강	무력감	4(2.6)	7(3.5)	8(2.3)	3(0.7)	13(1.9)	9(1.8)	21(4.1)
10	우울	5(3.2)	11(5.4)	14(4.0)	8(1.9)	16(2.3)	9(1.8)	18(3.5)
	낮은 자아존중감	6(3.9)	4(2.0)	9(2.6)	14(3.3)	31(4.4)	17(3.3)	19(3.7)
	성격 및 기질문제	3(1.9)	3(1.5)	10(2.9)	13(3.1)	17(2.4)	18(3.5)	15(2.9)
	탐식 및 결식	1(0.6)	4(2.0)	4(1.1)	10(2.4)	9(1.3)	9(1.8)	7(1.4)
	소계	42(27.3)	63(31.2)	124(35.5)	137(32.5)	203(29.0)	157(30.6)	177(34.4)

(계속)

(단위 : 건, %)

								(단위 · 건, %)
피해	시기 아동 특성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1 - 11	반항충동공격성	2(1,3)	17(8.4)	22(6.3)	27(6,4)	44(6,3)	29(5.7)	29(5,6)
		6(3.9)	. ,	, ,	` '	` ′	` ′	, ,
	거짓말		8(4.0)	16(4.6)	26(6.2)	31(4.4)	27(5.3)	23(4.5)
	도벽	6(3.9)	6(3.0)	12(3.4)	16(3.8)	29(4.1)	16(3.1)	13(2.5)
	가출	4(2.6)	7(3.5)	13(3.7)	14(3.3)	29(4.1)	10(1.9)	16(3.1)
	약물흡연음주	6(3.9)	10(5.0)	6(1.7)	11(2.6)	23(3.3)	7(1.4)	16(3.1)
	성문제	0(0.0)	7(3.5)	4(1.1)	3(0.7)	8(1.1)	3(0.6)	3(0.6)
저으	학교부적응	6(3.9)	7(3.5)	11(3.2)	14(3.3)	22(3.1)	28(5.5)	13(2.5)
적응 행동	잦은결석,무단결과	4(2.6)	6(3.0)	7(2.0)	11(2.6)	29(4.1)	20(3.9)	17(3.3)
	늦은귀가	4(2.6)	5(2.5)	7(2.0)	5(1.2)	19(2.7)	11(2.1)	14(2.7)
	학습문제	8(5.2)	5(2.5)	13(3.7)	10(2.4)	24(3.4)	16(3.1)	25(4.9)
	폭력행동	2(1.3)	4(2.0)	5(1.4)	9(2.1)	6(0.9)	13(2.5)	8(1.6)
	비행집단활동	3(1.9)	3(1.5)	2(0.6)	3(0.7)	7(1.0)	1(0.2)	2(0.4)
	불건전한 또래관계	5(3.2)	6(3.0)	4(1.1)	5(1.2)	13(1.9)	5(1.0)	7(1.4)
	대인관계기피	1(0.6)	1(0.5)	2(0.6)	0(0.0)	6(0.9)	7(1.4)	3(0.6)
	소계	57(37.0)	92(45.5)	124(35.5)	154(36.6)	290(41.4)	193(37.6)	189(36.7)
	신체발달지연	6(3.9)	2(1.0)	6(1.7)	7(1.7)	11(1.6)	8(1.6)	9(1.7)
	언어문제	6(3.9)	3(1.5)	17(4.9)	19(4.5)	19(2.7)	11(2.1)	19(3.7)
	영양결핍	2(1.3)	2(1.0)	3(0.9)	2(0.5)	8(1.1)	3(0.6)	3(0.6)
발달	대소변문제	2(1.3)	0(0.0)	4(1.1)	4(1.0)	6(0.9)	6(1.2)	10(1.9)
신체	위생문제	5(3.2)	10(5.0)	16(4.6)	14(3.3)	30(4.3)	46(9.0)	32(6.2)
건강	틱	0(0.0)	1(0.5)	0(0.0)	0(0.0)	2(0.3)	0(0.0)	2(0.4)
	잦은병치레 · 허약	3(1.9)	2(1.0)	0(0.0)	1(0.2)	5(0.7)	2(0.4)	1(0.2)
	주요병력	5(3.2)	1(0.5)	3(0.9)	7(1.7)	5(0.7)	2(0.4)	4(0.8)
	소계	29(18.8)	21(10.4)	49(14.0)	54(12.8)	86(12.3)	78(15.2)	80(15.5)
	특성없음	12(7.8)	19(9.4)	33(9.5)	49(11.6)	66(9.4)	54(10.5)	35(6.8)
	기타	2(1.3)	2(1.0)	2(0.6)	4(1.0)	14(2.0)	5(1.0)	7(1.4)
	계	154(100.0)	202(100.0)	349(100.0)	421(100.0)	700(100.0)	513(100.0)	515(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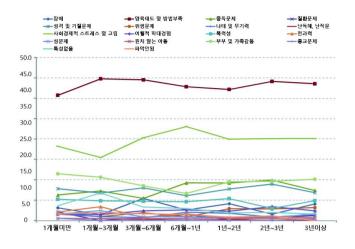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8〉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았다.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시기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피해아동 특성							
신체적 장애	1(0.5)	3(1.4)	7(1.7)	2(0.4)	15(1.6)	4(0.6)	8(1.1)
정신적 장애	3(1.6)	0(0.0)	3(0.7)	4(0.7)	10(1.0)	5(0.7)	15(2.0)
장애의심	2(1.0)	0(0.0)	13(3.1)	8(1.5)	15(1.6)	2(0.3)	8(1.1)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59(30.7)	72(34.8)	146(34.5)	178(32.8)	311(32.2)	241(34.1)	255(33.6)
중독문제	12(6.3)	15(7.2)	23(5.4)	50(9.2)	89(9.2)	70(9.9)	56(7.4)
질환문제	4(2.1)	0(0.0)	3(0.7)	8(1.5)	2(0.2)	5(0.7)	9(1.2)
성격 및 기질문제	15(7.8)	14(6.8)	34(8.0)	33(6.1)	75(7.8)	63(8.9)	52(6.8)
위생문제	3(1.6)	2(1.0)	8(1.9)	5(0.9)	28(2.9)	20(2.8)	24(3.2)
나태 및 무기력	3(1.6)	2(1.0)	3(0.7)	11(2.0)	17(1.8)	6(0.8)	11(1.4)
난독해,난작문	1(0.5)	1(0.5)	1(0.2)	1(0.2)	2(0.2)	0(0.0)	1(0.1)
사회경제적스트레스 및 고립	35(18.2)	32(15.5)	86(20.3)	125(23.1)	193(20.0)	142(20.1)	153(20.1)
어릴적 학대경험	3(1.6)	3(1.4)	10(2.4)	14(2.6)	22(2,3)	24(3.4)	18(2.4)
폭력성	10(5.2)	10(4.8)	20(4.7)	25(4.6)	52(5.4)	21(3.0)	37(4.9)
전과력	4(2.1)	7(3.4)	3(0.7)	9(1.7)	5(0.5)	3(0.4)	3(0.4)
성문제	3(1.6)	5(2.4)	4(0.9)	5(0.9)	7(0.7)	4(0.6)	13(1.7)
원치 않는 아동	1(0.5)	1(0.5)	2(0.5)	3(0.6)	6(0.6)	6(0.8)	5(0.7)
부부 및 가족갈등	22(11.5)	22(10.6)	36(8.5)	36(6.6)	92(9.5)	68(9.6)	77(10.1)
종교문제	1(0.5)	0(0.0)	0(0.0)	1(0.2)	O(O.O)	O(O.O)	3(0.4)
특성없음	7(3.6)	14(6.8)	14(3.3)	16(3.0)	18(1.9)	14(2.0)	12(1.6)
파악안됨	3(1.6)	4(1.9)	7(1.7)	8(1.5)	8(0.8)	8(1.1)	0(0.0)
계	192(100,0)	207(100.0)	423(100.0)	542(100.0)	967(100.0)	706(100.0)	760(100.0)

※중복포함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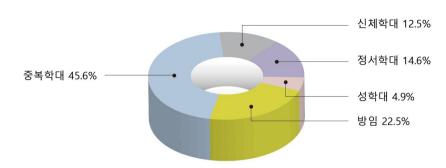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을 〈표 5-29〉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68건 (45.6%), 방임 231건(22.5%), 정서학대 150건(14.6%), 신체학대 128건(12.5%), 성학대 50건 (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 분포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28(12.5)	
정서학대	150(14.6)	
성학대	50(4.9)	
방임	231(22.5)	
중복학대	468(45.6)	
Й	1,027(100.0)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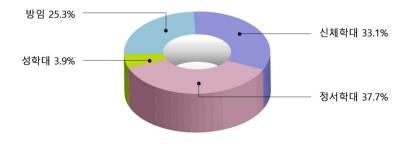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1,027건 중에서 중복학대를 미분류하여 학대유형으로 집계한 결과 총 1,556건 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학대는 정서학대로 587건(37.7%), 다음으로 신체학대 515건(33.1%), 방임 393건(25.3%), 성학대 6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515(33.1)
정서학대	587(37.7)
성 학 대	61(3.9)
방 임	393(25.3)
	1,556(100,0)

※중복포함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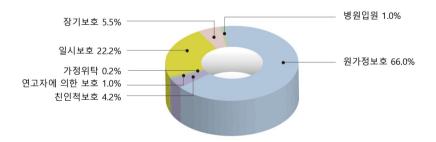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31〉과 같이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678건(66.0%), 분리보호 349건(34.1%)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율은 약 6% 낮았으나 분리 보호율은 약 7% 높았다.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이기대				분리보호				사망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계
678 (66.0)	43 (4.2)	10 (1.0)	2 (0.2)	228 (22 <u>.</u> 2)	56 (5.5)	10 (1.0)	349 (34.1)	0 (0.0)	1,027 (100.0)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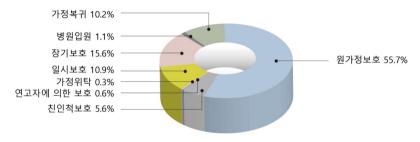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표 5-32〉와 같이 원가정보호가 572건(55.7%), 분리보호 350건(34.1%)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05건(10.2%)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사례의 최종조치결과의 원가정보호는 약 8% 낮았고, 분리보호는 약 6%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이기자				분리보호	<u>i</u>			기꾸	사망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 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가정 복귀		계
572 (55.7)	58 (5.6)	6 (0.6)	3 (0.3)	112 (10.9)	160 (15.6)	11 (1.1)	350 (34.1)	105 (10.2)	0 (0.0)	1,027 (100,0)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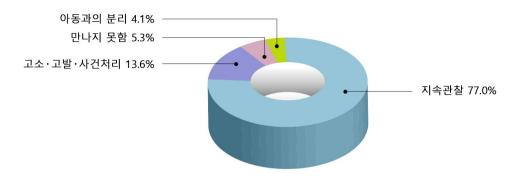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표 5-33〉과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791건 (77.0%)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40건(13.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54건(5.3%), 아동과의 분리가 42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 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한 적극적이고 강한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지속관찰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791(77.0)	140(13.6)	54(5.3)	42(4.1)	1,02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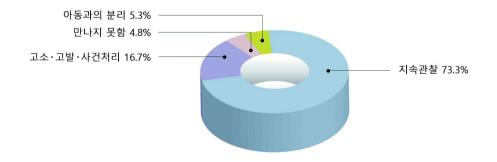
〈그림 5-2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34〉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753건 (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3.7% 감소한 수치였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 171건(16.7%), 아동과의 분리 54건(5.3%),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49건 (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753(73.3)	171(16.7)	49(4.8)	54(5.3)	1,027(100.0)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35〉와 같이 살펴보면,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의 분리 보호율보다 약 10% 더 높았다.

〈표 5-35〉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조치결과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원가정보호	11,897(73.6)	414(62.3)
		친족보호	1,057(6.5)	29(4.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7(1.0)	5(0.8)
		가정위탁	21(0.1)	2(0.3)
	분리	일시보호	2,287(14.2)	154(23.2)
구기포 <u>위</u> 경기	보호	장기보호	543(3.4)	52(7.8)
초기조치결과		병원입원	161(1.0)	9(1.4)
		기타	1(0.0)	0(0.0)
		소계	4,237(26.2)	251(37.9)
		사망	24(0.1)	0(0.0)
	가정복귀		0(0.0)	0(0.0)
		소계	16,158(100.0)	665(100.0)
	원가정보호		10,696(66.2)	346(52.0)
		친족보호	1,404(8.7)	46(6.9)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6(0.7)	4(0.6)
		가정위탁	77(0.5)	4(0.6)
	분리	일시보호	891(5.5)	80(12.0)
최종조치결과	보호	장기보호	1,728(10.7)	123(18.5)
최공조시결과		병원입원	80(0.5)	10(1.5)
		기타	1(0.0)	0(0.0)
		소계	4,287(26.6)	267(40.1)
		가정복귀	39(0.2)	0(0.0)
		사망	1,136(7.0)	52(7.8)
		소계	16,158(100.0)	665(10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6〉과 같이 비교해보면, 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재학대 사례보다 약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양육자의 경우 학대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5-36〉 2013/2014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관계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친부	7,016(43.4)	305(45.9)
	친모	5,379(33.3)	215(32.3)
부모	계부	281(1.7)	16(2.4)
	계모	376(2.3)	10(1.5)
	양부	30(0.2)	1(0.2)
	양모	30(0.2)	2(0.3)
	소계	13,112(81.1)	549(82.6)
	친조부	120(0.7)	7(1.1)
	친조모	203(1.3)	11(1.7)
	외조부	24(0.1)	1(0.2)
친인척	외조모	82(0.5)	2(0.3)
	친인척	362(2.2)	17(2.6)
	형제,자매	78(0.5)	3(0.5)
	소계	869(5.4)	41(6.2)
	부모의동거인	219(1.4)	13(2.0)
	유치원교직원	152(0.9)	O(O.O)
	초·중·고교 직원	172(1.1)	1(0.2)
	학원및교습소종사자	90(0.6)	1(0.2)
	보육교직원	491(3.0)	6(0.9)
대리양육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527(3.3)	12(1.8)
네티ㅇ팩시	기타시설종사자	43(0.3)	6(0.9)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7(0.0)	O(O.O)
	위탁부	6(0.0)	1(0.2)
	위탁모	18(0.1)	O(O.O)
	베이비시터	11(0.1)	O(O.O)
	소계	1,736(10.7)	40(6.0)
	이웃	110(0.7)	14(2.1)
타인	낯선사람	77(0.5)	8(1.2)
	소계	187(1.2)	22(3.3)
	기타	205(1.3)	9(1.4)
	파악안됨	49(0.3)	4(0.6)
	계	16,158(100.0)	665(100.0)

다. 가족유형 비교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표 5-37〉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친부모가정에서 재학대 미발생 사례에서 42.2%인 것을 볼 때 재학대 사례에서 34.0%으로 약 8%이상 낮은 수치였고, 이와 반대로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49.1%인 것과 비교하여 재학대 사례에서는 60.9%로 약 10%정도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 가족외 형태 중 특히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재학대 사례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37〉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가족유형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친부모가정	6,813(42.2)	226(34.0)
	부자가정	3,087(19.1)	160(24.1)
	모자가정	2,272(14.1)	123(18.5)
	미혼부모가정	353(2.2)	9(1.4)
친부모가족	재혼가정	1,167(7.2)	56(8.4)
외형태	친인척보호	520(3.2)	15(2.3)
	동거(사실혼포함)	512(3.2)	42(6.3)
	소년소녀가정	30(0.2)	0(0.0)
	소계	7,941(49.1)	405(60.9)
	가정위탁	42(0.3)	3(0.5)
대리양육	입양가정	63(0.4)	3(0.5)
형태	시설보호	544(3.4)	20(3.0)
	소계	649(4.0)	26(3.9)
	기타	88(0.5)	1(0.2)
	파악안됨	667(4.1)	7(1.1)
	계	16,158(100,0)	665(100 <u>.</u> 0)

^{*} Hamilton, C. E. & Browne, K. D. (1999). Recurrence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A survey of referrals to Police Child Protection Units in England. Child Maltreatment, 4(4), 275-286.

3 시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17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2%를 차지하였고, 실제로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14명*이고, 전체 피해아동 수 7,402명 중 약 0.2%에 해당한다. 사망한 사례 17건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 후에 신고접수가 된 사례는 12건, 신고접수 당시 위독한 상태였다가 현장조사 진행 중 사망한 사례는 4건, 아동이 등교하지 않아서 교육적방임으로 신고되었다가 현장조사 진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발견한 사례는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표 5-38〉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38〉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사례 비율	사망아동 명수	피해아동 중 사망아동 비율
17	0.2	14	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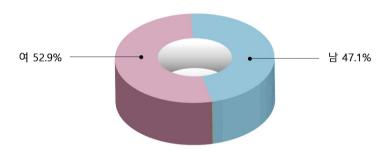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표 5-39〉와 같이 살펴본 결과, 여아가 9건(52.9%), 남아가 8건(47.1%)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남아와 여아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014}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17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14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8(47.1)
ф	9(52.9)
л	17(100.0)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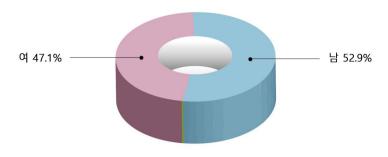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40)과 같이 살펴본 결과, 총 17건의 사례 중 남성은 9건(52.9%), 여성은 8건(47.1%)으로 남성 학대행위자의 건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성별	건수(비율)
남	9(52.9)
여	8(47.1)
Я	17(100.0)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41〉과 같이 교차 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6건과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와 양모는 각각 2건이었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14건으로 80%이상 차지한다. 이 외에 초·중·고교 직원 2건, 기타시설 종사자 1건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 났는데, 4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명, 20대 2명, 10대 1명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미만이 4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미만의 영아가 8건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사망사례는 학대행위자가 모두 친부모 및 양부모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의 경우는 자신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육 스트레스를

〈표 5-41〉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친부				친	모			양부		양모	초ㆍ중	§・ユエ	1 직원	기타 시설 종사자	계
(만)	10대	20대	30대	40대	소계	30대	40대	50대	소계	40대	50대	소계	40대	40대	50대	소계	40대	
1세 미만	1 (25.0)	1 (25.0)	0.0)	1 (25.0)	3 (75 <u>.</u> 0)	1 (25.0)	O (0.0)	0(0.0)	1 (25.0)	0 (0.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4 (100,0)
2세	0 (0.0)	1 (25.0)	0(0.0)	0 (0.0)	1 (25 <u>.</u> 0)	1 (25.0)	0 (0.0)	0 (0.0)	1 (25.0)	0 (0.0)	1 (25.0)	1 (25.0)	1 (25.0)	0(0.0)	0(0.0)	0 (0.0)	0 (0.0)	4 (100.0)
5세	0 (0.0)	0(0.0)	0(0.0)	0(0.0)	0 (0.0)	0 (0.0)	0(0.0)	0 (0.0)	0 (0 <u>.</u> 0)	1 (50.0)	0 0.0	1 (50 <u>.</u> 0)	1 (50.0)	0 (0.0)	0(0.0)	0 (0.0)	0 (0.0)	2 (100.0)
6세	0 (0.0)	0 (0.0)	O (0.0)	0 (0.0)	0 (0.0)	0 (0.0)	1 (100.0)	O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1세	0 (0.0)	0.0)	O (0.0)	1 (50 <u>.</u> 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0 (0.0)	0 (0.0)	2 (100.0)
12세	0 (0.0)	0.0)	O (0.0)	0.0)	0 (0.0)	0 (0.0)	O (0.0)	O (0.0)	O (0.0)	0 (0.0)	0.0)	O (0.0)	0 (000)	0 (0.0)	0.0)	0 (0.0)	1 (100.0)	1 (100.0)
15세	0 (0.0)	0.0)	1 (50.0)	0.0)	1 (50.0)	0 (0.0)	O (0.0)	O (0.0)	0 (0.0)	0 (0.0)	0.0)	0 (0.0)	0 (0.0)	1 (50.0)	0.0)	1 (50.0)	0 (0.0)	2 (100.0)
17세	0 (0.0)	0(0.0)	0(0.0)	0 (0.0)	0 (0.0)	0 (0.0)	0(0.0)	0 (0.0)	0 (0,0)	0 (0.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계 	1 (5.9)	2 (11.8)	1 (5.9)	2 (11.8)	6 (35,3)	2 (11.8)	1 (5.9)	1 (5,9)	4 (23.5)	1 (5,9)	1 (5.9)	2 (11.8)	2 (11.8)	1 (5,9)	1 (5.9)	2 (11.8)	1 (5,9)	17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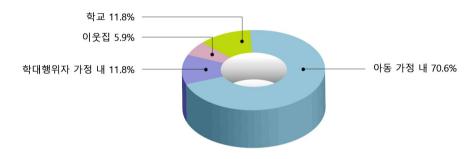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2건(70.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2건(11.8%)으로 나타났고,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1건 (5.9%)이었다.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건, 명, %)

발생장소	건수(비율)	명수(비율)
아동 가정 내	12(70.6)	10(71.4)
학대행위자 가정 내	2(11.8)	1(7.1)
이웃집	1(5.9)	1(7.1)
학교	2(11.8)	2(14.3)
л Д	17(100.0)	14(100.0)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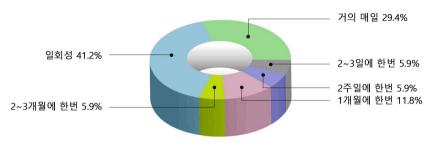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학대 발생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일회성이 7건으로 41.2%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회적인 학대행위일지라도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사망아동 사례는 5건(29.4%), 1개월에 에 한 번은 2건(11.8%), 2~3일에 한 번 1건(5.9%), 2주일에 한 번 1건(5.9%), 2~3개월에 한 번 1건(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명, %)

발생빈도	건수(비율)	명수(비율)
거의 매일	5(29.4)	3(21.4)
2~3일에 한 번	1(5.9)	1(7.1)
2주일에 한 번	1(5.9)	1(7.1)
1개월에 한 번	2(11.8)	2(14,3)
2~3개월에 한 번	1(5.9)	1(7.1)
일회성	7(41.2)	6(42.9)
Й	17(100.0)	14(100.0)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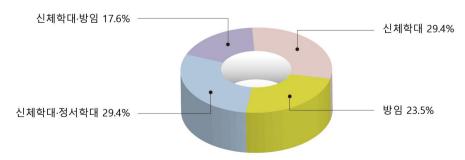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 중에서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가 5건(29,4%)이었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가 3건(17.6%)이었다.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 5건(29.4%), 방임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 4건(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명, %)

학대	유형	건수(비율)	명수(비율)
신체	학대	5(29.4)	5(35.7)
방	임	4(23.5)	3(21.4)
	신체학대·정서학대	5(29.4)	4(28.6)
중복학대	신체학대·방임	3(17.6)	2(14.3)
	소계	8(47.1)	6(42.9)
	1	17(100.0)	14(100.0)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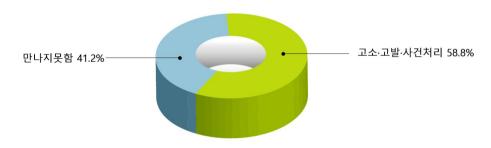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5-45〉와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0건(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7건(41.2%)으로 조사되었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접수 되어 이미 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10(58,8)	7(41.2)	17(100.0)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본 절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초·중· 고교 직원, 유치원교직원, 기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례는 745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177건, 초·중·고교 직원 145건, 유치원교직원 99건, 기타시설 종사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표 5-46〉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262건(35.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33건(17.9%), 경상남도 81건(10.9%) 순이었다. 시설 종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24건(42.0%)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직원과 초·중·고교 직원은 전라남도가 각 각 30건(30.3%), 67건(46.2%)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 의 경우 각각 84건(47.5%). 24건(82.8%)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지역 및	종사자 유형 빚 기관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서울특별시	O(O,O)	0(0.0)	O(O,O)	O(O,O)	0(0.0)	O(O.O)
	서울특별시동부	5(1.7)	0(0.0)	O(O.O)	O(O.O)	O(O.O)	5(0.7)
	서울강서	2(0.7)	0(0.0)	1(0.7)	O(O.O)	O(O.O)	3(0.4)
서울	서울은평	O(O.O)	0(0.0)	O(O.O)	O(O.O)	O(O.O)	0(0.0)
시굴	서울영등포	19(6.4)	O(O,O)	O(O,O)	1(0.6)	2(6.9)	22(3.0)
	서울성북	1(0.3)	0(0.0)	O(O.O)	O(O.O)	O(O.O)	1(0,1)
	서울마포	O(O.O)	0(0.0)	1(0.7)	O(O.O)	O(O.O)	1(0,1)
	소 계	27(9.2)	0(0.0)	2(1.4)	1(0.6)	2(6.9)	32(4.3)
	부산광역시	1(0.3)	O(O.O)	7(4.8)	O(O.O)	O(O.O)	8(1.1)
부산	부산동부	4(1.4)	17(17.2)	2(1.4)	6(3.4)	0(0.0)	29(3,9)
	소 계	5(1.7)	17(17.2)	9(6.2)	6(3.4)	0(0.0)	37(5.0)

(계속)

(단위 : 건, %)

_							(단위: 건, %)
지역 및	종사자 유형 및 기관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대구광역시	1(0,3)	0(0.0)	8(5.5)	0(0,0)	0(0.0)	9(1.2)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2(0,7)	0(0.0)	0(0.0)	0(0,0)	0(0,0)	2(0.3)
	소계	3(1.0)	0(0.0)	8(5.5)	0(0.0)	0(0.0)	11(1.5)
	인천광역시	11(3.7)	1(1.0)	0(0.0)	0(0.0)	0(0.0)	12(1.6)
	인천북부	1(0.3)	0(0.0)	0(0.0)	1(0.6)	0(0.0)	2(0.3)
인천	인천미추홀	2(0.7)	0(0.0)	1(0.7)	0(0.0)	0(0.0)	3(0.4)
		14(4.7)	1(1.0)	1(0.7)	1(0.6)	0(0.0)	17(2,3)
교	.,				0(0.0)	0(0.0)	6(0.8)
<u>광주</u> 대전	광주광역시	3(1.0) 4(1.4)	1(1.0) 1(1.0)	2(1.4) 0(0.0)	1(0.6)	0(0.0)	
^{내신} _ 울산	대전광역시	4(1.4)	1(1.0)	3(2.1)	0(0.0)	0(0.0)	6(0.8)
출신	울산광역시						8(1,1)
	경기도	3(1.0)	2(2.0)	3(2.1)	1(0.6)	0(0.0)	9(1.2)
	경기북부	6(2.0)	0(0.0)	0(0.0)	2(1.1)	0(0.0)	8(1.1)
	경기성남	1(0.3)	0(0.0)	0(0.0)	17(9.6)	0(0.0)	18(2.4)
	경기고양	11(3.7)	0(0.0)	0(0.0)	0(0.0)	0(0.0)	11(1.5)
	경기부천	36(12.2)	17(17.2)	1(0.7)	9(5.1)	8(27.6)	71(9.5)
경기	경기화성	6(2.0)	1(1.0)	0(0.0)	20(11.3)	0(0.0)	27(3,6)
	경기남양주	11(3.7)	O(O.O)	1(0.7)	0(0.0)	0(0.0)	12(1.6)
	안산시	25(8.5)	0(0.0)	4(2.8)	31(17.5)	0(0.0)	60(8,1)
	경기용인	2(0.7)	0(0.0)	1(0.7)	4(2.3)	16(55.2)	23(3,1)
	경기시흥	23(7.8)	0(0.0)	0(0.0)	0(0.0)	0(0.0)	23(3,1)
	소 계	124(42.0)	20(20.2)	10(6.9)	84(47.5)	24(82.8)	262(35,2)
	강원도	1(0.3)	0(0.0)	0(0.0)	2(1.1)	0(0.0)	3(0.4)
7101	강원동부	3(1.0)	0(0.0)	1(0.7)	0(0.0)	0(0.0)	4(0.5)
강원	원주시	3(1.0)	0(0.0)	0(0.0)	3(1.7)	0(0.0)	6(0.8)
	소 계	7(2.4)	0(0.0)	1(0.7)	5(2.8)	0(0.0)	13(1.7)
	충청북도	1(0.3)	0(0.0)	2(1.4)	34(19.2)	1(3.4)	38(5.1)
	충북북부	1(0.3)	0(0.0)	0(0.0)	10(5.6)	0(0.0)	11(1.5)
충북	충북남부	0(0.0)	0(0.0)	0(0.0)	0(0.0)	0(0.0)	0(0.0)
	소 계	2(0.7)	0(0.0)	2(1.4)	44(24.9)	1(3.4)	49(6.6)
	충청남도	3(1.0)	1(1.0)	0(0.0)	0(0.0)	0(0.0)	4(0.5)
	충청남도남부	0(0.0)	0(0.0)	0(0.0)	1(0.6)	0(0.0)	1(0.1)
충남	충청남도서부	3(1.0)	0(0.0)	0(0.0)	0(0.0)	0(0.0)	3(0.4)
	소 계	6(2.0)	1(1.0)	0(0.0)	1(0.6)	0(0.0)	8(1.1)
	전라북도	9(3.1)	6(6.1)	0(0.0)	2(1.1)	0(0.0)	17(2,3)
	전라북도서부	5(1.7)	0(0.0)	4(2.8)	2(1.1)	0(0.0)	11(1.5)
전북	전라북도동부	0(0.0)	0(0.0)	0(0.0)	0(0.0)	1(3.4)	1(0.1)
	소계	14(4.7)	6(6.1)	4(2.8)	4(2,3)	1(3.4)	29(3,9)
	전라남도	18(6.1)	21(21.2)	2(1,4)	0(0.0)	1(3.4)	42(5.6)
	전남서부권	1(0.3)	6(6.1)	0(0.0)	2(1.1)	0(0.0)	9(1.2)
전남	전남중부권	1(0.3)	3(3.0)	65(44.8)	13(7.3)	0(0.0)	9(1.2) 82(11.0)
	소계	20(6.8)	30(30.3)	67(46.2)	15(7.5)	1(3.4)	133(17.9)
	경북남부	1(0.3)	0(0.0)	0(0.0)	5(2.8)	0(0.0)	6(0.8)
	경국금구 경북북부	1(0.3)	0(0.0)	0(0.0)	0(0.0)	0(0.0)	1(0.1)
경북						0(0.0)	1(0.1)
성독	경북동부 경보서보	1(0.3)	0(0.0)	0(0.0)	0(0.0)		
	경북서부	4(1.4)	0(0.0)	0(0.0)	1(0.6)	0(0.0)	5(0,7)
	소계	7(2.4)	0(0.0)	0(0.0)	6(3.4)	0(0.0)	13(1.7)
741 6	경상남도 경남남日	10(3.4)	21(21.2)	36(24.8)	8(4.5)	0(0.0)	75(10.1)
경남	경남서부	5(1.7)	0(0.0)	0(0.0)	1(0.6)	0(0.0)	6(0,8)
	소 계	15(5.1)	21(21.2)	36(24.8)	9(5.1)	0(0.0)	81(10.9)
T!! T	제주특별자치도	8(2.7)	0(0.0)	0(0.0)	0(0,0)	0(0.0)	8(1.1)
제주	서귀포시	32(10.8)	0(0.0)	0(0.0)	0(0.0)	0(0.0)	32(4.3)
	소계	40(13.6)	0(0.0)	0(0.0)	0(0.0)	0(0.0)	40(5.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을 〈표 5-47〉과 같이 살펴보면 남아가 484건 (65.0%), 여아가 261건(35.0%)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시설 종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종사자 유형	남	여	계
보육교직원	194(65.8)	101(34.2)	295(100.0)
유치원교직원	59(59.6)	40(40.4)	99(100.0)
초·중·고교 직원	97(66.9)	48(33.1)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4(64.4)	63(35.6)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20(69.0)	9(31.0)	29(100.0)
계	484(65,0)	261(35,0)	745(100.0)

(단위:%)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연령을 〈표 5-48〉과 같이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3세가 177건(60.0%), 만 4~6세 103건(34.9%) 순으로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만 4~6세가 88건(8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만 13~15세가 62건(42.8%), 만 10~12세 52건(35.9%), 만 7~9세 18건(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종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해당하는 아동 연령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세~15세 54건(30.5%), 만 10~12세 53건(29.9%), 만 7~9세 37건(20.9%) 순으로 높았고,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7~9세 10건(34.5%), 만 13~15세 9건 (31.0%), 만 10~12세 7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종사자 유형 연령(만)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1세 미만	2(0.7)	O(O.O)	O(O.O)	O(O.O)	O(O.O)	2(0.3)
1~3세	177(60.0)	11(11.1)	O(O.O)	3(1.7)	O(O.O)	191(25.6)
4~6세	103(34.9)	88(88.9)	3(2.1)	9(5.1)	1(3.4)	204(27.4)
7~9세	6(2.0)	O(O.O)	18(12.4)	37(20.9)	10(34.5)	71(9.5)
10~12세	7(2.4)	O(O.O)	52(35.9)	53(29.9)	7(24.1)	119(16.0)
13~15세	O(O.O)	O(O.O)	62(42.8)	54(30.5)	9(31.0)	125(16.8)
16~17세	O(O.O)	O(O.O)	10(6.9)	21(11.9)	2(6.9)	33(4.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 (100.0)	29(100.0)	745(100.0)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표 5-49〉와 같이 살펴보면 특성 없음이 547건(62.9%) 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서·정신건강 특성에서 각각 69건(21,2%), 38건(36,2%), 46건(2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 직원과 기타시설 종사자는 적응·행동의 특성에서 18건 (10.9%), 9건(20.5%)으로 특성없음을 제외하고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적장애	3(0.9)	O(O.O)	3(1.8)	2(0.9)	O(O.O)	8(0.9)
TIOU	정신적장애	8(2.5)	1(1.0)	4(2.4)	3(1.3)	1(2,3)	17(2,0)
장애	장애의심	2(0.6)	O(O.O)	0(0.0)	1(0.4)	O(O.O)	3(0.3)
	소계	13(4.0)	1(1.0)	7(4.2)	6(2,6)	1(2,3)	28(3,2)
	주의산만	19(5.8)	27(25.7)	1(0.6)	8(3.5)	3(6.8)	58(6.7)
정서	과잉행동	6(1.8)	1(1.0)	1(0.6)	3(1.3)	O(O.O)	11(1.3)
정시 정신 건강	인터넷(게임)중독	0(0.0)	O(O.O)	0(0.0)	0(0.0)	1(2,3)	1(0,1)
	불안	30(9.2)	9(8.6)	3(1.8)	16(7.0)	1(2,3)	59(6.8)
	애착 문 제	5(1.5)	O(O.O)	0(0.0)	4(1.7)	O(O.O)	9(1.0)

(계속)

(단위 : 건, %)

EH	종사자 유형	보육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기타시설	계
특성		교직원	교직원	직원	종사자	종사자	
	무력감	0(0.0)	0(0.0)	1(0.6)	3(1.3)	0(0.0)	4(0.5)
정서	우울	0(0.0)	0(0.0)	1(0.6)	1(0.4)	0(0.0)	2(0.2)
정신	낮은 자아존중감	2(0.6)	0(0.0)	1(0.6)	10(4.4)	0(0.0)	13(1.5)
건강	성격 및 기질문제	5(1.5)	1(1.0)	0(0.0)	1(0.4)	2(4.5)	9(1.0)
	탐식 및 결식	2(0.6)	0(0.0)	0(0.0)	0(0.0)	0(0.0)	2(0.2)
	소계	69(21.2)	38(36.2)	8(4.8)	46(20.1)	7(15.9)	168(19.3)
	반항·충동·공격성	4(1.2)	0(0.0)	2(1.2)	8(3.5)	3(6.8)	17(2.0)
	거짓말	0(0.0)	0(0.0)	1(0.6)	6(2.6)	0(0.0)	7(0,8)
	도벽	0(0.0)	0(0.0)	1(0.6)	6(2.6)	0(0.0)	7(0,8)
	가출	0(0.0)	0(0.0)	0(0.0)	6(2.6)	1(2.3)	7(0.8)
	약물·흡연·음주	0(0.0)	0(0.0)	1(0.6)	2(0.9)	1(2.3)	4(0.5)
	성문제	0(0.0)	0(0.0)	7(4.2)	0(0.0)	0(0.0)	7(0.8)
적응	학교 부적응	0(0.0)	1(1.0)	1(0.6)	1(0.4)	1(2,3)	4(0.5)
ㅋo 행동	잦은결석,무단결과	0(0.0)	O(O.O)	1(0.6)	1(0.4)	1(2.3)	3(0,3)
00	늦은 귀가	0(0.0)	O(O.O)	0(0.0)	0(0.0)	0(0.0)	0(0.0)
	학습문제	0(0.0)	O(O.O)	0(0.0)	2(0.9)	1(2.3)	3(0.3)
	폭력행동	2(0.6)	O(O.O)	2(1.2)	2(0.9)	0(0.0)	6(0.7)
	비행집단활동	O(O,O)	O(O.O)	0(0.0)	1(0.4)	O(O,O)	1(0.1)
	불건전한또래관계	0(0.0)	O(O.O)	1(0.6)	0(0.0)	0(0.0)	1(0.1)
	대인관계기피	0(0.0)	0(0.0)	1(0.6)	0(0.0)	1(2.3)	2(0.2)
	소계	6(1.8)	1(1.0)	18(10.9)	35(15.3)	9(20.5)	69(7.9)
	신체발달지연	3(0.9)	O(O.O)	0(0.0)	0(0.0)	2(4.5)	5(0.6)
	언어문제	8(2.5)	1(1.0)	4(2.4)	3(1.3)	2(4.5)	18(2.1)
	영양결핍	0(0.0)	0(0.0)	0(0.0)	0(0.0)	1(2.3)	1(0.1)
발달	대소변문제	3(0.9)	0(0.0)	0(0.0)	1(0.4)	0(0.0)	4(0.5)
신체	위생문제	3(0.9)	0(0.0)	1(0.6)	0(0.0)	0(0.0)	4(0.5)
건강	틱(음성,신체,뚜렛)	0(0.0)	O(O.O)	1(0.6)	1(0.4)	0(0.0)	2(0,2)
	잦은병치레	1(0.3)	0(0.0)	0(0.0)	0(0.0)	0(0.0)	1(0.1)
	주요병력	2(0.6)	1(1.0)	0(0.0)	2(0.9)	0(0.0)	5(0.6)
	소계	20(6.1)	2(1.9)	6(3.6)	7(3.1)	5(11.4)	40(4.6)
	특성 없음	214(65.6)	61(58.1)	124(75.2)	126(55.0)	22(50.0)	547(62.9)
	기타	4(1.2)	2(1.9)	2(1.2)	9(3.9)	0(0.0)	17(2.0)
	계	326(100.0)	105(100.0)	165(100.0)	229(100.0)	44(100.0)	869(100.0)

※중복포함

(단위:%)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50〉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510건(68.5%), 남성이 235건(31.5%)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교직원은 여성이 각각 288건(97.6%), 98건(9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초·중·고교 직원은 남성이 119건(82.1%)으로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는 없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 11 = 1, 1-
성별 종사자 유형	남	여	계
보육교직원	7(2.4)	288(97.6)	295(100.0)
유치원교직원	1(1.0)	98(99.0)	99(100.0)
초·중·고교 직원	119(82.1)	26(17.9)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91(51.4)	86(48.6)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17(58.6)	12(41.4)	29(100.0)
계	235(31.5)	510(68.5)	745(100.0)

(단위:%)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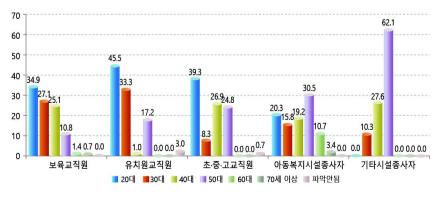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표 5-51〉과 같이 살펴보면 20대가 241건(32.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156건(20.9%)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설 종사자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20대(34.9%), 30대(27.1%), 40대(25.1%)로 20~40대에 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20대(45.5%)와 30대(33.3%)에 집중되어있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20대(39.3%)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6.9%), 50대(24.8%)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50대(30.5%)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고루 분포하여 있고, 기타시설 종사자는 다른 시설 종사자 유형과 달리 50대(62.1%)에 집중되어 있고, 40대(27.6%)도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다른 시설 종사자의 유형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연령(만)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20~29세	103(34.9)	45(45.5)	57(39.3)	36(20.3)	O(O.O)	241(32,3)
30∼39세	80(27.1)	33(33.3)	12(8.3)	28(15.8)	3(0.3)	156(20,9)
40~49세	74(25.1)	1(1.0)	39(26.9)	34(19.2)	8(27.6)	156(20,9)
50~59세	32(10.8)	17(17.2)	36(24.8)	54(30.5)	18(62,1)	157(21.1)
60~69세	4(1.4)	O(O.O)	O(O.O)	19(10.7)	O(O.O)	23(3,1)
70세 이상	2(0.7)	O(O.O)	O(O.O)	6(3.4)	O(O.O)	8(1,1)
파악안됨	O(O.O)	3(3.0)	1(0.7)	O(O.O)	O(O.O)	4(0.5)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단위:%)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52〉와 같이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없음이 368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96건(66.4%)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초·중·고교 직원은 특성없음이 226건(57.4%)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378건(64.0%), 42건(7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특성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적 장애	0(0.0)	0(0.0)	0(0.0)	O(O.O)	0(0.0)	0(0.0)
정신적 장애	O(O.O)	O(O.O)	0(0.0)	O(O.O)	0(0.0)	0(0,0)
장애의심	O(O.O)	O(O.O)	0(0.0)	O(O.O)	0(0.0)	0(0.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74(33.8)	196(66.4)	110(27.9)	378(64.0)	42(71.2)	1,000(46.5)
중 독문 제	0(0.0)	0(0.0)	0(0.0)	0(0.0)	0(0.0)	0(0.0)
질환문제	0(0.0)	0(0.0)	0(0.0)	0(0.0)	0(0.0)	0(0.0)
성격 및 기질문제	61(7.5)	5(1.7)	6(1.5)	13(2.2)	9(15.3)	94(4.4)
위생문제	0(0.0)	0(0.0)	0(0.0)	O(O.O)	0(0.0)	0(0.0)
나태 및 무기력	0(0.0)	0(0.0)	0(0.0)	0(0.0)	0(0.0)	0(0.0)
난독해, 난작문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1(6.3)	0(0.0)	2(0.5)	11(1.9)	2(3.4)	66(3,1)
어릴 적 학대 경험	0(0.0)	0(0.0)	2(0.5)	O(O.O)	0(0.0)	2(0.1)
폭력성	0(0.0)	0(0.0)	0(0.0)	O(O.O)	0(0.0)	0(0,0)
전과력	1(0.1)	0(0.0)	0(0.0)	O(O.O)	0(0.0)	1(0.0)
성문제	1(0.1)	0(0.0)	25(6.3)	44(7.4)	0(0.0)	70(3,3)
원치 않은 아동	0(0.0)	0(0.0)	0(0.0)	0(0.0)	0(0.0)	0(0.0)
부부 및 가족갈등	3(0.4)	0(0.0)	0(0.0)	0(0.0)	0(0.0)	3(0.1)
종교문제	0(0.0)	0(0.0)	6(1.5)	0(0.0)	0(0.0)	6(0,3)
특성없음	368(45.4)	81(27.5)	226(57.4)	118(20.0)	4(6.8)	797(37.1)
파악안됨	51(6.3)	13(4.4)	17(4.3)	27(4.6)	2(3.4)	110(5,1)
계	810(100.0)	295(100.0)	394(100.0)	591(100.0)	59(100.0)	2,149(100.0)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표 5-53〉과 같이 살펴보았다.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보육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로 각각 145건(49.2%), 67건(46.2%), 15건(51.7%)이었다.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정서학대가 41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8건(38.4%)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ピカ・セ, /0)
학대유	종사자유형 양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49(16.6)	24(24.2)	33(22.8)	68(38.4)	2(6.9)	176(23,6)
	정서학대	68(23.1)	41(41.4)	34(23.4)	50(28.2)	12(41.4)	205(27,5)
	성 학 대	1(0.3)	2(2.0)	11(7.6)	5(2.8)	O(O.O)	19(2,6)
	방 임	32(10.8)	4(4.0)	0(0.0)	1(0.6)	O(O.O)	37(5.0)
	신체학대·정서학대	122(41.4)	26(26.3)	67(46.2)	43(24.3)	14(48.3)	272(36.5)
	신체학대·성학대	0(0.0)	O(O.O)	0(0.0)	1(0.6)	O(O.O)	1(0.1)
	신체학대·방임	0(0.0)	O(O.O)	0(0.0)	0(0.0)	O(O.O)	0(0.0)
	정서학대·성학대	0(0.0)	O(O.O)	0(0.0)	0(0.0)	O(O.O)	0(0.0)
	정서학대·방임	8(2.7)	2(2.0)	0(0.0)	0(0.0)	O(O.O)	10(1.3)
중복	성학대·방임	0(0.0)	O(O.O)	0(0.0)	0(0.0)	O(O.O)	0(0.0)
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0.0)	O(O.O)	0(0.0)	7(4.0)	O(O.O)	7(0.9)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15(5.1)	O(O.O)	0(0.0)	2(1.1)	1(3.4)	18(2,4)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O(O.O)	0(0.0)	0(0.0)	0(0.0)	0(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0.0)	O(O.O)	0(0.0)	0(0.0)	0(0.0)	0(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소계	145(49.2)	28(28.3)	67(46.2)	53(29.9)	15(51.7)	308(41.3)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중복포함

(단위:%)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54〉와 같이 살 펴보면 정서학대가 512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474건(44.0%), 방임 65건(6.0%), 성학대 27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 학대가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설 좋사자 유형에서 가장 높은 학대유형은 정서학대였다.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종사자유형 학대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186(40.9)	50(39.4)	100(47.2)	121(50.6)	17(37.8)	474(44.0)
정서학대	213(46.8)	69(54.3)	101(47.6)	102(42.7)	27(60.0)	512(47.5)
성 학 대	1(0.2)	2(1.6)	11(5.2)	13(5.4)	O(O.O)	27(2.5)
방 임	55(12.1)	6(4.7)	0(0.0)	3(1.3)	1(2,2)	65(6.0)
계	455(100.0)	127(100.0)	212(100,0)	239(100.0)	45(100.0)	1078(100.0)

※중복포함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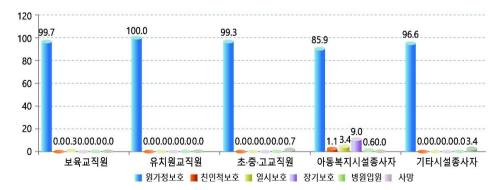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55〉와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는 95%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분리보호가 14.1%로 다른 시설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분리보호율을 보였다.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조치결과	원가정	분리보호 가정				الد		
종사자유형	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사망	소계	계
보육교직원	294(99.7)	0(0.0)	1(0.3)	0(0.0)	0(0.0)	0(0.0)	1(0.3)	295(100.0)
유치원교직원	99(100.0)	0(0.0)	0(0.0)	0(0.0)	0(0.0)	0(0.0)	0(0.0)	99(100.0)
초·중·고교 직원	144(99.3)	0(0.0)	0(0.0)	0(0.0)	0(0.0)	1(0.7)	1(0.7)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2(85.9)	2(1.1)	6(3.4)	16(9.0)	1(0.6)	0(0.0)	25(14.1)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28(96.6)	0(0.0)	0(0.0)	0(0.0)	0(0.0)	1(3.4)	1(3.4)	29(100.0)
계	717(96,2)	2(0,3)	7(0.9)	16(2,1)	1(0.1)	2(0,3)	28(3,8)	745(100.0)

(단위 : %)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56)과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 리가 361건(48.5%), 지속관찰이 305건(40.9%), 아동과의 분리 78건(10.5%), 학대행위자를 만 나지 못한 사례가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조치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속관찰은 초·중·고교 직원이 80.0%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고, 아동과의 분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6.0%로 다른 종사자 유형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고소 · 고발 · 사건처리의 경우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이 각각 70.5%, 65.7%로 다른 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조치결과 종사자유형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 고발 ·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73 (24.7)	14 (4.7)	208 (70.5)	0 (0.0)	295 (100,0)
유치원교직원	19 (19.2)	15 (15.2)	65 (65.7)	0 (0.0)	99 (100.0)
초·중·고교 직원	116 (80.0)	1 (0.7)	28 (19.3)	0 (0.0)	1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7 (49.2)	46 (26.0)	44 (24.9)	0 (0.0)	177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0 (34.5)	2 (6.9)	16 (55.2)	1 (3.4)	29 (100.0)
계	305 (40.9)	78 (10,5)	361 (48.5)	1 (0.1)	745 (100.0)

(단위:%)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1. 상담원 업무량
- 2.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본 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해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인력의 업무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상담원은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교육·홍보·협력사업과 같은 관련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업무량을 산출하고자 심리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횟수 와 심리치료 횟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전체 심리치료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진행된 것과 외부 심리치료서비스기관에서 받은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을 포함시키기 않았다.

1 ▮ 상담원 업무량

1) 상담원 1인 업무량

전체 신고접수 건수 17,791건 중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8건을 제외하고, 51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17,773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이 학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의심된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5,025건을 대상으로 총 30,62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현장조사 업무는 상담원 2인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량으로 산출하면 현장조사 실건수에 2배인 61,242회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판단하는데,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학대의 감소,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은 488,326회이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에게 총 13,83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등을 활용하여 11,254,082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협력사업의 경우 총 1,288회에 걸쳐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실시기도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업무량을 기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사무원을 제외한 상담원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사례는 48.8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어 현장조사를실시한 횟수는 1인당 168.2회로 산출되었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총 1,341.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교육·홍보·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38회, 홍보사업 30,917.8회, 협력사업 3.5회로 집계되었다.

〈표 6-1〉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 건, 회)

업무	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신고접수	17,773	48.8	
상담지원사업	현장조사	61,242	168.2	
	서비스제공	488,326	1,341.6	
	교육사업	13,831	38.0	
교육·홍보·협력 사업	홍보사업	11,254,082	30,917.8	
	협력사업	1,288	3.5	

미국의 경우 CPS(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역할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서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원들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모두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누적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광범위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상담원이 신고접수를 받거나 또는 경찰에게 통보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이동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된다. 또한 현장조사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담임교사, 이웃 등 주변인 등을 만나 이루어진다. 정확한 학대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2회 정도 진행이 된다. 그 이후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서비스를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계획 한 뒤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관리 중 학대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정 및 아동의 학교 또는 어린 이집(유치워) 방문하며,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및 가족이 기관 내에서 상담ㆍ치료를 진행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상담원이 직접 매주 치료 이동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사례가 종결되면 3개월 이상 학대 재발 위험성은 없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상담원은 한 사례를 개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국가이동학대 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담한 시간에 약 1.5배~2배의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담당 사례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와 방문서비스 시 상담워 2인 동행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사례보다 업무량이 1.5배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관리는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 는 사례 뿌 만 아니라 기존에 종결되지 않고 누적된 사례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원 1인당 평균 57.7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사례관리와 관련하 미국 의 선생연구에서는 Iowa 사례관리 모델 내 집중서비스 제공의 경우 1인당 15사례, 최소한 의 서비스 제공의 경우 1인당 50사례가 적정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워의 업무량 산출 및 1인당 적정한 아동학대 사례 수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관별 상담원 업무량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은 〈표 6-2〉와 같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661건), 현장조사(2,572건), 서비스 제공(29,266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신고접수에 비례하여 현장조사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사업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960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고, 홍보사업은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8,188,013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으며, 협력사업은 강원동부아동보호전 문기관이 119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다.

상담워의 과도한 업무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개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4년 기준 추계아동인구가 9,099,339명인 반면 상담원의 수는 364명으로 우리나라는 상담원 1인당 약 24,99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동인구가 9,174,877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상담원은 4,932명이고**, 상담원 1인당 약 1,860명을 담당

^{*} Hall, J.A, Carswell, C., Walsh, E., Huber, D.L., and Jampoler, J. S. (2002). Iowa Case Management: Innovative Social Casework, Social Work, 47(2). 132-141.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약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담원에게 많은 양의 업무가부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을 야기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아동학대사례개입의 질적 저하 및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15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488억*을 확보함으로써 상담원 충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중설 등 아동보호서비스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개소와 상담원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 예산은 범죄피해자기금으로 불안정한 예산이기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의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편성된 인건비 또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의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4), Child Maltreatment 2013,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300억,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144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3억,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30억으로 2015년 예산이 편성됨.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 명, 건, 회)

		HELOI					(단	위 : 명, 건, 회)
지역 및 기	항목 관	상담원 (기관장 제외)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교육사업	홍보사업	협력사업
	서울특별시	7	347	868	–	7	13,824	36
	서울특별시동부	7	581	1,914	14,783	72	3,707	13
	서울강서 서울은평	6	330 275	1,056 828	6,955 7,351	166 367	11 509	25 9
서울*	시 <u>둘</u> 는 등 서울영등포	6	301	1.014	5,385	242	11	0
시크	서울성북	5	197	792	8,264	284	18	41
	서울마포	8	305	896	8,539	61	9	9
	서울동남권	5	_	_	7,156	778	3,611	52
	소 계	50	2,336	7,368	58,433	1,977	21,700	185
	부산광역시	5	389	1,470	13,026	164	17,922	11
부산	부산동부	5	411	1,752	6,307	40	12,751	12
	<u>소</u> 계 대구광역시	7	800 336	3,222 1,212	19,333 8,780	204 412	30,673 8,188,013	23 38
대구	대구공칙시 대구광역시남부	7	305	990	10,955	169	7,182	6
네ㅜ	스케 소계	14	641	2,202	19,735	581	8,195,195	44
	인천광역시	9	689	1,820	29,855	1,960	52,351	4
인천	인천북부	5	222	698	7,233	38	3,362	4
단엔	인천미추홀**	3	96	458	53	25	3,031	0
	소계	17	1,007	2,976	37,141	2,023	58,744	8
광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7	283	822	5,707	462	89,380	36
<u>대전</u> 울산	내선광역시 울산광역시	10	365 668	1,372 2,126	6,141 4,427	203 92	54 3.913	42 9
출신	물전용역시 경기도	9	451	1,514	12,483	281	11,257	62
	경기북부	9	450	1,814	11.417	253	20,272	0
	경기성남	8	460	1,766	13,114	449	20,532	98
	경기고양	8	406	1,604	9,064	196	15,561	0
-1-1	경기부천 경기화성	7	497	1,526	17,381	103	4,184	14
경기	경기화성	9	474	1,580	11,687	208	5,877	6
	경기남양주 안산시	5 9	252 598	1,022 2,076	9,342 22,887	347 20	16,712 4,259	41 35
	원선시 경기용인	6	366	1.348	8.344	161	127	3
	경기시흥	6	327	1,180	8,918	423	3,457	8
	소 계	76	4,281	15,430	124,637	2,441	102,238	267
	강원도	7	196	610	7,299	249	1,502,291	73
강원	강원동부	7	279	852	6,804	298	52,518	119
0.2	원주시	5	200	640	8,150	182	4,584	0
	소 계 충청북도	19 10	675 420	2,102 1,344	22,253 15,741	729 773	1,559,393 16,375	192 23
	중성국도 충북북부	6	220	858	5,224	41	27,115	61
충북	중북남부 중북남부	5	118	372	9,631	198	21,768	86
	소 계	21	758	2,574	30,596	1,012	65,258	170
	충청남도	9	478	1,594	10,443	308	9,219	5
충남	중정남도남부	6	268	1,010	5,260	120	96,618	3
0 0	충청남도서부	6	55	214	1,226	53	4,153	0
	소계	10	801 602	2,818 2,124	16,929	481 545	109,990	1
	전라북도 전라북도서부	10	603	1,838	13,003 10,213	338	48,325 8,214	9
전북	전라북도동부	5	229	788	9,121	314	26,823	2
	소 계	25	1,434	4,750	32,337	1,197	83,362	12
	전라난도	7	392	1,308	9,773	286	72,035	31
전남	전남서부권 전남중부권	7	246	786	7,341 10,241	337	3,977	0
	선남숭무권	7	290	1,400	10,241	211	25,102	4
	소 계 경북남부	21 8	928 297	3,494 870	27,355 5,320	834 118	101,114 26,875	35 22
	경부부부	7	236	1,158	7,301	192	17,420	22 41
경북***	경북동부	8	316	1,130	11,542	225	3,314	29
<u> </u>	경북서부	8	310	896	8,797	90	57,900	16
	소 계	31	1,159	4,136	32,960	625	105,509	108
741.1	경상남도	17	661	2,572	29,850	271	96,112	69
경남	경남서부	9	351	1,302	10,154	109	42,451	48
	소 계 제주특별자치도	26 4	1,012 321	3,874 962	40,004 5,727	380 498	138,563 472,941	117 14
제주	세수특별사시도 서귀포시	4	304	1,014	4,611	498 92	116,055	18
AIT.	소 계	8	625	1,014	10,338	590	588,996	32
		364	17,773	61,242	488,326	13,831	11,254,082	1,288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에 사례판단까지 진행하고,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 서비스 제공을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마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3) 지역별 상담원 1인 업무량

다음으로 〈표 6-3〉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아동학대사례 수를 각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4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전체 상담원 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담원 1인이 약 28.5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이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2014년에 들어서도 종결되지 않은 13,909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수는 총 38.0건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4년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사례수는 전국 평균 66.5건이었다.

2014년 신고 사례와 이전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 수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1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81.6건, 경기도가 78.7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39.4건과 41.3건으로 가장 적었다. 상담원 1인에게 할당되는 아동학대 사례 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78.1건으로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 간업무량 차이가 클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개입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편차가 존재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높은 지역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추가 개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개소, 명, 건, 회) 아동학대사례 총 건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상담원수 지 역 기관수 2014년 2014년 이전 2014년 이전 2014년 (기관장 제외) 소계 소계 신고 사례 신고 사례 신고 사례 신고 사례 서울특별시 50 954 1,823 2777 19.1 36.5 556 부산광역시 2 10 392 783 1,175 39 2 78.3 1175 대구광역시 2 25.9 14 362 215 577 15.4 41.3 인천광역시 3 17 495 589 1,084 29.1 346 63.7 광주광역시 164 23 4 394 1 7 112 276 16.0 대전광역시 1 8 286 366 652 35.8 45.8 81.6 울산광역시 1 10 348 387 735 34.8 38.7 73.5 경 기 도 10 76 2501 3.479 5.980 32.9 45.8 78.7 강 원 도 558 3 19 364 922 19.2 29.4 48.6 충청북도 3 21 455 937 1,392 21.7 44.6 66.3 3 충청남도 21 483 737 1,220 23.0 35.1 58.1 전라북도 3 25 932 950 1,882 37.3 38.0 75.3 전라남도 3 21 641 646 1,287 30,5 30,8 61.3 31 825 26.6 46.4 경상북도 4 613 1 438 198 경상남도 2 26 749 1,102 1,851 28,8 42.4 71.2 제주특별자치도 288 400 688 36.0 50,0 86.0 8 364 51 10,027 13,909 23,936 28.5 계 38.0 66.5

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014년 아동학대사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간*을 〈표 6-4〉와 같이 살펴보면, 종결된 사례 중에서 6개월까지가 41.1%에 해당하는 1,290건으로 가장 높았고, 1년까지는 1,129건(36.0%) 이었다. 즉, 6개월에서 1년의 사례관리 기간을 가지는 사례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원들은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재학대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각 상담원의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4〉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단위: 건, %)

구분	기간	~30일	~60일	~90일	~180일	~1년	1년 이상	계
아동학대	종결	81(2.6)	227(7.2)	368(11.7)	1,290(41.1)	1,129(36.0)	44(1.4)	3,139(100.0)
사례	진행중	620(9.0)	818(11.9)	708(10.3)	1,797(26.1)	2,945(42.8)	0(0.0)	6,888(100.0)
	계	701(7.0)	1,045(10.4)	1,076(10.7)	3,087(30,8)	4,074(40.6)	44(0.4)	10,027(100.0)

^{*} 아동학대사례 사례관리기간은 사례종결시기에서 신고접수시기를 뺀 기준으로 산출함.

2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상담 및 교육처분을 받은 이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집행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가 거리상의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치료 내방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지역의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47명이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7명으로 총 184명*이다. 전체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또는 외부 심리치료서비스 총계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총 인원인 184명으로 나누어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업무량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총 245.4회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는 1인당 18.2회, 심리치료 서비스는 1인당 227.2회로 집계되었다. 심리치료 서비스 중 기타치료가 1인당 72.9회로 가장 많이 제공하였고,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각각 1인당 69.8회, 64.0회, 가족치료는 1인당 20.5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부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최초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된 이후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의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점차추가 배치가 되었다. 2014년에는 전남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전라남도,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중부권)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2명이 배치되었지만, 반면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없는 곳은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과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다.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서울특별시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어서 따로 배치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프리랜서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과 외부 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치료가 활발하게진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인하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2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치료를 위해 1명의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담당하기에는 많은 사례 수이기때문에 기관 내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표 6-6〉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

상근직	프리랜서	총계
47 (25.5)	137 (74.5)	184 (100.0)

〈표 6-6〉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단위 : 회)

업무량		횟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업무량	
	심리검사	3,357	18.2	
	놀이치료	12,846	69.8	
	미술치료	11,772	64.0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치료	3,763	20.5	
	기타치료	13,422	72.9	
소계		41,803	227.2	
	총계	45,160	245.4	

〈표 6-7〉 기관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단위 : 명, 회)

항목		임상선	심리치료전단	문인력	1121211	⊢ 01-1-7	-14-17	コスニコ	2151517	구제
지역 및 :	지역 및 기관		프리랜서	소계	심리검사	놀이지됴	미술치료	가쪽지됴	기타지됴	총계
	서울특별시*	-	-	-	_	-	_	-	-	_
	서울특별시동부	0	0	0	46	314	8	0	1,188	1,556
	서울강서	0	3	3	15	94	169	167	196	641
	서울은평	0	2	2	33	186	181	102	51	553
서울	서울영등포	0	2	2	8	244	123	56	24	455
	서울성북	0	1	1	29	192	18	128	136	503
	서울마포	1	2	3	39	745	0	65	37	886
	서울동남권	1	1	2	138	475	316	317	466	1712
	소 계	2	11	13	308	2,250	815	835	2,098	6,306
	부산광역시	1	1	2	21	77	498	0	354	950
부산	부산동부	1	0	1	8	127	4	41	19	199
	소 계	2	1	3	29	204	502	41	373	1,149
	대구광역시	1	3	4	256	45	95	103	107	606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1	3	4	62	110	234	4	115	525
	소계	2	6	8	318	155	329	107	222	1,131

(계속)

^{*} 서울특별시이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사례판단까지 진행함.

(단위 : 명, 회)

위 : 명, 호						- 인력	심리치료전단	임상실	항목		
총계	기타치료	가족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검사	- ᆫ . 소계	그 : .ㅡㅡ. 프리랜서	상근직		지역 및 기	
1,681	204	40	442	866	129	8	7	1	인천광역시		
1,023	46	40	595	311	31	2	2	0	인천북부	01=1	
· —	_	_	_	-	-	_	_	_	인천미추홀*	인천	
2,704	250	80	1037	1,177	160	10	9	1	소 계		
813	139	7	222	405	40	7	6	1	광주광역시	광주	
636	216	18	196	163	43	3	2	1	대전광역시	대전	
211	29	0	86	45	51	5	4	1	울산광역시	울산	
2,143	695	90	746	517	95	8	7	1	경기도		
1851	688	468	69	452	174	6	5	1	경기북부		
2,818	878	105	889	813	133	9	8	1	경기성남		
899	91	201	255	312	40	7	6	1	경기고양		
636 211 2,143 1851 2,818 899 2,039 1,519 1,220 1,245 680 785 15,196 379 1,325 2,860 1,610 168 1,185 2,963 1038 511 13 1,562 1,777 1,700 690 4,167 626 427 1,073 2,126 20 837	911	36	4	991	97	5	4	1	경기부천		
1,519	353	159	573	268	166	3	2	1	경기화성	경기	
1,220	86	194	879	1	60	2	1	1	경기남양주		
1,245	499	0	2	673	71	5	4	1	안산시		
680	168	84	105	254	69	2	1	1	경기용인		
	296	0	195	199	95	4	3	1	경기시흥		
15,199	4,665	1,337	3,717	4,480	1,000	51	41	10	소 계		
1,156	891	34	174	2	55	1	0	1	강원도		
379	134	70	153	0	22	1	0	1	강원동부	강원	
1,325	550	365	231	130	49	1	0	1	원주시	7E	
2,860	1,575	469	558	132	126	3	0	3	소 계		
1,610	318	75	387	606	224	17	16	1	충청북도	초ㅂ	
168	132	0	3	25	8	4	3	1	충북북부		
1,185	247	191	195	528	24	5	4	1	충북남부	충북	
2,963	697	266	585	1,159	256	26	23	3	소 계		
1038	340	65	252	323	58	5	4	1	충청남도		
	304	4	40	151	12	1	0	1	충청남도남부	충남	
	0	0	6	0	7	1	0	1	충청남도서부	0-	
1,562	644	69	298	474	77	7	4	3	소 계		
	453	152	695	358	119	15	14	1	전라북도		
	282	86	1,173	33	126	1	0	1	전라북도서부	전북	
	48	73	457	67	45	5	4	1	전라북도동부	근폭	
	783	311	2,325	458	290	21	18	3	소 계		
	190	31	58	285	62	2	0	2	전라남도		
	146	38	194	8	41	4	2	2	전남서부권	전남	
	555	100	24	278	116	4	2	2	전남중부권	20	
	891	169	276	571	219	10	4	6	소 계		
	0	0	0	6	14	1	0	1	경북남부		
837	255	42	72	431	37	2	0	2	경 북북 부		
486	58	2	316	72	38	1	0	1	경북서부	경북**	
359	0	0	40	307	12	3	2	1	경북동부		
1,702	313	44	428	816	101	7	2	5	소 계		
584	337	0	38	45	164	1	0	1	경상남도		
316	3	10	167	81	55	1	0	1	경남서부	경남	
900	340	10	205	126	219	2	0	2	소 계		
458	158	0	79	187	34	1	0	1	제주특별자치도		
273	29	0	114	44	86	7	6	1	서귀포시	제주	
731	187	0	193	231	120	8	6	2	소 계		
45,160	13,422	3,763	11,772	12,846	3,357	184	137	47	계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구에 한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사례판단까지 진행함.

^{** 2015}년 1월 1일부터 경상복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현황

-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의 경우 전년 대비 21.2% 증가하였고,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 폭음 보였다. 2008년과 2009년, 2010년은 증가 폭이 줄고 오히려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다시 2013년부터 전년과 대비하여 19.5% 상승하였고,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상승하여 두 번째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진 연도가 되었다. 이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활발한 착한신고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바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80% 이상을 나타내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84,5%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어. 실제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211 . 2, 27
구분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동일신고*	일반상담 건수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01년	2,606(63.1)	_	1,527(36.9)	4,133(100.0)	_
2002년	2,946(71.7)	_	1,165(28.3)	4,111(100.0)	-0.5
2003년	3,536(71.0)	_	1,447(29.0)	4,983(100.0)	21.2
2004년	4,880(69.7)	_	2,118(30.3)	6,998(100.0)	40.4
2005년	5,761(72.0)	_	2,239(28.0)	8,000(100.0)	14.3
2006년	6,452(72.5)	_	2,451(27.5)	8,903(100.0)	11.3
2007년	7,083(74.7)	_	2,395(25.3)	9,478(100.0)	6.5
2008년	7,219(75.4)	77(–)	2,351(24.6)	9,570*(100.0)	1.0
2009년	7,354(79.0)	101(1.1)	1,854(19.9)	9,309(100,0)	-2.7
2010년	7,406(80.5)	89(1.0)	1,704(18.5)	9,199(100.0)	-1.2
2011년	8,325(82.1)	84(0.8)	1,737(17.1)	10,146(100.0)	10.3
2012년	8,979(82.1)	34(0.3)	1,930(17.6)	10,943(100.0)	7.9
2013년	10,857(83.0)	43(0.3)	2,176(16.6)	13,076(100,0)	19.5
2014년	15,025(84.5)	93(0.5)	2,664(15.0)	17,782(100.0)	36.0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동일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점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2014.9.29.)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 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단위 : 건)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은 〈표 7-2〉와 같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재신고 사례수도 2001년 20건에서 2014년 2,338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에서 2013년까지 14.1%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1%가량 낮아진 13.1%의 비율을 보였다.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건, %)

연 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고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2,338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13,1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됨.

(단위 : 건)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 하락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112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서 경찰 개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신고 의무자 신고비율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3년의 울산 계모사건, 칠곡 계모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신고적극성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3〉과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3년까지 가장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4.7%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가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에는 13.2%로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경찰이 전년도 대비 8%가 상승하여 전체 신고율 중 14.7%를 차지하였다. 이는 경찰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조항을 통하여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중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단귀	• 신, %)
신고자	연도 ·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시설종사자*	134(5,1) 51(2,0) 285(10,9)	149(5.0) 59(2.0) 238(8.1)	190(5,4) 83(2,3) 181(5,1)	280(5.7) 102(2.1) 226(4.7)	431(7.5) 126(2.2) 222(3.8)	611(9.5) 114(1.8) 217(3.3)	771(10.9) 157(2.2) 374(5.3)	887(12,3) 105(1,5) 426(5,9)	547(7.4) 98(1.3)	535(7.2) 83(1.1)	594(7.1) 88(1.1)	732(8,2) 85(0,9)	716(6.6) 93(0.9)	1,988(13.2 123(0.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358(4.9) 15(0.2)	425(5.7) 26(0.4)	338(4.1) 24(0.3)	424(4.7) 28(0.3)	403(3,7) 11(0,1)	275(1,8) 24(0,2) 273(1,8)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_	_	_	_	_	_	_	_	76(1.0) 43(0.6)	152(2.1) 66(0.9)	178(2.1) 40(0.5)	166(1.8) 84(0.9)	223(2.1) 20(0.2)	43(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0.0)	15(0.3)	23(0.4)	32(0.5)	26(0.4)	24(0.3)	18(0.2)	16(0.2)	6(0.1)	13(0.1)	7(0.1)	26(0.2) 28(0.2)
	소방구급대원 응급구조사	_	_	_	_	_	_	3(0.0)	6(0.1)	11(0,2)	6(0,1)	10(0.1)	16(0,2) 0(0,0)	11(0,1)	2(0.0)
	의료기사	-	-	-	-	-	-	-	-	-	-	-	4(0.0)	6(0.1)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	-	-	-	-	-	-	-	41(0.6)	47(0,6)	45(0,5)	39(0,4)	8(0.1)	2(0.0)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51(0,6)	75(0,7)	20(0,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	-	-	-	-	-	-	-	15(0,2)	7(0.1)	13(0,2)	13(0,1)	13(0,1)	10(0.1)
신 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142(1.9)	141(1.9)	199(2.4)	233(2,6)	191(1.8)	174(1.2)
의 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16(8,3)	392(13,3)	575(16.3)	738(15.1)	805(14.0)	1,038(16.1)	953(13.4)	941(13.0)	975(13,3)	786(10,6)	1,169(14.0)	904(10.1)	1,055(9.7)	700(4.7)
ㅜ 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	-	-	-	-	-	-	-	-	-	102(1.1)	234(2,2)	104(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	-	-	-	-	-	-	-	-	-	-	-	157(1,7)	336(3,1)	151(1.0)
	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	-	-	-	-	-	-	-	-	-	-	-	15(0,2)	17(0,2)	27(0,2)
	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	-	-	-	-	-	-	-	-	-	-	-	21(0,2)	17(0,2)	18(0,1)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7(0.3)	27(0,2)	20(0.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	-	-	-	-	-	-	-	-	-	-	34(0.4)	46(0.4)	78(0.5)
	종사자	-	-	-	-	-	-	-	-	-	-	-	123(1,4)	160(1.5)	185(1,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45(0.5)	37(0.3)	14(0.1)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	-	-	-	-	-	-	-	-	-	-	-	-	-	0(0,0)
	서비스 지원인력	-	-	-	-	-	-	-	-	-	-	-	-	-	73(0,5)
	소 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0)
	부 모	772(29.6)	591(20.1)	673(19.0)	990(20.3)	1,073(18.6)	1,165(18.1)	1,294(18.3)	1,311(18.2)	1,356(18.4)	1,374 (18.6)	1,411 (16.9)	1,433	1,426	1,991 (13.3)
	이웃·친구	685(26,3)	757(25,7)	843(23,8)	921(18,9)	933(16.2)	886(13,7)	856(12.1)	845(11.7)	805(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0)
	친인척	241(9.3)	242(8.2)	367(10,4)	373(7.6)	481(8.3)	500(7,7)	471(6.7)	502(6.9)	468(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536 (3.6)
	경 찰	104(4.0)	164(5,6)	221(6.3)	338(6.9)	357(6,2)	340(5.3)	275(3,9)	322(4.5)	416(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비	종교인	-	36(1,2)	49(1.4)	47(1.0)	74(1,3)	99(1,5)	77(1.1)	54(0.7)	54(0.7)	54 (0.7)	53 (0.6)	45 (0.5)	28 (0.3)	20 (0.1)
신 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90(3.0)	114(3.2)	506(10.4)	823(14.3)	980(15,2)	1,165(16.5)	1,176(16.3)	1,356(18.4)	1,562 (21,1)	1,856 (22,3)	1,689 (18,8)	2,632 (24,2)	3,486 (23,2)
의 무	낯선 사람	-	-	4(0.1)	114(2,3)	80(1,4)	148(2,3)	88(1,2)	70(1.0)	71(1,0)	69 (0.9)	55 (0,7)	92 (1.0)	103 (0.9)	193 (1.3)
자	아동본인	40(1.5)	56(1.9)	52(1.5)	65(1,3)	80(1,4)	71(1,1)	50(0.7)	73(1.0)	88(1,2)	115 (1.6)	135 (1,6)	158 (1,8)	171 (1.6)	628 (4.2)
	익 명	-	11(0,4)	13(0.4)	13(0,3)	41(0.7)	26(0.4)	11(0,1)	61(0,8)	8(0.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형제,자매	_	_	-	-	-	-	_	-	34 (0,5)	44 (0,6)	47 (0.6)	63	45 (0,4)	110
	기타	78(3,0)	161(5,5)	170(4.8)	152(3,1)	212(3.7)	225(3.5)	512(7.2)	416(5.8)	359	241	258	(0,7)	546	(0.7) 199
	소 계	1,920	2,108	2,506	3,519	4,154	4,440	4,799	4,830	(4,9) 5,015	(3,2) 5,116	(3,1) 5,621	(3,6) 5,663	(5,0) 7,151	(1,3) 10,667
	포 세	(73.7) 2.606	(71.6) 2.946	(70,9) 3,536	(72.1) 4.880	(72.1) 5.761	(68,8) 6,452	(67,8) 7,083	(66,9) 7,219	(68,2) 7,354	(69.1) 7.406	(67.5) 8.325	(63.1) 8.979	(65,9) 10.857	(71.0) 15.0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3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는 주로 전화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었다. 112로 통합 된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2014년도에 112가 전체의 13.4%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거의 1% 미만을 차지하다가 2014년에 3.4%로 증가 하였다.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건, %)

구분 연도	아동보호전문 기관 전화*	112	129	119	1366	인터넷	내방	계
2007년	8,125(85.7)	-	709(7.5)	-	-	40(0.4)	604(6.4)	9,478(100,0)
2008년	8,589(89.7)	_	538(5.6)	_	_	83(0.9)	360(3.8)	9,570(100.0)
2009년	8,707(93.5)	_	438(4.7)	_	_	28(0.3)	136(1.5)	9,309(100.0)
2010년	8,461(92.0)	_	367(4.0)	_	_	111(1.2)	260(2.8)	9,199(100.0)
2011년	9,470(93.3)	_	382(3.8)	_	_	100(1.0)	194(1.9)	10,146(100.0)
2012년	9,720(88.8)	_	426(3.9)	13(0.1)	_	93(0.8)	691(6.3)	10,943(100.0)
2013년	11,859(90.7)	_	549(4.2)	18(0.1)	_	53(0.4)	597(4.6)	13,076(100.0)
2014년	14,267(80.2)	2,376(13.4)	448(2.5)	20(0.1)	34(0.2)	603(3.4)	43(0.2)	17,791(100.0)

(단위: 건)



^{* 2007}년부터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91로 신고접수 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수치이다.

4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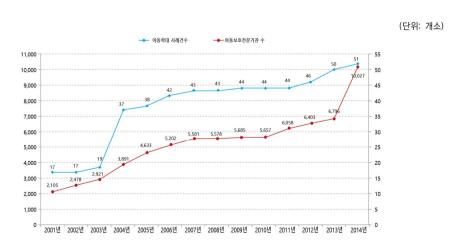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표 7-5〉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에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약 4배이상 늘어났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무려 47.5%로 엄청난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국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이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동학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사례	증가율	_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아동보호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전문기관	증가기관수		_	2	18	1	4	1	_	1	_	-	2	4	1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표 7-6〉과 같이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에 0.4%, 증가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활발한 착하신고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진하여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추계이동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1.10

^{*} 통계청(www.kosis.kr), 2001-2013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단위 : 명) (단위: %)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5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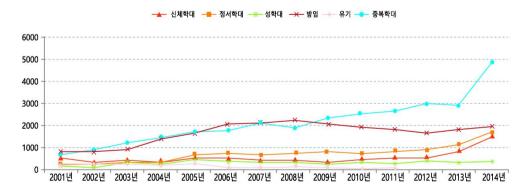
〈표 7-7〉과 같이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복학대의경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거의 절반인 48.0%로 증가하여아동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2008년 40.1%의 높은 분포를 보인 이후, 2014년(18.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 5.4%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15.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22.6)	114(5.4)	86(4.1)	672(31.9)	134(6.4)	623(29.6)	2,105(100,0)
2002년	254(10.3)	184(7.4)	65(2.6)	814(32.8)	212(8.6)	949(38.3)	2,478(100,0)
2003년	347(11.9)	207(7.1)	134(4.6)	965(33.0)	113(3.9)	1,155(39.5)	2,921(100.0)
2004년	364(9.4)	350(9.0)	177(4.5)	1,367(35.1)	125(3.2)	1,508(38.8)	3,891(100.0)
2005년	423(9.1)	512(11.1)	206(4.4)	1,635(35.3)	147(3.2)	1,710(36.9)	4,633(100,0)
2006년	439(8.4)	604(11.6)	249(4.8)	2,035(39.1)	76(1.5)	1,799(34.6)	5,202(100.0)
2007년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5,581(100.0)
2008년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5,578(100.0)
2009년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5,685(100,0)
2010년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5,657(100.0)
2011년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6,058(100.0)
2012년	461(7.2)	936(14.6)	278(4.3)	1,713(26.8)	_	3,015(47.1)	6,403(100.0)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_	2,922(43.0)	6,796(100.0)
2014년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_	4,814(48,0)	10,027(100,0)

(단위 : 건)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표 7-8〉과 같이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평균 2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1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 9.0%로 낮은 수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40.0%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되고 정서학대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꾸준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정서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행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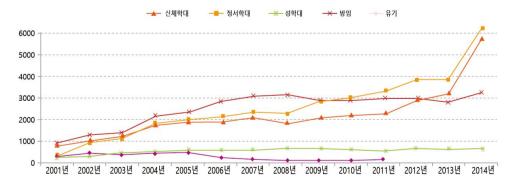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계
2001년	890(41.8)	192(9.0)	116(5.4)	797(37.5)	133(6.3)	2,128(100,0)
2002년	1,039(28.4)	961(26.3)	119(3.2)	1,329(36.3)	212(5.8)	3,660(100,0)
2003년	1,315(30.3)	1,172(27.1)	203(4.7)	1,514(35.0)	126(2.9)	4,330(100.0)
2004년	1,587(27.5)	1,680(29.2)	266(4.6)	2,071(35.9)	160(2,8)	5,764(100.0)
2005년	1,728(25.9)	2,034(30.5)	305(4.6)	2,416(36.4)	176(2.6)	6,659(100.0)
2006년	1,827(24.9)	2,182(29.8)	372(5.1)	2,842(38.8)	106(1.4)	7,329(100.0)
2007년	2,095(26.1)	2,420(30.1)	409(5.1)	3,018(37.6)	92(1.1)	8,034(100,0)
2008년	1,857(23.8)	2,315(30.0)	424(5.0)	3,105(40.0)	94(1.2)	7,795(100.0)
2009년	2,095(25.1)	2,847(34.1)	426(5.1)	2,939(35.2)	43(0.5)	8,350(100,0)
2010년	2,182(25.8)	2,974(35.1)	400(4.7)	2,878(34.0)	32(0.4)	8,466(100,0)
2011년	2,464(26.9)	3,312(36.3)	368(4.0)	2.919(31.9)	85(0.9)	9,148(100.0)
2012년	2,858(28.8)	3,785(38.1)	446(4.5)	2,849(28.7)	-	9,938(100,0)
2013년	3,160(30.9)	3,843(37.6)	380(3.7)	2,848(27.8)	_	10,231(100,0)
2014년	5,699(36.9)	6,176(40.0)	447(2.9)	3,136(20.3)	_	15,458(100.0)

※중복포함

(단위: 건)



※중복포함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6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7-9》와 같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여기던 과거 사회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9.9%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4년에는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2.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신고접수건수가 증가하였고,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에 대한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명, 건, ‰)

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 <u>.</u> 4)	2,855 (47.1)	3,013 (47.1)	2,790 (41.1)	4,531 (45.2)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2,090 (32,6)	2,383 (35,1)	3,211 (32,0)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부 모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양부	8 (0.4)	5 (0.2)	6 (0.2)	9(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8,207 (81.8)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친조모	40 (0.0)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외조부	48 (2.3)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친 인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척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351 (5.2)	559 (5.6)

(계속)

(단위 : 명, 건, ‰)

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유치원교직원	_	_	-	-	_	_	-	_	-	-	_	31 (0.5)	53 (0.8)	99(1.0)
	초·중·고교 직원	50(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28 (0.4)	145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_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대	보육교직원	_	_	_	-	_	_	-	_	-	-	-	110 (1.7)	202 (3.0)	295 (2,9)
리	시설 종사자	_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	-
양 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_	_	-	-	_	_	-	_	-	-	_	99 (1.5)	362 (5.3)	177 (1.8)
자	기타시설 종사자	_	_	-	-	_	_	-	_	-	-	_	20 (0.3)	27 (0.4)	29 (0.3)
	위탁부	_	_	-	-	_	_	-	_	2 (0.1)	3 (0.1)	5 (0.1)	0 (0.0)	2 (0,0)	5 (0.0)
	위탁모	_	_	-	-	_	_	-	_	7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베이비시터	_	-	-	-	-	-	-	-	-	-	-	6 (0.1)	4 (0,1)	7 (0.1)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 <u>.</u> 9)	275 (5.3)	386 (6.9)	225 (4.0)	331 (5.8)	419 (7.4)	482 (8.0)	397 (6.2)	786 (11.6)	990 (9.9)
	0)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타	낯선 사람	_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인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0)	134 (2,4)	115 (2.0)	92 (1.5)	108 (1.7)	85 (1.3)	124 (1.2)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파악안됨	_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해당사항 없음	_	_	_	_	_	_	-	_	_	_	_	3 (0.0)	3 (0,0)	_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단위 : 건)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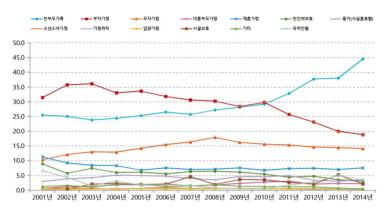
7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표 7-10〉과 같이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친부모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인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므로 한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여디													(단위	: 건, %)	
가족유형	_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친	쿠모가족	536 (25.5)	619 (25 <u>.</u> 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0)	4,458 (44.5)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0)	1887 (18.8)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미혼부모 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131 (2.0)	154 (2,3)	208 (2.1)
친부모 가족	재혼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380 (6.7)	441 (7.3)	475 (7.4)	473 (7.0)	750 (7.5)
기독 외 형태	친인척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303 (4.7)	238 (3.5)	297 (3.0)
	동거 (사실혼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0)	353 (3.5)
	소년소녀 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소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 <u>.</u> 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대리 양육	입양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37 (0.6)	27 (0,4)	39 (0.4)
형태	시설보호	-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127 (2.0)	356 (5,2)	208 (2.1)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 <u>.</u> 9)	271 (2.7)
7	기 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70 (1.1)	46 (0.7)	43 (0.4)
п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175 (2.7)	338 (5,0)	336 (3.4)
	계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단위:%)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8

본 절은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은 재학대 사례가 집계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추계를 살펴보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 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 되어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로 집계된 수치인 반면, 2014년의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가 아돗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2014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로 집계되었다.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표 7-11〉과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08년 494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꾸준히 증가 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재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사례의 8 9%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 재학대 사례가 14% 이상 차지하였다. 2014년에는 2014년 전체 사례의 10.2%에 해당하는데 이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노력들과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례 중 다시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로 집계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 건, 명)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494 (482)	581 (581)	503 (494)	563 (559)	914 (826)	980 (489)	1,027 (949)
재학대 사례 비율	8.9	10.2	8.9	9.3	14.3	14.4	10.2

[※] 재학대 사례는 2008년부터 집계되었음.

(단위 : 건, 명)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에 대해 〈표 7-12〉와 같이 살펴보면 2013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학대는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연도 사례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학대	200(26.7)	196(23.6)	193(24.1)	257(28.5)	361(25.0)	440(29.2)	515(33.1)
정서학대	260(34.7)	268(32.2)	282(35.2)	340(37.7)	536(37.1)	545(36.2)	587(37.7)
성학대	35(4.7)	41(4.9)	40(5.0)	39(4.2)	102(7.1)	81(5.4)	61(3.9)
방임	251(33.5)	325(39.1)	286(35.6)	266(29.5)	445(30.8)	440(29.2)	393(25.3)
유기	3(0.4)	2(0.2)	1(0.1)	1(0.1)	-	_	
계	749(100.0)	832(100.0)	802(100.0)	903(100.0)	1,444(100.0)	1,506(100.0)	1,556(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포함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7-13〉과 같이 살펴보면, 매년 최초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학대행위자·기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후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및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 및 제공 방안에 대해 더욱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건.%)

연도 발생시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 미만	14(2.8)	22(3.8)	19(3.8)	19(3.4)	128(14.0)	44(4.5)	43(4.2)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3개월	24(4.9)	26(4.5)	17(3.4)	26(4.6)	33(3.6)	43(4.4)	65(6.3)
사례종결(판단) 후 3개월~6개월	38(7.7)	31(5.3)	24(4.8)	55(9.8)	37(4.0)	58(5.9)	116(11.3)
사례종결(판단) 후 6개월~1년	73(14.8)	128(22.0)	83(16.5)	116(20.6)	97(10.6)	99(10.1)	152(14.8)
사례종결(판단) 후 1년~2년	131(26.5)	114(19.6)	124(24.6)	131(23.3)	160(17.5)	205(20.9)	273(26.6)
사례종결(판단) 후 2년~3년	97(19.6)	104(17.9)	87(17.3)	87(15.5)	164(17.9)	175(17.9)	203(19.8)
사례종결(판단) 후 3년 이상	117(23.7)	156(26.9)	149(29.6)	129(22.8)	295(32.3)	356(36.3)	175(17.0)
계	494(100.0)	581(100.0)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 2013년부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단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7-14)와 같이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보호는 30% 이내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재학대 사례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타 기관에 의뢰되는 건수는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2014년 4월부터 경찰 동행 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체학대에 대한 판단과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분리보호율이 높아지고, 원가정 보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원가정보호	330(66.8)	387(66.7)	362(72.0)	388(68.9)	628(68.7)	711(72.6)	678(66.0)
분리보호	164(33.2)	193(33.3)	137(27.2)	169(30.0)	284(31.1)	266(27.1)	349(34.1)
사망	0(0.0)	O(O.O)	O(O.O)	O(O.O)	2(0.2)	3(0.3)	O(0.0)
타기관의뢰	0(0.0)	O(O.O)	4(0.8)	6(1.1)	0(0.0)	O(O.O)	0(0.0)
계	494(100.0)	580(100.0)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단위:%)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5〉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9.8%이던 고소·고발이 2014년 16.7%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인하여 고소·고발 뿐 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인 사건처리가 포함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속관찰	-	=	411(81.7)	472(83.8)	703(76.9)	737(75.2)	753(73.3)
고소·고발*	_	_	21(4.2)	30(5.3)	71(7.8)	96(9.8)	171(16.7)
타기관 의뢰	-	_	24(4.8)	23(4.1)	0(0.0)	O(O.O)	O(0.0)
만나지 못 함	_	_	47(9.3)	38(6.8)	81(8.9)	81(8.3)	49(4.8)
아동과의 분리	_	_	0(0.0)	0(0.0)	59(6.5)	66(6.7)	54(5.3)
계	_	_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2010년부터 집계되었음.

(단위:%)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년의 고소·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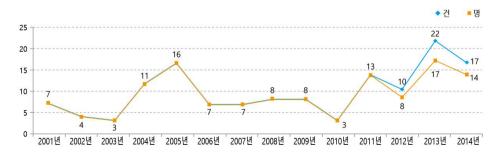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6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아래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정보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대로 인하 사망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 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사망아동의 형제·자매 및 비가해부모 등) 또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이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포함한 모든 아동사망사례를 조사하여 아동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이 조직되어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및 명수

(단위: 건, 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건 수 13 136 (명 수) (7) (4) (3)(11)(16)(7) (7) (8)(3)(13)(17)(14)(126)

(단위: 건.명)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 미국에서는 경찰, CPS 담당자, 검사, 공공보건 전문가, 소아과 의사 또는 가정의,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사망사례조 사팀을 구성하여, 아동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표 7-17〉과 같이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신체적 상흔 뿐 만 아니라 방임으로도 치명적인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학대	2(15.4)	O(O.O)	7(31.8)	5(29.4)
정서학대	O(O.O)	2(20.0)	O(O.O)	O(O.O)
성학대	O(O.O)	0(0.0)	0(0.0)	O(O,O)
방임	8(61.5)	3(30.0)	12(54.5)	4(23.5)
유기*	O(O.O)	_	_	_
중복학대	3(23.1)	5(50.0)	3(13.6)	8(47.1)
계	13(100,0)	10(100.0)	22(100,0)	17(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8〉과 같이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 ·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2014년에는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58.8%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가 41.2%였다.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고소·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타기관 의뢰	0 (0.0)	0 (0.0)	O (O.O)	0 (0.0)
만나지 못 함	1 (7.7)	0 (0.0)	4 (18.2)	7 (41.2)
아동과의 분리	0 (0.0)	1 (10.0)	O (O.O)	O (O.O)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단위:%)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년의 고소·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1) 시도/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38회, 수강 인원수는 총 102,742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지역은 경북이 261회(25.1%), 전남이 119회(11.5%), 경남이 112회(10.8%) 순으로 높았다. 경북은 전체 교육 횟수의 1/4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 높은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부산이 수강 인원 21,470명(20.9%)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이 12,543명(12.2%), 경기가 11,846명(11.5%) 순으로 높았다.

〈표 7-19〉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단위: 회 명 %)

연도	201	(단위: 회, 명, %) 4년
지역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서울	51(4.9)	10,157(9.9)
부산	110(10.6)	21,470(20.9)
대구	37(3.6)	8,038(7.8)
인천	23(2.2)	3,323(3.2)
광주	8(O.8)	2,002(1.9)
대전	6(O.6)	363(0.4)
울산	86(8.3)	5,383(5.2)
경기	71(6.8)	11,846(11.5)
강원	10(1.0)	570(0.6)
충북	36(3.5)	8,381(8.2)
충남	55(5.3)	2,240(2.2)
전북	24(2.3)	1,102(1.1)
전남	119(11.5)	5,963(5.8)
경북	261(25.1)	12,543(12.2)
경남	112(10.8)	5,754(5.6)
제주	29(2.8)	3,607(3.5)
계	1,038(100.0)	102,742(100.0)

^{*}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은 2014년에 처음 취합하였고, 추후 연도별로 해당 실적을 관리할 예정임.

2)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98회, 수강 인원수는 총 203,742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35회(12,3%)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충남과 경남이 각각 122회(11.1%)을 진행하였다.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교육 횟수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48,591명(23.8%)이었고, 서울이 29,120명(14.3%), 경남이 19,612명(9.6%) 순으로 많았다.

〈표 7-2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단위: 회, 명, %)

연도	201)14년		
지역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서울	102(9.3)	29,120(14.3)		
부산	59(5.4)	11,793(5.8)		
대구	30(2.7)	11,416(5.6)		
인천	42(3.8)	9,283(4.6)		
광주	10(0.9)	2,081(1.0)		
대전	113(10.3)	10,529(5.2)		
울산	13(1.2)	5,101(2.5)		
경기	135(12,3)	48,591(23.8)		
강원	43(3.9)	3,187(1.6)		
충북	54(4.9)	4,887(2.4)		
충남	122(11.1)	17,168(8.4)		
전북	47(4.3)	6,116(3.0)		
전남	92(8.4)	10,220(5.0)		
경북	101(9.2)	10,709(5.3)		
경남	122(11.1)	19,612(9.6)		
제주	13(1.2)	3,929(1.9)		
계	1,098(100,0)	203,742(100,0)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1. 용어집
-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4. 2013 현황보고서 수치 오류 정정



1 📕 용어집

[신고접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고접수(사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됨. 신고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1577-139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신고접수함.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이관함

내방신고: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고: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동일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

일반상담(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재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 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단: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 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자체)사례회의: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아동학대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조기지원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 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일반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수).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모부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mark>혼부모가정</mark>: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양모: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정막대 : 모호사를 포함한 정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서해 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초기조치결과: 아동학대로 사례판단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임시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청구함.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원가정보호: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분리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일시보호: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장기보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기타보호: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복귀: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타기관의로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관찰: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고소: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건처리 :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호처분: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개별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집단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서비스. 기관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 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주변인 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

입원치료: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통원치료: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심리검사: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미술치료: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족치료: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기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 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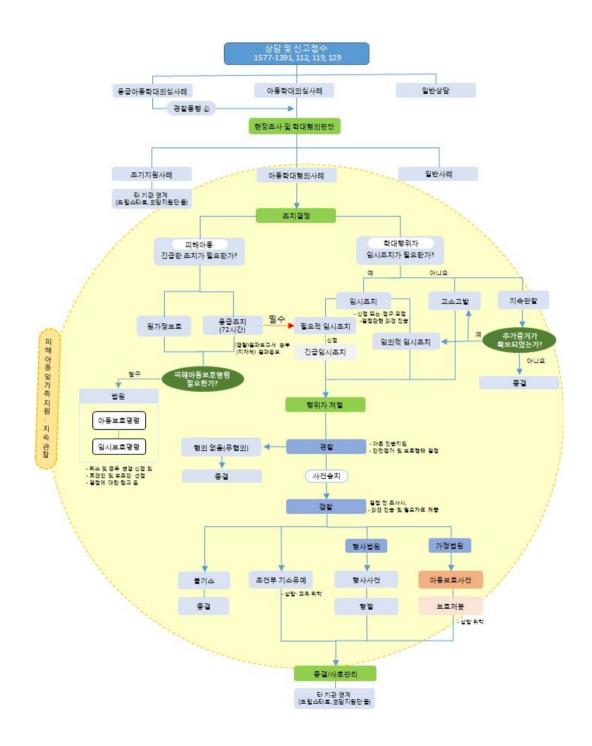
공적지원연결: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일시보호서비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고소·고발·사건처리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 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례종결: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사후관리: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이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2 이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5년 7월 기준, 55개소) 3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8	방아동보호전문기관	_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www.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특별시 동부이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cps.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www.goodneighbors.kr/gan gseo	02-2654-1391
서울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4-18 4층	www.goodneighbors.kr/eun pyeong	02–3157–1391
(8개소)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태안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yon gdungpo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	www.goodneighbors.kr/seo ngbuk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www.mapo.sc.or.kr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	www.goodneighbors.kr /gangdong	02-474-1391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adong.busan.go.kr	051-242-1391
부산 (3개소)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금청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5층	dbchild.saem.or.kr	051–507–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호, 406호	dbchild.saem.or.kr	051-714-1391
대구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www.dg1391.or.kr	053-422-1391~2
(2개소)	대구광역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남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2층	http://www.goodneighbors. kr/ndaegu	053-623-139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www.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 (3개소)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재현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ninc hon	032-515-1391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	www.holt.or.kr	032-424-1391
광주 (1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www.cyber1391.or.kr	062-385-1391~3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www.goodneighbors.kr /edaejeon	042-254-6790~4
울산 (1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www.ulsan.sc.or.kr	052-245-9382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	www.goodneighbors.kr /suwon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도림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 /uijeongbu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	www.goodneighbors.kr /local/sungnam	031-756-1391
	경기고양 이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길 11 삼성프라자 7층	www.goodneighbors.kr /local/goyang	031-966-1391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성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송현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 /hwaseong	031-227-1310
경기 (11개소)	경기부천 이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 405호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길 39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슈마프라자 203호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	www.goodneighbors.kr/yon gin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www.goodneighbors.kr/sihe ung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	www.ptchild112.or.kr	031–652–139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길 35	www.1391.org	033–244–1391
강원 (3개소)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반트스포트센터 2층	www.kd1391.or.kr	033–644–1391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길 7	www.goodneighbors.kr/won ju	033–766–139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길 66-1	www.goodneighbors.kr/che ongju	043–217–1391
충북 (3개소)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	www.1391sos.kr	043-645-9078
_	충북남부 이동보호전문기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 1길 19	www.cbnb1391.org	043-731-3686
	충청남도 이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www.goodneighbors.kr/cho nan	041–578–2655
충남 (3개소)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1062, 2층	www.goodneighbors.kr/bory eong	041-734-6640~1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hongseong.goodneighbors.kr	041-635-1106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www.goodneighbors.kr/local /jeonju	063-283-1391
전북 (3개소)	전리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www.goodneighbors.kr/local /namwon	063-635-1391~3
	전리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www.goodneighbors.kr/local /iksan	063-852-1391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굉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www.e1391.or.kr	061–753–5125
전남 (3개소)	전냠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www.goodneighbors.kr/mok po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www.goodneighbors,kr/jnjb	061–332–1391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성군, 군위군, 청도군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문경시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www.ad1391.org	054-853-2037~8
(4개소)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 12, 3층	www.goodneighbors.kr/poh ang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gumi1391.or.kr	054-455-1391
	경상남도 이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 (3개소)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www.gnw1391.or.kr	055-757-139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www.gh1391.or.kr	055–322–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	www.jj1391.or.kr	064-712-1391~2
(2개소)	서귀포시 이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www.sgp1391.org	064-732-1391~2

4 2013년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표 4-8〉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근用·건, M)		
	관 계	건수(비율)		
	친부	2,790(41.1)		
H-C	친모	2,383(35.1)		
	계부	108(1.6)		
부모	계모	144(2.1)		
	양부	14(0.2)		
	양모	15(0.2)		
	소계	5,454(80.3)		
	친조부	58(0.9)		
	친조모	79(1.2)		
	외조부	8(0.1)		
친인척	외조모	30(0.4)		
	친인척	150(2.2)		
	형제, 자매	26(0.4)		
	소계	351(5.2)		
	부,모의 동거인	86(1.3)		
	유치원교직원	35(0.5)		
	초·중·고교 직원	31(0.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1(0.2)		
	보육교직원	217(3.2)		
대리양육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62(5.3)		
	기타시설 종사자	27(0.4)		
	위탁부	2(0.0)		
	위탁모	11(0.2)		
	베이비시터	4(0.1)		
	소계	786(11.6)		
	이웃	51(0.8)		
타인	낯선 사람	34(0.5)		
	소계	85(1.3)		
	기타	85(1.3)		
	파악안됨	35(0.5)		
	계	6,796(100.0)		

^{*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81p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15년 7월 발 행 일 : 2015년 7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김상진, 전선율, 이종희, 김미경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02-558-1391)